



2023.6.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추계&세제 이슈 | 제23호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NABO Fiscal Estimates&Tax Issues

CONTENTS

재정추계 동향 및 이슈 | 난임 치료지원 입법동향 및 재정전망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의안 비용추계 활용 실태조사 결과

조세동향 및 이슈 | 글로벌 조세지출의 현황 및 시사점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사적연금 세제 논의 동향
양도소득세액 결정요인의 세수증감 기여도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주요 재정총량 지표

재정총량 추이

(단위: 조원)

재정총량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	1~3월
총수입(A)	351.9	356.4	371.8	401.8	430.6	465.3	473.1	478.8	570.5	617.8	625.7	145.4
국세수입	201.9	205.5	217.9	242.6	265.4	293.6	293.5	285.5	344.1	395.9	400.5	87.1
세외수입	27.3	24.6	23.7	23.5	25.5	26.0	25.3	26.9	30.5	30.8	25.0	7.4
기금수입	122.6	126.2	130.2	135.6	139.5	145.1	154.0	166.2	195.8	190.8	200.3	50.9
세입외	0.0	0.1	0.1	0.1	0.1	0.6	0.4	0.1	0.1	0.3	—	—
총지출(B)	337.7	347.9	372.0	384.9	406.6	434.1	485.1	549.9	601.0	682.4	638.7	186.8
예산	239.1	243.7	256.8	264.7	275.2	293.7	329.0	374.4	398.9	439.6	441.1	132.0
기금	98.2	104.0	115.0	119.9	127.3	133.8	144.9	175.2	199.6	231.2	197.7	54.8
세출외	0.3	0.2	0.2	0.3	4.0	6.6	11.2	0.4	2.6	11.6	—	—
통합재정수지(A-B)	14.2	8.5	-0.2	16.9	24.0	31.2	-12.0	-71.2	-30.4	-64.6	-13.1	-41.4
관리재정수지	-21.1	-29.5	-38.0	-22.7	-18.5	-10.6	-54.4	-112.0	-90.5	-117.0	-58.2	-54.0
국가채무(중앙정부)	464.0	503.0	556.5	591.9	627.4	651.8	699.0	819.2	939.1	1,033.4	1,101.7	1,053.6
(GDP 대비, %)	(30.9)	(32.2)	(33.6)	(34.0)	(34.2)	(34.3)	(36.3)	(42.2)	(45.3)	(48.1)	(49.0)	—

주: 1. 2022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3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2023년 1~3월은 실적 기준임

2.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수지를 차감하여 산출함

3.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단순합계 및 단순차감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3년 5월호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분야별 총지출 추이

(단위: 조원)

16개 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
공공질서 및 안전	15.3	15.2	15.8	16.7	17.5	18.3	18.8	20.2	21.1	21.7	22.4	22.9
과학기술	5.3	5.8	6.0	6.5	6.7	7.0	7.0	7.3	8.1	8.9	9.5	9.9
교육	45.3	48.5	50.5	52.5	55.4	59.2	64.3	70.5	70.9	77.4	95.0	96.3
교통 및 물류	17.2	18.2	18.0	20.9	19.1	18.5	15.3	16.3	18.3	21.1	21.7	20.8
국방	31.2	32.9	33.8	35.6	36.8	37.9	41.2	44.9	46.3	49.3	50.4	55.3
국토 및 지역개발	6.0	5.0	4.4	4.5	4.0	3.5	3.7	4.4	4.8	5.1	5.1	4.2
농림수산	17.7	17.8	17.0	19.1	18.7	19.4	19.6	20.4	21.7	22.9	23.2	24.4
문화 및 관광	4.5	5.0	5.2	6.2	6.7	6.9	6.3	7.2	8.1	8.5	9.0	8.6
보건	7.8	8.8	9.2	11.2	10.5	10.3	10.7	11.9	17.4	26.5	32.8	20.0
사회복지	84.8	89.8	98.4	107.0	112.4	121.0	136.0	154.8	181.0	189.6	195.1	206.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5.5	16.4	15.4	17.8	18.5	19.0	18.8	20.6	37.2	46.2	73.7	26.0
예비비	0.4	0.4	0.4	0.5	0.5	0.6	0.6	0.6	0.6	0.6	0.6	4.6
일반·지방행정	54.1	57.1	57.7	57.1	60.9	64.3	68.4	75.4	93.1	98.2	108.1	112.2
통신	7.3	7.3	6.8	6.4	6.2	6.2	6.2	7.0	8.0	8.2	8.7	9.0
통일·외교	3.0	3.1	2.9	3.1	3.8	3.3	3.7	3.9	3.7	4.2	4.5	6.4
환경	5.8	6.1	6.1	6.7	6.9	7.1	7.0	8.5	9.3	10.2	11.0	12.2

주: 1. 2022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3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임

2. 총지출 중 세출되는 제외함

자료: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정추계&세제 이슈

2023년 Vol.2 통권 제23호

Contents

주요 재정총량 지표	1
재정추계 동향	5
2023년 1분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6
2023년 1분기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 동향	12
입법 재정소요 추계	17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현황	18
2023년 1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19
의안 비용추계 사례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2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36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41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재정추계 이슈 및 분석	53
난임 치료지원 입법동향 및 재정전망	54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81
의안 비용추계 활용 실태 조사 결과	96
조세 동향 및 이슈	105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연장	106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주요내용	110
조세 이슈 및 분석	115
글로벌 조세지출의 현황 및 시사점	
- Global Tax Expenditures Database(GTED)를 중심으로 -	116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사적연금 세제 논의 동향	122
양도소득세액 결정요인의 세수증감 기여도 분석	137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153

재정추계 동향

2023년 1분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2023년 1분기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 동향



2023년 1분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이 광 근 · 태 정 립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54, 4652)

1. 총수입¹⁾

2023년 1분기 총수입은 145.4조원으로 전년동기(170.4조원) 대비 25.0조원(14.7%) 감소하였고, 예산대비 진도율은 23.2%로 전년동기(결산기준) 대비 4.4%p 감소

- (국세수입) 2023년 1분기 국세수입은 87.1조원으로 전년동기(111.1조원) 대비 24.0조원(21.6%) 감소
 - ▶ 주요 세목인 소득세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비롯 대부분의 세목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가운데, 증권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자산 관련 세수도 전년동기 대비 감소
 - ▶ 2023년 1분기 국세수입 진도율은 21.7%로 전년동기(결산기준) 대비 6.3%p 낮은 수준
- (국세외수입) 2023년 1분기 국세외수입은 58.3조원으로 전년동기(59.3조원) 대비 1.0조원(1.7%) 감소
 - ▶ 세외수입은 전년도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정부납입금 감소 등의 원인으로 3.6조원 감소하였으나,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납입금 증가 등의 원인으로 2.6조원 증가
 - ▶ 2023년 1분기 국세외수입 진도율은 25.9%로 전년동기(결산기준) 26.8% 대비 0.9%p 낮은 수준

표 1 2023년 1분기(1~3월 누계) 총수입 실적

(단위: 조원, %)

구분	1분기				진도율		'22 실적 (C)	'23 예산 (D)
	'22.1분기 (A)	'23.1분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22.1분기 (A/C)	'23.1분기 (B/D)		
총수입(1+2)	170.4	145.4	△25.0	△14.7	27.6	23.2	617.8	625.7
1. 국세수입	111.1	87.1	△24.0	△21.6	28.1	21.7	395.9	400.5
2. 국세외수입	59.3	58.3	△1.0	△1.7	26.8	25.9	221.6	225.3
- 세외수입	11.0	7.4	△3.6	△32.7	35.7	29.6	30.8	25.0
- 기금수입	48.3	50.9	2.6	5.4	25.3	25.4	190.8	200.3

주: 1. 2023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중앙정부의 총수입은 예산수입(국세수입 및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으로 구성됨. 다만, 여기서는 수입의 성격(국세인지 아닌지)을 기준으로 하여 총수입을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세외수입은 예산수입 중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합한 것으로 표기함.

2. 국세수입

가. 개관

2023년 1분기 국세수입은 87.1조원으로 전년동기(111.1조원) 대비 24.0조원(21.6%) 감소하였고, 예산대비 진도율은 21.7%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

- 소득세는 28.2조원으로 부동산 시장 부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35.3조원) 대비 7.1조원(20.1%) 감소
- 법인세는 24.3조원으로 2022년 법인 영업실적 감소에 따라 전년동기(31.1조원) 대비 6.8조원(21.9%) 감소
- 부가가치세는 16.5조원으로 '21년 하반기 집합금지 업종 등에 대한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²⁾ 등이 반영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5.6조원(25.4%) 감소
- 2023년 1분기 국세수입 진도율은 21.7%로 전년동기(결산기준) 28.1% 대비 6.3%p 낮고 최근 5년간 1분기 국세수입 진도율 평균(26.4%)과 비교할 때도 낮은 수준

표 2 2023년 1분기(1~3월 누계) 국세수입 실적

(단위: 조원, %)

구분	1분기				진도율		'22 실적 (C)	'23 예산 (D)
	'22.1분기 (A)	'23.1분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22.1분기 (A/C)	'23.1분기 (B/D)		
1. 국세수입	111.1	87.1	△24.0	△21.6	28.1	21.7	395.9	400.5
○ 소득세	35.3	28.2	△7.1	△20.1	27.4	21.4	128.7	131.9
- 종합소득세	3.9	1.7	△2.2	△55.4	16.3	7.1	23.9	24.7
- 양도소득세	9.3	4.3	△5.1	△54.3	28.9	14.3	32.2	29.7
- 근로소득세	18.8	18.5	△0.3	△1.6	32.6	30.4	57.4	60.6
○ 법인세	31.1	24.3	△6.8	△21.9	30.0	23.1	103.6	105.0
○ 상속·증여세	3.3	2.9	△0.4	△12.7	22.8	17.0	14.6	17.1
○ 부가가치세	22.1	16.5	△5.6	△25.4	27.1	19.8	81.6	83.2
○ 개별소비세	2.5	2.4	△0.1	△2.4	26.6	23.8	9.3	10.2
○ 증권거래세	2.0	1.2	△0.8	△38.8	32.0	24.9	6.3	5.0
○ 교통·에너지·환경세	3.2	2.6	△0.6	△19.1	28.8	23.3	11.1	11.1
○ 관세	2.8	1.9	△0.9	△33.2	27.5	17.7	10.3	10.7
○ 종합부동산세	0.2	0.2	△0.1	△21.9	3.5	3.2	6.8	5.7

2) 2021년 10월 코로나 대응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집합금지 업종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유예되면서 해당 세수가 2022년으로 이월되어 수납됨에 따른 기저효과 존재

구분	1분기				진도율		'22 실적 (C)	'23 예산 (D)
	'22.1분기 (A)	'23.1분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22.1분기 (A/C)	'23.1분기 (B/D)		
○ 기타 ¹⁾	8.5	6.9	△1.6	△19.1	36.1	33.5	23.5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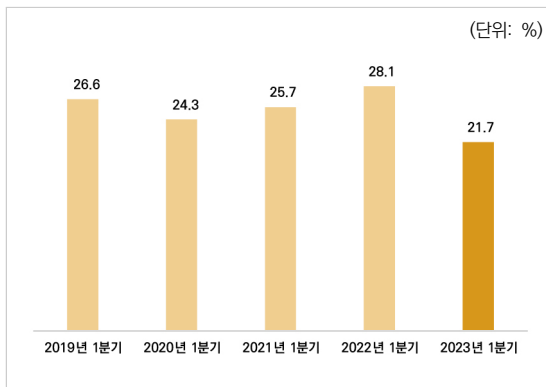
주: 1. 2023년 본예산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1) 인지세, 과년도수입, 교육세, 주세, 농어촌특별세로 구성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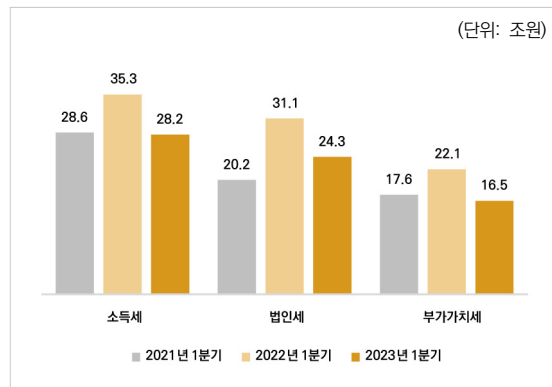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5년간 1분기 국세수입 진도율 추이



주: 2019~2022년은 실적 대비 진도율, 2023년은 본예산 대비 진도율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2 최근 3년간 주요 세목의 1분기 실적



나. 세목별 증감원인

소득세(28.2조원)는 전년동기 대비 7.1조원(20.1%) 감소하였으며 부동산 시장 부진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및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가 전년동기 대비 5.1조원(54.3%) 감소한 데에 주로 기인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시장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5.1조원(54.3%) 감소
 - 최근 5년간 1분기 양도소득세 수입의 추이(조원) : ('19) 4.1, ('20) 5.5, ('21) 8.6, ('22) 9.3, ('23) 4.3
- 종합소득세는 2021년 실시된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도 이연세수분 기저효과로 전년동기 대비 2.2조원(55.4%) 감소
 - 2021년 하반기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기연장에 따른 2022년 이연세수: △2.3조원

법인세(24.3조원)는 수출 둔화 등의 여파로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2022년 법인 영업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6.8조원(21.9%) 감소

- 2022년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법인의 영업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법인세는 전년동기 대비 6.8조원 감소

- ▶ 2022년 상장법인 세전순이익 증감률(전년대비, %): ('21) 121.6 → ('22) △25.5³⁾
- ▶ 주요 업종 당기순이익 증감률(전년대비, %): 화학 ('21) 942.4 → ('22) △15.4, 철강·금속 ('21) 550.0 → ('22) 32.8, 전기·전자 ('21) 61.5 → ('22) 9.4, 서비스업 ('21) 687.2 → ('22) △55.6

부가가치세(16.5조원)는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통관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5.6조원(25.4%) 감소

-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부가가치세 세수이연 기저효과: △3.4조원

그 외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 둔화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0.8조원(38.8%) 감소하였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 또한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0.6조원(19.1%) 감소

- KOSPI거래대금: ('21.12~'22.2) 641조원, ('22.12~'23.2) 439조원(전년동기 대비 31.5% 감소)
-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23.1.1.~8.31.) 휘발유 25% 및 경유 37%

3. 국세외수입

2023년 1분기 국세외수입은 58.3조원으로 전년 동기(59.3조원) 대비 1.0조원 감소하였고, 진도율은 25.9%로 전년 동기(26.8%) 대비 0.9%p 감소

- 2023년 1분기 국세외수입의 전년 대비 감소는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등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재산수입이 감소한 것(△3.7조원)에 주로 기인
 - ▶ 그 외 기금수입에서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감소(△1.2조원) 등

표 3 2023년 1분기(1~3월 누계) 국세외수입 실적

(단위: 조원, %)

구분	1분기				진도율		'22 실적 (C)	'23 예산 (D)
	'22.1분기 (A)	'23.1분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22.1분기 (A/C)	'23.1분기 (B/D)		
2. 국세외수입	59.3	58.3	△1.0	△1.7	26.8	25.9	221.6	225.2
○ 일반회계수입	7.6	4.2	△3.5	△46.1	46.8	42.9	16.3	9.7
- 재산수입	5.5	1.9	△3.7	△67.3	74.2	71.4	7.4	2.6
- 경상이전수입	1.9	2.1	0.2	△10.5	24.7	36.6	7.8	5.7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0.2	0.2	0.0	-	20.1	17.0	0.8	1.1
- 기타 ¹⁾	0.0	0.1	0.0	-	12.2	16.5	0.3	0.4

3) 대규모 적자(△24.4조원)가 발생한 한국전력 제외 시 △11.2%

구분	1분기				진도율		'22 실적 (C)	'23 예산 (D)
	'22.1분기 (A)	'23.1분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22.1분기 (A/C)	'23.1분기 (B/D)		
○ 특별회계수입	3.4	3.2	△0.2	△5.9	23.3	21.0	14.5	15.2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1.4	1.6	0.1	△7.1	22.2	25.4	6.5	6.2
- 재산수입	0.0	0.1	0.0	-	12.5	28.2	0.3	0.3
- 경상이전수입	1.0	0.8	△0.1	△10.0	20.7	19.6	4.6	4.3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0.4	0.4	0.0	-	28.9	24.0	1.5	1.8
- 기타 ¹⁾	0.5	0.3	△0.2	△40.0	32.6	10.7	1.4	2.8
○ 기금수입	48.3	50.9	2.6	5.4	25.3	25.4	190.8	200.3
- 사회보장기여금	21.1	22.9	1.7	8.1	25.3	26.5	83.4	86.1
- 재산수입	8.8	9.2	0.4	4.5	22.2	27.4	39.5	33.7
- 경상이전수입	10.5	12.0	1.5	14.3	32.6	32.9	32.2	36.4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4	1.7	0.3	21.4	15.6	17.7	9.0	9.4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5.9	4.7	△1.2	△20.3	24.2	14.7	24.3	32.0
- 기타 ²⁾	0.6	0.5	△0.0	0.0	24.4	18.4	2.3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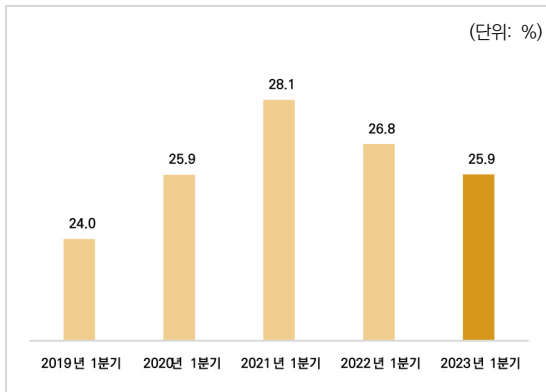
주: 1) 수입대체경비, 관유물매각대,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 수입대체경비, 관유물매각대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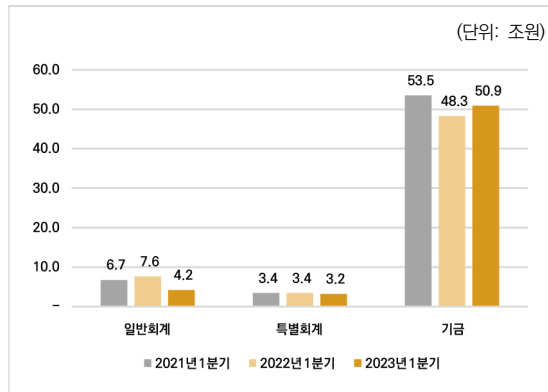
-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4.2조원으로 전년 동기(7.6조원) 대비 3.5조원(46.1%) 감소했으며, 진도율은 42.9%로 전년 동기(46.8%) 대비 3.9%p 하락
 - ▶ 1분기 세입조치된 2022년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정부납입금이 한은 외화증권 매매차익 감소, 통화안정증권 발행 비용 증가 등의 원인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원 감소('22) 5.5조원 → ('23) 1.8조원)
-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3.2조원으로 전년 동기(3.4조원) 대비 0.2조원(5.9%) 감소했으며, 진도율은 21.0%로 전년 동기(23.3%) 대비 2.3%p 하락
 - ▶ 경상이전수입이 0.1조원, 기타수입이 0.2조원 감소하고,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이 0.1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기 수입규모 대비 다소 감소한 수준
- 기금수입은 50.9조원으로 전년 동기(48.3조원) 대비 2.6조원(5.4%) 증가하였으며, 진도율은 25.4%로 전년 동기(25.3%) 대비 0.1%p 상승
 - ▶ 사회보장기여금이 1.7조원, 경상이전수입이 1.5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민연금, 직역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기여금 증가에 주로 기인
 -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는 1.2조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주택도시기금의 민간융자원금회수 감소에 주로 기인

그림 3 최근 5년간 1분기 국세외수입 진도율 추이



주: 2019~2022년은 실적 대비 진도율, 2023년은 제1차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4 최근 3년 1분기 실적



2023년 1분기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 동향

윤 주 철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55)

1. 국가채무 현황 및 국고채 발행 계획

2023년 3월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1,053.6조원이며, 이 중 국고채 잔액은 958.1조원

-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20.6조원 증가(발행 46.0조원, 상환 25.4조원), 주택채 잔액은 0.6조원 감소(발행 3.3조원, 상환 3.9조원), 외평채 잔액은 0.4조원 증가¹⁾

표 1 국가채무(중앙정부) 현황

(단위: 조원)

	중앙정부 채무	(GDP 대비, %)	국채 합계	국고채권	국민주택 채권	외평채권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
2017	627.4	(34.2)	623.3	546.7	69.4	7.2	3.8	0.2
2018	651.8	(34.3)	648.4	567.0	73.3	8.0	3.2	0.2
2019	699.0	(36.3)	696.3	611.5	76.4	8.3	2.6	0.1
2020	819.2	(42.2)	815.2	726.8	78.9	9.5	3.3	0.7
2021	939.1	(45.3)	937.0	843.7	82.2	11.2	2.0	0.1
2022	1,033.4	(48.1)	1,031.5	937.5	82.2	11.8	1.9	0.1
2023예산	1,101.7	(49.0)	1,100.3	999.0	86.8	14.5	1.2	0.2
2023.1	1,047.4	—	1,045.4	952.0	81.9	11.5	1.9	0.1
2023.2	1,061.0	—	1,059.1	965.1	81.8	12.3	1.8	0.1
2023.3	1,053.6	—	1,051.8	958.1	81.5	12.2	1.7	0.1

주: 1. 국채 합계에는 국제기구출자전환증권 등의 금액이 포함됨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단순합계 및 단순차감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3년 5월호)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3년도 예산 확정(2022.12.24.)으로 2023년 국고채의 총 발행 계획은 167.8조원, 일반회계 적자보전(적자국채) 등 순증 규모는 61.5조원, 차환 규모는 106.3조원으로 결정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공채 발행수입에서 일반회계에 위탁하는 금액인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고채(적자국채)는 45.8조원 규모로, 2022년 실적 대비 40.4조원 감소

1)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3년 5월호

표 2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

(단위: 조원)

	2019 실적	2020 실적	2021 실적	2022			2023 예산(B)	B-A
				본예산	추경	실적(A)		
총 발행	101.7	174.5	180.5	166.0	177.3	168.6	167.8	-0.8
순증	44.5	115.3	120.6	93.4	104.7	97.3	61.5	-35.7
(일반회계 적자보전)	(34.3)	(102.8)	(88.2)	(76.2)	(91.2)	(86.2)	(45.8)	(-40.4)
차환	57.2	59.2	59.9	72.6	72.6	71.4	106.3	34.9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2022.12.26.)

2. 국고채 발행 및 일반회계 적자보전 규모

2023년 3월 기준 국고채 잔액은 958.1조원이며, 1분기 발행 규모는 46.0조원, 상환 규모는 25.4조원

표 3 2022년 및 2023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실적

(단위: 조원)

	2022 계획	실적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잔액	937.5	858.7	877.6	885.7	904.3	921.9	910.3	923.6	933.4	931.4	940.7	948.9	937.5	—
발행	177.3	15.4	19.3	18.5	18.9	17.8	14.6	15.6	12.1	11.9	11.2	9.5	3.8	168.6
상환	80.1	0.4	0.4	10.4	0.3	0.2	26.1	2.3	2.3	12.0	3.8	1.3	15.2	74.8
	2023 계획	실적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잔액	999.0	952.0	965.1	958.1										—
발행	167.8	14.8	13.4	17.8										46.0
상환	106.3	0.3	0.3	24.8										25.4

주: 1. 2023년 계획은 본예산 기준이며, 1~3월은 월 실적 기준임

2. 2022년 상환 계획(80.1조원)에는 순상환 계획(7.5조원)이 포함되어 있어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의 2022년 차환 계획(72.6조원)보다 큼

3. 2022년 상환 실적(74.8조원)에는 순상환 실적(3.4조원)이 포함되어 있어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의 2022년 차환 실적(71.4조원)보다 큼

자료: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3년 5월호)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3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적자보전 계획은 45.8조원이며, 2023년 1분기 실적은 22.0조원

- 2022년의 경우 세수 호조 등으로 추경 기준 91.2조원의 일반회계 적자보전 계획은 실제 86.2조원만 집행

표 4 2022년 및 2023년 일반회계 적자보전 실적

(단위: 조원)

연도	계획	실적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	91.2	—	16.0	12.0	10.5	11.5	10.0	—	13.0	1.0	—	—	12.2	86.2
2023	계획	실적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3	45.8	4.0	6.0	12.0										22.0

주: 2023년의 경우 계획은 본예산 기준이며, 1~3월은 월 실적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국고채 금리 동향

2023년 3월 기준 국고채의 평균 조달금리는 3.41%로 2022년 10월 4.21% 이후 하락 추세

- 2022년 월별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2022년 10월 4.21% 이후 12월에 3.57%로 하락하였으며(연 기준 3.17%) 2023년 들어 하락 추세

표 5 최근 국고채 금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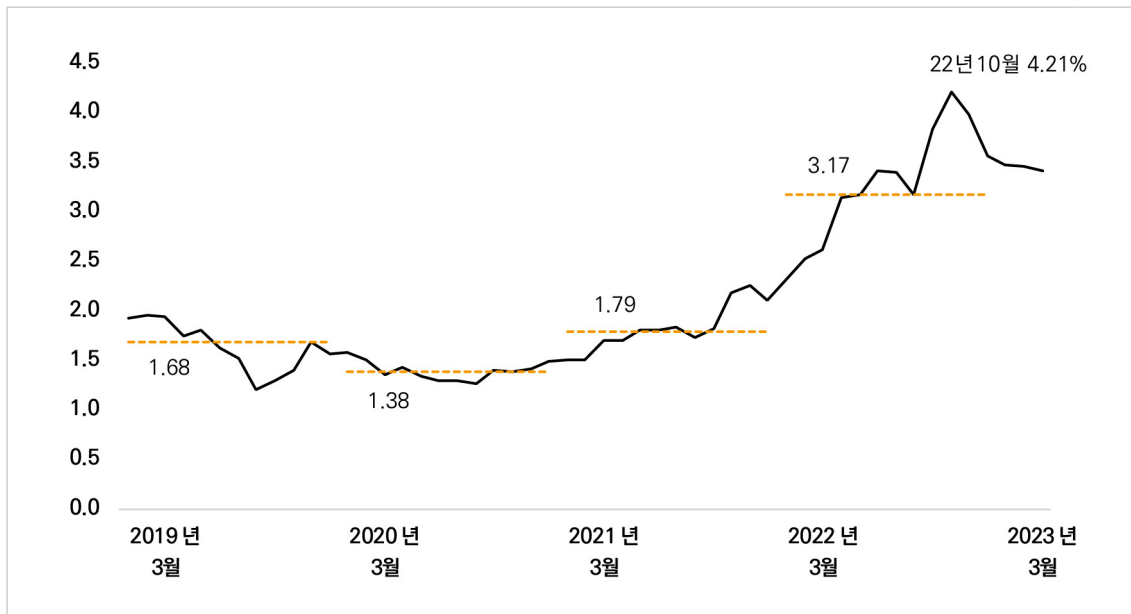
(단위: %)

		2021	2022	2023			2023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평균 조달금리		1.79	3.17	4.21	3.99	3.57	3.48	3.46	3.41
평균 유통금리	3년물	1.798	3.722	4.185	3.689	3.722	3.325	3.797	3.270
	5년물	2.011	3.743	4.263	3.697	3.743	3.299	3.829	3.274
	10년물	2.250	3.730	4.242	3.667	3.730	3.297	3.753	3.340
	30년물	2.310	3.683	4.073	3.689	3.683	3.307	3.588	3.340

자료: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3년 5월호)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1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 추이

(단위: %)



주: 실선은 월 기준 평균 조달금리, 점선은 연평균 조달금리를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의 「국채백서」(각연도)와 「월간 재정동향」(2023년 5월호)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입법 재정소요 추계

2023년 1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의안 비용추계 사례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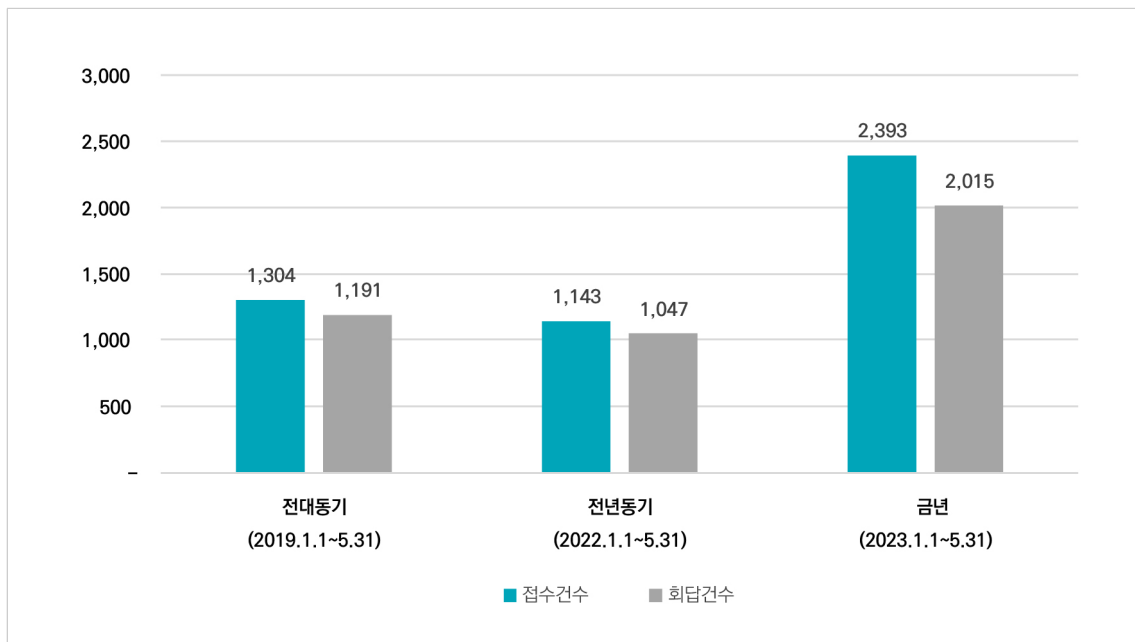
의안 비용추계 회답추이

(단위: 건,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5
비용추계(A+B)	1,994	3,020	3,407	3,179	2,779	4,645	4,910	4,009	2,015
비용추계	504	1,168	931	929	751	926	1,152	1,335	541
미첨부	845	869	1,264	990	1,019	1,919	1,474	654	380
미대상	645	983	1,212	1,260	1,009	1,800	2,284	2,020	1,094
공식추계율	37.4	57.3	42.4	48.4	42.4	32.5	43.9	67.1	58.8
지출추계(A)	1,623	2,521	2,921	2,722	2,354	3,978	4,334	3,468	1,772
비용추계	331	833	627	599	477	576	820	945	368
미첨부	691	758	1,141	884	895	1,661	1,276	530	315
미대상	601	930	1,153	1,239	982	1,741	2,238	1,993	1,089
공식추계율	32.4	52.4	35.5	40.4	34.8	25.7	39.1	64.1	53.9
세수추계(B)	371	499	486	457	425	667	576	541	243
비용추계	173	335	304	330	274	350	332	390	173
미첨부	154	111	123	106	124	258	198	124	65
미대상	44	53	59	21	27	59	46	27	5
공식추계율	52.9	75.1	71.2	75.7	68.8	57.6	62.6	75.9	72.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5월) 비용추계 회답현황



2023년 1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신 헌 태 · 박 정 환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53, 4835)

2023년 1분기 가결 법률 173건 중 재정수반법률은 60건*(전체의 34.7%)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 13건, 지출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 48건
- 수입법률 3건 및 지출법률 24건 등 27건에 대한 추계 결과 제시

수입법률 3건 시행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2조 1,906억원 수입 감소 예상

- 국가: 연평균 8,083억원, 지방: 연평균 1조 3,823억원 수입 감소 예상

지출법률 24건 시행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695억원 지출 증가 예상

- 국가: 연평균 392억원, 지방: 연평균 303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수입·지출 동시유발법률 1건 포함

** 추계금액은 2023~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금액으로 제시

1. 2023년 1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수반법률 현황

2023년 1분기 국회에서 가결되어 공포된 법률은 173건이며, 이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전체의 34.7%인 60건

- 이 중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27건의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¹⁾, 수입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은 3건²⁾, 지출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은 24건³⁾

1) 시행령 개정,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나타나지 않아 현시점에서 추계가 곤란한 33건은 제외하였으며, 미추계건 중 법안 가결 이후 정부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건은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2024년 발간예정)에서 추계규모 제시 예정

2) 수입 3개 법률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은 44개(수입증가 1개, 수입감소 43개 요인)

3) 지출 24개 법률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은 42개(지출증가 42개 요인)

표 1 2023년 1분기 가결 재정수반법을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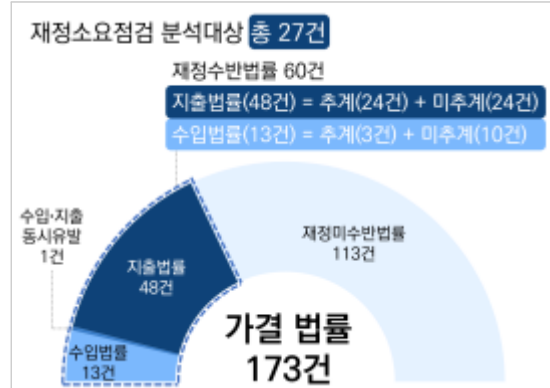
가결 법률	재정수반법률 (추계) ¹⁾		
	소개	수입법률	지출법률
173	60 ²⁾ (27)	13 (3)	48 (24)

주: 1) ()안은 추계가 곤란한 33건을 제외하고 재정소요를 점검한 법률 수

2) 수입·지출 동시유발법률 1건 포함

자료: NABOSTATS-간략조회-재정통계-가결법률의 재정소요점검-가결 재정수반법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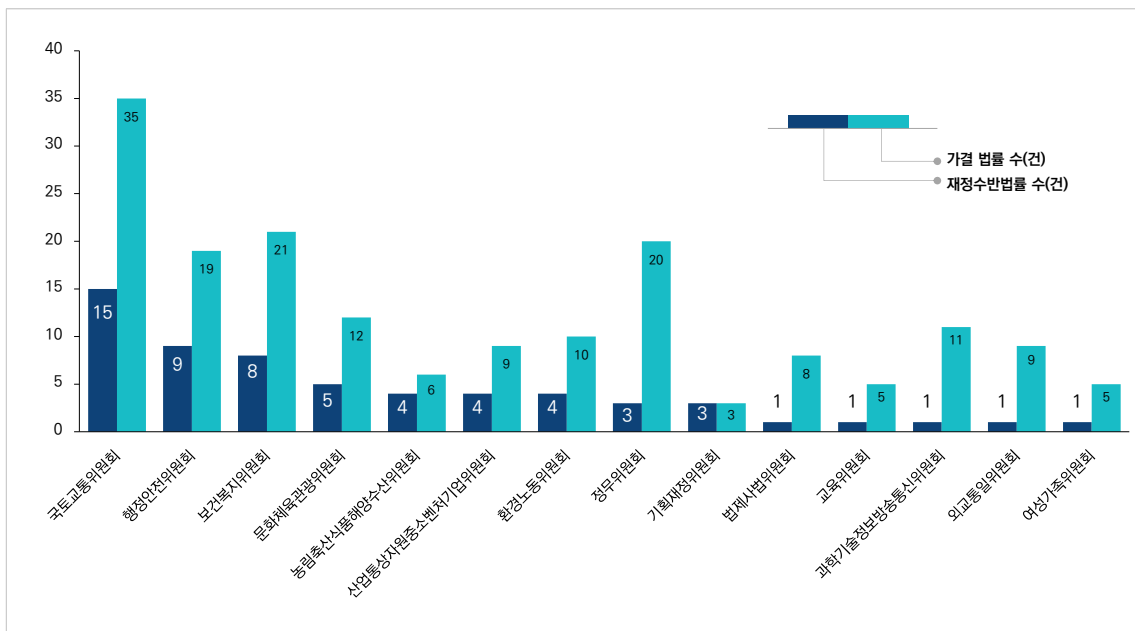
그림 1 2023년 1분기 재정소요점검 대상 법률 현황



- (위원회별) 2023년 1분기 재정수반법률 건수가 가장 많은 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15건), 행정안전위원회(9건) 및 보건복지위원회(8건) 순

➤ 가결 법률이 가장 많은 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35건), 보건복지위원회(21건), 정부위원회(20건) 순

그림 2 2023년 1분기 위원회별 가결 법률과 재정수반법률 현황



2. 2023년 1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가. 수입 부문

2023년 1분기에 가결된 수입법을 중 추계가 가능한 3건의 법률 시행으로 2023년부터 5년간 연평균 2조 1,906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

표 2 2023년 1분기 가결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구분		재정주체		수입 합계 (연평균 ¹⁾)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입 유형별	조세수입	-8,083	-13,823 (-6,839) ²⁾	-21,906 (-14,922) ²⁾
	세외수입	-	-	-
합 계		-8,083	-13,823 (-6,839) ²⁾	-21,906 (-14,922) ²⁾

주: 1) 향후 5년간(2023~2027년) 연평균 금액

2) ()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기존에 시행 중이던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효과를 제외한 금액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수입유형별) 조세수입이 연평균 2조 1,906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 조세수입: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상향 및 2023년 한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3건의 법률 시행으로 연평균 2조 1,906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
 - ※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기존에 시행 중이던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하면, 연평균 1조 4,922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
- (재정주체별) 국가 수입은 연평균 8,083억원, 지방자치단체 수입은 1조 3,82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 국가 수입: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상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를 한시 상향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1건의 법률 시행으로 연평균 8,083억원 수입 감소 예상
 - ▶ 지방자치단체 수입: 과표구간별 법인지방소득세를 0.1%p 인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을 규정한 「지방세법」 개정 및 생애최초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2건의 법률 시행으로 연평균 1조 3,823억원 수입 감소 예상
 - ※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기존에 시행 중이던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하면, 연평균 6,839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

- (위원회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수입법률 개정에 따라 연평균 1조 3,823억원 재정수입 감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수입법률 개정에 따라 연평균 8,083억원 재정수입 감소
 -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인세 과표별 세율 인하, 생애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2건, 연평균 1조 3,823억원)
 - ▶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조세특례제한법」 1건, 연평균 8,083억원)

표 3 2023년 1분기 가결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위원회별

위원회	소계 (A+B, 건)	추계		미추계 건수 ²⁾ (B, 건)
		건수 (A, 건)	추가재정소요 (연평균, ¹⁾ 억원)	
국회운영위원회	-	-	-	-
법제사법위원회	-	-	-	-
정무위원회	-	-	-	-
기획재정위원회	2	1	-8,083	1
교육위원회	-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	-
외교통일위원회	-	-	-	-
국방위원회	-	-	-	-
행정안전위원회	2	2	-13,823 (-6,839) ³⁾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	-	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	-
보건복지위원회	-	-	-	-
환경노동위원회	-	-	-	-
국토교통위원회	8	-	-	8
정보위원회	-	-	-	-
여성가족위원회	-	-	-	-
합 계	13	3	-21,906 (-14,922) ³⁾	10

주: 1) 향후 5년간(2023~2027년) 연평균 금액

2) 미추계 건수는 모든 재정수반조문을 추계하지 못한 건을 의미

3) ()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기존에 시행 중이던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효과를 제외한 금액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NABOSTATS-간략조화-재정통계-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가결 재정수반법률 결과(위원회별)

나. 지출 부문

2023년 1분기에 가결된 지출법을 중 추계가 가능한 24건의 법률 시행으로 2023년부터 5년간 연평균 695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표 4 2023년 1분기 가결 지출법을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구분		재정주체		지출 합계 (연평균 ¹⁾)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출 유형별	의무지출	-	-	-
	재량지출	392	303	695
합계		392	303	695

주: 1) 향후 5년간(2023~2027년) 연평균 금액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출유형별) 재량지출이 연평균 695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의무지출 해당사항 없음)
 - ▶ 재량지출: 다화용기 회수·세척 재공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등 24건 법률 시행으로 연평균 695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재정주체별) 국가 지출은 연평균 392억원, 지방자치단체 지출은 연평균 303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국가 지출: 모빌리티 특화도시 및 실증사업 지원 등을 규정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22건 법률 시행으로 연평균 392억원 지출 증가 예상
 - ▶ 지방자치단체 지출: 심야시간대·공휴일 운영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 등 8건⁴⁾ 법률 시행으로 연평균 303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위원회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지출법률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연평균 221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토교통위원회(연평균 175억원), 보건복지위원회(연평균 107억원) 순으로 지출에 영향
 - ▶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다화용기 회수·세척 재공급 사업자 지원 등(「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3건, 연평균 221억원)
 - ▶ 국토교통위원회위원회 소관: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원 등(「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건, 연평균 175억원)
 -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지원 등(「약사법」 등 5건, 연평균 107억원)

4)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출 동시유발법률인 「구강보건법」, 「건축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취방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 6건 포함

표 5 2023년 1분기 가결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위원회별

위원회	소계 (A+B, 건)	추계		미추계
		건수 (A, 건)	추가재정소요 (연평균, ¹⁾ 억원)	건수 ²⁾ (B, 건)
국회운영위원회	-	-	-	-
법제사법위원회	1	0	0	1
정무위원회	3	3	29	0
기획재정위원회	1	0	0	1
교육위원회	1	1	1	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1	4	0
외교통일위원회	1	1	3	0
국방위원회	-	-	-	-
행정안전위원회	7	2	78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5	1	27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	2	50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	1	0	3
보건복지위원회	8	5	107	3
환경노동위원회	4	3	221	1
국토교통위원회	7	4	175	3
정보위원회	-	-	-	-
여성가족위원회	1	0	0	1
합 계	48	24	695	24

주: 1) 향후 5년간(2023~2027년) 연평균 금액

2) 미추계 건수는 모든 재정수반조문을 추계하지 못한 건을 의미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NABOSTATS-간략조회-재정통계-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가결 재정수반법률 결과(위원회별)

3. 2023년 1분기 가결 재정수반법률 주요 사례

[주요 사례: 수입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대안, 2023.3.30. 의결)

-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를 상향 및 2023년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를 한시 상향 등에 따라 2023~2027년 연평균 8,083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2023.4.11. 시행)
 -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8~16%에서 15~25%로 상향하고, 2023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세액공제율 상향

표 6 현행 및 개정안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율

(단위: %)

구 분	현행				개정안			
	당기분			증가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5	10	3	1 (3)	5 (7)	10 (12)	3 (10)
신성장 · 원천기술	3	6	12	3	3 (6)	6 (10)	12 (18)	3 (10)
국가전략기술	8	8	16	4	15	15	25	4 (10)

주: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안은 2023년 투자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 2023년 1년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한시 상향

표 7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수입 변동: 2023~2027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및 2023년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	-29,991	-8,131	-	-	-38,122	-7,62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분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2,294	-	-	-	-2,294	-459
합 계	-	-32,285	-8,131	-	-	-40,416	-8,083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대안, 2023.2.27. 의결)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설 등에 따라 2023~2027년 연평균 5,189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2023.3.14. 시행)
 - ▶ 「지방세법」 개정은 2022년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국세 세법개정의 연계 사항
 - ▶ 법인지방소득세 과표구간별 세율 1~2.5%에서 0.9~2.4%로 0.1%p 인하
 - ▶ 개인지방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각각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 1,200~4,600만원에서 1,400~5,000만원으로 확대
 -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2025년부터 시행

표 8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수입 변동: 2023~2027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하	-313	-3,603	-3,742	-3,911	-4,091	-15,660	-3,132
개인지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1,604	-3,440	-3,005	-3,089	-3,179	-14,317	-2,863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설	-	-	807	1,613	1,613	4,033	807
합 계	-1,917	-7,043	-5,940	-5,387	-5,657	-25,944	-5,189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대안, 2023.2.27. 의결)

- 생애최초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에 따라 2023~2027년 연평균 8,684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2023.3.14. 시행)
 - ▶ 생애최초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3.12.31.에서 2025.12.31.로 연장하고, 감면요건의 소득기준 삭제 및 주택 취득가액 기준 완화
 - ※ 소득 기준: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 삭제,
 - 주택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4억원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지역과 무관하게 12억원 이하
 -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거나 조성공사가 시행중인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2.12.31.에서 2025.12.31.로 연장
 - ▶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등 시행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2.12.31.에서 2025.12.31.로 연장
 -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2.12.31.에서 2025.12.31.로 연장

- ▶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조정하고, 재산세 감면기간을 5년간으로 설정하며, 적용기한을 2022.12.31.에서 2025.12.31.로 연장
 - 감면율: (취득세) 설립자 35%, 입주기업 50% → 35%, (재산세) 37.5% → 35%
 - 재산세 감면기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해연도 →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 ※ 재산세 감면기간이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된 2025년 이후에도 세수효과 발생
- ▶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을 기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모든 법인으로 확대하여 법인에 특성에 따라 감면율을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2022.12.31.에서 2025.12.31.로 연장

표 9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개정 내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대상)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모든 법인·단체
	(감면율) -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주민세 각 100%* *단, 취득세·재산세의 경우 최소납부세제 적용	(감면율 변동사항) - (사회복지법인 등 ¹⁾) 재산세 50%+50%p*,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종료 -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등 ²⁾) 취득세·재산세 25%+50%p*,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종료 *조례로 추가 감면율(50%p)규정 가능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민세 100%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주: 1) 사회복지법인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한센인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을 의미

2)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등을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2.12.31.에서 2024.12.31.로 연장
- ▶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2.12.31.에서 2024.12.31.로 연장

표 10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수입 변동: 2023~2027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생애최초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2,206	-3,003	-3,003	-	-	-8,212	-1,642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2,609	-2,609	-2,609	-	-	-7,827	-1,565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2,368	-2,368	-2,368	-	-	-7,104	-1,421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525	-1,525	-1,525	-	-	-4,575	-915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1,106	-1,119	-1,132	-90	-90	-3,537	-707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749	-765	-781	-	-	-2,295	-459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767	-767	-	-	-	-1,534	-307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725	-725	-	-	-	-1,450	-290
기타 ¹⁾	-2,186	-2,213	-2,236	-	-	-6,635	-1,327
합 계	-14,241	-15,094	-13,654	-90	-90	-43,169 (-8,252) ²⁾	-8,634 (-1,650) ²⁾

주: 1) 기타 재정수반요인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을 포함

2) ()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기존에 시행 중이던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효과를 제외한 금액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사례: 지출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안, 2023.2.27. 의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실시함에 따라 2023~2027년 연평균 144억 7,900만원의 지출 증가 예상(2024.3.29. 시행5))
 - ▶ 다회용기 회수·세척 재공급 사업자 지원은 환경부의 2023년도 예산을 참고하여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과 다회용기 세척장 조성 사업으로 구분
 -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은 전국의 3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별 사업비 평균은 2023년도 예산 기준 4억 1,200만원이고, 국고 보조율은 50%임
 - 다회용기 세척장 조성 사업은 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2023년도 예산 기준 2억원이고, 국고 보조율은 70%임
 - ▶ 연도별 추가재정소요 예상액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산

표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다회용기 회수·세척 재공급 사업자 지원	138	142	145	148	151	724	145
-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136	140	143	146	149	713	143
• 국가	68	70	71	73	74	357	71
• 지방자치단체	68	70	71	73	74	357	71
- 다회용기 세척장 조성	2.0	2.1	2.1	2.1	2.2	10.5	2.1
• 국가	1.4	1.4	1.5	1.5	1.5	7.3	1.5
• 지방자치단체	0.6	0.6	0.6	0.6	0.7	3.1	0.6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대안, 2023.3.30. 의결)

-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함에 따라 2023~2027년 연평균 93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2024.4.18. 시행)
 - ▶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필요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에 운영시간, 시간당 운영비, 운영일수를 곱하고, 추가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추계

5) 다회용기 회수·세척 재공급 사업자 지원사업은 환경부 사업으로 2021~202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부터 본사업 예산 배정

- 공공심야약국 미운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는 2023년 178개
- 심야시간대 운영시간은 3시간(22시~익일 1시), 공휴일 운영시간은 12시간(10~22시)이며, 시간당 운영비는 3만원으로 가정
- 운영일수는 심야시간은 365일, 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일요일로 계산
- 비도심 지자체의 약국에는 1개월당 350만원의 추가보조금 지급

표 12 약사법 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지원	-	117	117	117	117	465	93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대안, 2022.3.30. 의결)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하여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원 및 실증사업 지원 등을 실시함에 따라 2023~2027년 연평균 90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2023.10.19. 시행)
 -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을 참조하여 추산
 -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원금액은 신규 및 공모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포함
 - 모빌리티 실증사업 지원금액은 실증사업 대상을 15건으로 가정하여 지원금액 2억원/건, 책임보험료 5백만원/건에 법률자문 및 컨설팅 비용 3억원을 합산

표 13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원	27	27	40	45	50	189	38
모빌리티 실증사업 지원	-	34	34	34	34	135	27
모빌리티 지원센터 지정·지원	-	17.5	17.5	17.5	17.5	70	14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5.5	5.5	5.5	5.5	22	4.4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	5	5	5	5	20	4
첨단모빌리티 기반시설 등 지원	-	2.5	2.5	2.5	2.5	10	2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설치	-	0.5	0.5	0.5	0.5	2	0.5
모빌리티 데이터 분석·관리	-	0.9	-	0.1	0.1	1.2	0.2
합 계	27	93	105	110	115	449	90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부록] 2023년도 1분기 주요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수반요인 및 추계 현황

(단위: 억원)

수입 지출	의안 번호	의안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2023~2027년	
			합계	연평균
수입	21202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169	-8,634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21209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416	-8,083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상향 등)		
	21202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944	-5,189
		(개인지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지출	212024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24	145
		(다회용기 회수·세척 재공급 사업자 지원)		
	21209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5	93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지원)		
	2120944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449	90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원 등)		
	2120071	약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9	76
		(약취방지사설 설치비용 지원 등)		
	2117389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대표발의)	240	48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1167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대표발의)	220	44
		(소방정보통신망 이중화)		
	21209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9	34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에 대안교육기관 추가 등)		
	211550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136	27
		(예술활동 증명업무 담당기관 확대)		
	2111603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의원 대표발의)	119	24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 지정)		

주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동을 초래하는 법률
 2. 2023~2027년 합계 100억원 이상의 재정변동이 예상되는 법률 제시
 3.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수현 추계세제분석관보 (02-6788-3735)

1. 비용추계 개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2.06.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은 방음터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음시설에 대하여 방음터널 등의 설치자에게 정기적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5년간(2024~2028년) 178억 6,900만원 이상, 연평균 35억 7,300만원 이상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

표 1 비용추계 개요

의안명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제 19838호)
발의일	2023.2.6.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주요내용	방음터널의 안전점검 실시
심사경과	환경노동위원회 회부(2023.02.07.) 및 상정(2023.04.25.)
추계결과	5년간(2024~2028년) 179억원, 연평균 36억원

2.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방음터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음시설에 대하여 방음터널 등의 설치자에게 정기적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5년간(2024~2028년)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비용추계 대상은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음터널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비용임
 -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인 방음터널 등 설치자의 방재기준 준수와 관련하여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 본 추계에서는 방음터널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2종시설물로 지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11개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113개 방음터널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비용을 추계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5조¹⁾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 중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점검환경에 따라 상이한 인건비 야간할증 및 선택과업비(실비 계상)를 제외한 기본과업비(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를 산출함
- 방음터널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²⁾의 안전점검 B 또는 C등급으로 가정하고, 비고 9에 의하여 정밀안전점검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아래와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 정밀안전점검: 2024년, 2026년, 2028년에 실시
 - ▶ 정기안전점검: 2024년/ 2026년/ 2028년 각 1회(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해)
2025년/ 2027년 각 2회 실시(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해)
- 직접인건비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계

표 2 비용추계 산식

$$\begin{aligned} \text{추가재정소요(2024~2028년)} &= \text{방음터널의 안전점검 비용} \\ &= \text{직접인건비}^{1)} + \text{제경비}^{2)} + \text{기술료}^{3)} + \text{직접경비}^{4)} \end{aligned}$$

1) 직접인건비: 54억 5,600만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1의 기준시설물 규격에 따라 기준인원수를 산정하고(별표 22의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를 토대로 별표 24로 조정), 산출된 인원내 별표 23의 시설물별 조정비 및 지침 제62조의 보정비를 적용하여 필요한 최종 인원수를 아래와 같이 산정

→ 정밀안전점검 2,887인·일, 정기안전점검 1,150인·일

- 필요 인원수에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건설 부문 고급기술자) 282,545원(2022년 기준)을 곱하여 최종 직접인건비를 산출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반영

2) 제경비: 62억 7,400만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7조에 따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접인건비의 115%로 산출

3) 기술료: 35억 1,900만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8조에 따라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로 산출

4) 직접경비: 26억 1,800만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5에 따라 직접경비는 실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국토안전관리원 제출자료인 정밀안전점검 관련 연구·용역의 직접인건비 대비 직접경비 비율을 참고하여 직접인건비의 48%로 산출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39호)

제55조(비용의 산정기준 원칙) 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이하 "대가"라 한다)은 제3장 및 제4장에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과업비(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와 선택과업비(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B·C 등급	반기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비고 9.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3. 비용추계 상세 내역

국토교통부 소관 11개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113개의 방음터널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직접인건비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인 5년 동안 54억 5,600만원으로 추계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1의 기준시설물의 규격에 따른 기준인원수를 산정하고(별표 22의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를 토대로 별표 24로 조정), 산출된 인원내 별표 23의 시설물별 조정비 및 지침 제62조의 보정비를 적용하여 필요한 최종 인원수를 아래와 같이 산정
 - ▶ 정밀안전점검 2,887인·일, 정기안전점검 1,150인·일
 - 국토교통부 소관 11개 방음터널: 정밀안전점검 248인·일, 정기안전점검 99인·일
 - 지방자치단체 소관 113개 방음터널: 정밀안전점검 2,639인·일, 정기안전점검 1,051인·일
- 필요 인원수에 2022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중 건설 부문 고급기술자 평균임금 282,545원을 곱하여 최종 직접인건비를 산출
 - ▶ 직접인건비 = 필요 인원수(인·일)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고급기술자)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반영

표 3 방음터널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의 직접인건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정밀안전점검	필요 인원수(A, 인·일)	2,887	-	2,887	-	2,887	8,661
	노임 단가(B, 백만원)	0.3	-	0.32	-	0.34	-
	소계(C=A×B, 백만원)	880	-	942	-	1,004	2,827
정기안전점검	필요 인원수(D, 인·일)	1,150	1,150	1,150	1,150	1,150	5,750
	노임 단가(E, 백만원)	0.3	0.31	0.32	0.33	0.34	-
	횟수(F, 회)	1	2	1	2	1	7
	소계(G=D×E×F, 백만원)	350	726	375	775	400	2,628
합계(H=C+G, 백만원)		1,231	726	1,317	775	1,404	5,456

자료: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주: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횟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제경비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인 5년 동안 62억 7,400만원으로 추계됨

-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 등을 포함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7조에 따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접인건비의 115%로 산출

기술료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인 5년 동안 35억 1,900만원으로 추계됨

- 기술료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8조에 따라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로 산출

직접경비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인 5년 동안 26억 1,800만원으로 추계됨

- 직접경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9조에 따라 안전점검등 성능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등의 현지역비 및 체재비,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함. 계상기준은 별표 25 직접경비 비용산정 기준에 따라 실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국토안전관리원 제출자료인 정밀안전점검 관련 연구·용역의 직접인건비 대비 직접경비 비율을 참고하여 직접인건비의 48%로 산출

개정안에 따라 방음터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2024~2028년) 총 178억 6,900만원(연평균 35억 7,3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4 방음터널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비용 추계: 2024~2028년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연평균
직접인건비(A)	1,231	726	1,317	775	1,404	5,456	1,091
제경비(B)	1,416	835	1,515	891	1,615	6,274	1,254
기술료(C)	794	468	849	500	906	3,519	703
직접경비(D)	591	348	632	372	674	2,618	523
합계(E=A+B+C+D)	4,032	2,380	4,315	2,539	4,600	17,869	3,573

주: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 횟수 및 필요 인원수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변동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참고사항

-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유사하게 방음터널의 재질 기준을 불연·난연재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으며,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결과 이를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2023.5.24.)하여 2023.6.19.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임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561, 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807, 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0105,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0304, 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0340,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윤 경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742)

1. 비용추계 개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2023.4.4. 신동근의원 대표발의)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고, 부모급여 지급액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5년간(2024~2028년) 총 40조 5,657억원, 연평균 8조 1,131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

표 1 비용추계 개요

의안명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제21118호)
발의일	2023.4.4.
대표발의	신동근 의원
주요내용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 부모급여 지급액 변경
심사경과	보건복지위원회 회부(2023.4.5.)
추계결과	5년간(2024~2028년) 40조 5,657억원, 연평균 8조 1,131억원

2.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지급대상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높이고 지급액을 월 20만원으로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총재정소요에서 현행 제도(8세 미만, 월 10만원)를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총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산출

-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는 13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대상자 수에 1인당 지급액(월 20만원)을 곱하여 산출
-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소요는 8세 미만 아동 수에 1인당 지급액(월 10만원)을 곱하여 산출
- 아동수당 지급대상자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에 따른 13세 미만 아동 수(개정안)와 8세 미만 아동 수(현행)를 적용
- 국고보조율은 2023년 예산 기준 평균보조율 75.6%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2 |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기준**

	현행	개정안
지급대상	8세 미만 아동	13세 미만 아동
월 지급액	10만원	20만원

부모급여 지급액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80만원으로 변경할 경우 예상되는 총재정소요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총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산출

-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는 2세 미만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수에 1인당 지급액(월 80만원)을 곱하여 산출
-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소요는 0세 아동 수에 1인당 지급액(월 70만원)을, 1세 아동 수에 1인당 지급액(2024년 월 40만원, 2025년 이후 월 50만원)을 곱하여 산출
 -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이후 0세와 1세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액을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나, 「아동수당법」 개정¹⁾에 따른 향후 실제 지원단가를 현 시점에서 알 수 없으므로 0세의 경우 2023년 현행 지원단가(70만원)를, 1세의 경우 현행 「아동수당법」에 따른 지원단가를 각각 적용
-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에 따른 0세 아동 수와 1세 아동 수에 가정양육수당 지급률(2022년 기준 0세 91.7%, 1세 55.0%)을 각각 적용하여 추정
 - ▶ 부모급여 지원은 어린이집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제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의 비율을 장래인구추계의 0세와 1세 전체 아동 수에 각각 적용
- 국고보조율은 2023년 예산 기준 평균보조율 68.85%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3 |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부모급여 지급기준**

		현행		개정안
		2023년	2024년 이후	2024년 이후
월 지급액	0세	70만원	100만원	80만원
	1세	35만원	50만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2022년 8월 22일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제2116957호)이 2023년 5월 25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됨. 개정 법률은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제4조제5항)하고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까지 30만원 이상의 금액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부칙 제6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변경할 지원단가를 현 시점에서 알 수 없음

[참고] 부모급여 지급단가

2022년 이후 부모급여 사업 지급단가 변화 비교

구분	2022년	2023년		
	영아수당 ¹⁾	현행 부모급여 지원 사업 ²⁾	개정안(제21118호) (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개정 법률 ³⁾
0세	월 30만원	월 70만원	월 80만원	월 50만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세		월 35만원		※ 부칙제6조: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까지 30만원 이상의 금액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지급
향후 지급계획	2023년 월 35만원 2024년 월 40만원 2025년 월 50만원	0세 2024년 월 100만원 1세 2024년 월 50만원	-	-
비고	-	-	-	부칙 제2조에 따라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2023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당시 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대해서도 적용

주: 1) 영아수당은 2022년에 신규 도입된 재정사업으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아에 대하여 현금급여를 지급
2) 부모급여는 2023년에 기존 영아수당에서 전환된 사업으로,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아에 대하여 현금급여를 지급
3) 2022년 8월 22일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5월 25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4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요소(2024~2028년) =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요소 (A)

+ 부모급여 지급액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요소 (B) 이 때, t 는 추계연도(2024~2028년)

(A)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요소 $_t$ =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요소 $_t$ ¹⁾ -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요소 $_t$ ²⁾

* 국고보조율은 2023년 예산 기준 평균보조율 75.6%를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적용

1) 개정안에 따른 총 재정요소 $_t$ = 지급대상 아동 수 $_t$ ^{a)} × 1인당 월 지급액^{b)} × 12개월 × 신청률^{c)}

a) 지급대상 아동 수 $_t$ 는 13세 미만 아동으로,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 결과(중위 시나리오 기준)를 적용

b) 1인당 월 지급액은 20만원

c) 신청률은 2023년 예산 기준 99.6%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2)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요소 $_t$ = 지급대상 아동 수 $_t$ ^{d)} × 1인당 월 지급액^{e)} × 12개월 × 신청률^{c)}

d) 지급 대상 아동 수 $_t$ 는 8세 미만 아동으로,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 결과(중위 시나리오 기준)를 적용

e) 1인당 월 지급액은 현행 지급기준인 10만원

(B) 부모급여 지급액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요소 $_t$ =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요소 $_t$ ³⁾ -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요소 $_t$ ⁴⁾

* 국고보조율은 2023년 예산 기준 평균보조율 68.85%를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적용

3) 개정안에 따른 총 재정요소 $_t$ = 지급대상 아동 수 $_{i,t}$ ^{f)} × 1인당 월 지급액^{g)}

f) 지급대상 아동 수 $_t$ 는 2세 미만 아동으로,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 결과(중위 시나리오 기준)를 적용

g) 1인당 월 지급액은 80만원

4)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요소 $_t$ = 지급대상 아동 수 $_{i,t}$ ^{f)} × 1인당 월 지급액 $_i$ ^{h)} 이 때, i 는 0세($i=1$)와 1세($i=2$)

h) 1인당 월 지급액은 현행 지급기준인 0세 70만원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며, 1세는 2024년 40만원, 2025년부터 50만원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

3. 비용추계 상세 내역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에 따른 비용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36조 6,457억원으로 추계

- 8~12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신규 지급하고 지급액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에서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산출

표 5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연평균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A)	108,699	103,024	97,900	93,762	89,747	493,132	98,626
- 국비	82,176	77,886	74,013	70,884	67,849	372,808	72,589
- 지방비	26,522	25,138	23,888	22,878	21,898	120,324	26,037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소요(B)	27,823	26,003	24,810	24,116	23,924	102,751	20,550
- 국비	21,034	19,658	18,757	18,232	18,086	75,625	15,125
- 지방비	6,789	6,345	6,054	5,884	5,837	27,126	5,425
합 계(A-B)	80,876	77,021	73,090	69,646	65,824	366,457	73,291
- 국비	61,142	58,228	55,256	52,653	49,763	277,041	55,408
- 지방비	19,734	18,793	17,834	16,994	16,061	89,415	17,883

주: 국비는 2023년 예산기준 평균 국고보조율 75.6%를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부모급여 지급액 변경에 따른 비용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3조 9,200억원으로 추계

- 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월 8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에서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산출
- 개정안에 따른 부모급여 지원단가는 0세와 1세 모두 추계기간 동안 월 8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현행 부모급여 지원단가는 0세의 경우 2023년 기준 지원단가인 월 70만원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고 1세의 경우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및 부칙 제6조에 따라 2024년에 월 40만원, 2025년부터 월 50만원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이후 0세와 1세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액을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나, 「아동수당법」 개정(2023.5.25.)에 따른 향후 실제 지원단가를 현 시점에서 알 수 없으므로 0세의 경우 2023년 현행 지원단가(70만원)를, 1세의 경우 현행 「아동수당법」에 따른 지원단가를 각각 적용
 - ▶ 참고로,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따른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현금급여 지급 사업은 2022년에 신규 도입된 「영아수당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다가, 2023년에 2세 미만에 대한 현금급여 지급 수준이 확대되면서 “부모급여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었음

표 6 부모급여 지급액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요소: 2024~2028년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연평균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요소(A)	33,090	32,655	33,957	35,851	37,669	173,221	34,644
- 국비	22,782	22,483	23,379	24,683	25,935	119,263	23,853
- 지방비	10,307	10,172	10,578	11,168	11,734	53,958	10,792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요소(B)	24,171	25,533	26,649	28,126	29,542	134,022	26,804
- 국비	16,642	17,580	18,348	19,365	20,340	92,274	18,455
- 지방비	7,529	7,954	8,301	8,761	9,202	41,748	8,350
합 계(A-B)	8,919	7,121	7,308	7,725	8,127	39,200	7,840
- 국비	6,140	4,903	5,032	5,318	5,595	26,989	5,398
- 지방비	2,778	2,218	2,276	2,406	2,532	12,211	2,442

주: 국비는 2023년 예산기준 평균 국고보조율 68.85%를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에 따른 비용과 부모급여 지급액 변경에 따른 비용을 합하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요소는 5년간(2024~2028년) 총 40조 5,657억원(연평균 8조 1,131억원)으로 추계

표 7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와 부모급여 지급액 변경에 따른 비용 추계: 2024~2028년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연평균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A)	80,876	77,021	73,090	69,646	65,824	366,457	73,291
- 국비	61,142	58,228	55,256	52,653	49,763	277,041	55,408
- 지방비	19,734	18,793	17,834	16,994	16,061	89,415	17,883
부모급여 지급액 변경(B)	8,919	7,121	7,308	7,725	8,127	39,200	7,840
- 국비	6,140	4,903	5,032	5,318	5,595	26,989	5,398
- 지방비	2,778	2,218	2,276	2,406	2,532	12,211	2,442
합 계(A+B)	89,795	84,143	80,398	77,371	73,950	405,657	81,131
- 국비	67,283	63,131	60,288	57,971	55,358	304,030	60,806
- 지방비	22,512	21,011	20,110	19,400	18,592	101,626	20,325

주: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의 국고보조율은 2023년 예산기준 평균 국고보조율 75.6%와 68.85%를 각각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 형 수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67)

1. 비용추계 개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023. 2. 3. 임병헌의원 대표발의)은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서관으로 임용하기 위해 군사교육 소집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¹⁾, 5년간(2024~2028년) 시나리오1은 15억 4,500만원(연평균 3억 900만원), 시나리오2는 9억 2,500만원(연평균 1억 8,500만원), 시나리오3은 3억 1,000만원(연평균 6,2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

표 1 비용추계 개요	
의안명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제2119802호)
발의일	2023. 2. 3.
대표발의	임병헌 의원
주요내용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서관으로 임용하기 위해 군사교육을 소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심사경과	국방위원회 회부(2023. 2. 6.), 상정((2023. 4. 6.)
추계결과	시나리오1(병사 연간 전역인원 24만 5,000명 중 0.7%(1.4%의 50%)) : 5년간(2024~2028년) 15억 4,500만원, 연평균 3억 900만원 시나리오2(병사 연간 전역인원 24만 5,000명 중 0.42%(1.4%의 30%)) : 5년간(2024~2028년) 9억 2,500만원, 연평균 1억 8,500만원 시나리오3(병사 연간 전역인원 24만 5,000명 중 0.14%(1.4%의 10%)) : 5년간(2024~2028년) 3억 1,000만원, 연평균 6,200만원

1) 개정안의 취지는 전시 소요대비 부족한 동원예비군 간부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2.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예비역 병사의 예비역 부사관 임용을 위한 군사교육 소집 시 5년간(2024~2028년)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비용추계 대상은 예비역 부사관 임용을 희망하는 예비역 병사 인원에 대하여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요비용
 - ▶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병사의 연간 전역인원은 약 24만 5,000명임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예비역 병사인원은 예비역 간부의 진급선발률을 반영하여 산출

- 현 시점에서 예비역 병사의 예비역 부사관으로의 선발률을 알 수 없으므로, 유사사례인 예비역 간부의 진급 선발률을 반영하여 산출
 - ▶ 최근 5년간 연간 부사관 전역 평균 인원은 약 7,600명으로 이 중 예비역 간부 진급 선발(중사·상사)²⁾ 인원은 약 110명으로 선발률은 1.4%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을 위한 군사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강사로 및 여비 등을 제외하고, 피복비만을 반영하여 산출

-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하는 경우 해당 임용 예정자에게 군사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이에 따른 교육비, 강사로 및 피복비 등이 소요될 것이나, 예비역 병사가 예비역 군 간부로 임용되어 교육을 받게 되면, 기존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군 훈련 예산³⁾소요가 적어지므로, 본 추계에서는 피복비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⁴⁾
 - ▶ 예비역 간부의 진급을 위한 군사교육 예산에 반영된 피복비 단가(2022년 기준) 적용

표 2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2024~2028년) = 예비역 병사의 예비역 부사관 임용 시 발생하는 군사교육비용(피복비¹⁾ × 대상자²⁾

1) 피복비 = 1인당 예비역 부사관 군사교육비(피복비): 18만원

2) 대상자

- (시나리오1) 병사 연간 전역인원 24만 5,000명 중 0.7%(1.4%*)의 50%)를 적용하여 1,715명으로 가정
 - (시나리오2) 병사 연간 전역인원 24만 5,000명 중 0.42%(1.4%의 30%)를 적용하여 1,029명으로 가정
 - (시나리오3) 병사 연간 전역인원 24만 5,000명 중 0.14%(1.4%의 10%)를 적용하여 343명으로 가정
- (*) 1.4% = 연간 부사관 전역 인원 7,600명 대비 예비역 간부 진급 선발(중사·상사) 인원 110명

2) 예비역 하사에서 예비역 중사로, 예비역 중사에서 예비역 상사로 진급하는 것을 말함

3) 국방부 2023년 동원훈련(2632-303) 사업 예산으로 498억 7,300만원 편성

4) 현재 예비역 병사가 2박 3일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 교육비, 급식비, 여비 등의 명목으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예비역 병사가 예비역 하사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임용인력에 대한 동원훈련 예산소요가 적어지므로, 본 추계에서는 군사교육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다만, 예비역 병사의 예비군 훈련 시 피복비는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 피복비만을 반영함

3. 비용추계 상세 내역

예비역 부서관 선발률이 예비역 간부 진급 선발률 1.4%보다 낮다고 가정하여, 예비역 간부 진급 선발률(1.4%)의 50%, 30%, 10%로 예비역 부서관 선발률을 낮추어 예비역 부서관 임용예정 인원을 시나리오 1, 2, 3으로 구분하여 산출

표 3 시나리오별 대상자 추정

구 분	내 용
시나리오1	병사 연간 전역인원 약 24만 5,000명 중 0.7%(1.4%의 50%)를 적용하여 1,715명으로 가정
시나리오2	병사 연간 전역인원 약 24만 5,000명 중 0.42%(1.4%의 30%)를 적용하여 1,029명으로 가정
시나리오3	병사 연간 전역인원 약 24만 5,000명 중 0.14%(1.4%의 10%)를 적용하여 343명으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예비역 간부 진급을 위한 피복비는 1인당 약 18만원 소요

- 1인당 피복비는 18만 6,000원으로, 이 중 야전상의 62,954원, 전투화 58,270원, 베레모 5,780원, 전투복(상) 31,125원, 전투복(하) 28,078원이며, 1인당 피복비(18만 6,000원)는 추계기간(2024~2028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

개정안에 따라 예비역 병사의 예비역 부서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시나리오1(연 1,715명)은 5년간(2024~2028년) 15억 4,500만원, 연평균 3억 9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며, 시나리오2(연 1,029명)는 5년간(2024~2028년) 9억 2,500만원, 연평균 1억 8,500만원, 시나리오3(연 343명)은 5년간(2024~2028년) 3억 1,000만원, 연평균 6,2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

표 4 예비역 부서관 군사교육(피복비) 관련 재정소요 추계: 2024~2028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1,715명)	309	309	309	309	309	1,545	309
시나리오2(1,029명)	185	185	185	185	185	925	185
시나리오3(343명)	62	62	62	62	62	310	6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 효 경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47)

1. 비용추계 개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4.6. 이원회의 대표발의)은 영화·공연 관람료 및 온라인으로 공급하는 방송프로그램·영화·음악파일·게임·만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5년간(2024~2028년) 3조 3,986억원, 연평균 6,797억원의 세수¹⁾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비용추계 개요

의안명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21167호)
발의일	2023.4.6.
대표발의	이원회의원
주요내용	영화·공연 및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신설
심사경과	기획재정위원회 회부(2023.4.7.)
추계결과	5년간(2024~2028년) 3조 3,986억원, 연평균 6,797억원 세수 감소

2.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영화상영관 입장, 공연 관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급하는 방송프로그램·영화 및 비디오물·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게임물·디지털만화에 대한 공급가액²⁾ 전망치를 바탕으로 5년간(2024~2028년) 세수효과를 추계

- 부가가치세 면세는 매출세액이 면제되는 대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제도이므로³⁾, 면세 적용 단계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면세 대상 금액을 추정
- 공급가액 전망은 콘텐츠 별 매출액⁴⁾ 실적을 활용하되, 코로나19 시기의 일시적 또는 급격한 매출 변화⁵⁾를 반영해 2015~2019년의 연평균 증감 추세가 추계기간(2024~2028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1)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전체 부가가치세 기준

2)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물품의 가격

3) 일반적으로 사업자(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

4)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물품 가격 기준

5) 영화 관람의 2022년 매출액은 2021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아직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며, 방송프로그램·게임·만화 등의 경우 2020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및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 규모가 급증한 추세를 보임(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등을 참고)

- ▶ 온라인 콘텐츠의 매출액은 각 콘텐츠 산업 내 온라인 부문으로 분류되는 산업의 전체 매출액 실적 기준
- ▶ 매출액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액(공급가액의 10%) 및 수출액(온라인 콘텐츠 매출 × 해당 콘텐츠가 포함된 산업 전체의 수출액 비중) 제외
- 부가가치율은 영화·공연 및 온라인 콘텐츠가 속한 각 산업의 전체 부가가치율 자료를 활용하며, 최근 평균 수준이 추계기간(2024~2028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2 비용추계 산식

세수효과(2024~2028년) = 연도별·콘텐츠별 면세 대상 공급가액 전망¹⁾ ×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²⁾ × 세율³⁾

- 1) 면세 대상 공급가액 전망 : 영화·공연 및 온라인 콘텐츠의 최근 공급가액^{a)} 증감 추세 반영
 - a) 공급가액은 매출액 자료에서 부가가치세액 및 수출액(온라인 방송프로그램·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게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환산
 - b) 콘텐츠 별 매출액 자료 및 추정방법
 - 영화 입장: 국내 한국영화 및 외국영화 입장 기준
 - 공연 관람: 티켓판매수입액
 - 온라인 방송프로그램: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매출액' × OTT 등 온라인 납품 건수 비율'로 추정
※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제외
 - 온라인 영화·비디오물: '영화산업 극장 외 시장 매출' 중 온라인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
※ 'DVD·블루레이 등', 'TV방영권' 매출액 제외
 - 온라인 음악파일·음악영상파일: '온라인 음악 유통업' 산업 매출액
 - 온라인 게임: '게임 제작 및 배급업' 산업 중에서 PC게임, 모바일게임, 콘솔게임 매출액
※ 온라인 콘솔게임 매출액: '전체 매출액 × 콘솔게임 네트워크 접속 비율'로 추정
 - 디지털만화: '온라인 만화 제작·유통업' 산업 매출액
- 2)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 : 각 콘텐츠가 속한 산업의 부가가치율의 최근 평균 수준 활용
- 3) 세율 : 부가가치세율(10%)

3. 비용추계 상세 내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공급가액은 2024년 기준 영화 입장 1조 1,141억원, 온라인 콘텐츠 중 게임 8조 1,498억원, 디지털만화 2조 3,866억원 등으로 추정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콘텐츠의 공급가액은 해당 매출액⁶⁾에서 부가가치세액과 영세율 대상인 수출액을 제외한 금액 기준
- 추계기간(2024~2028년) 면세 대상 공급가액은 각 콘텐츠의 최근 공급가액에 2015~2019년의 연평균 증감률을 반영해 추정
 - ▶ 면세 대상 공급가액 연평균 증감률(2015~2019년): 영화 입장 2.8%, 공연 관람 3.6%, 온라인 방송 프로그램 10.9%, 온라인 영화·비디오물 11.0%, 온라인 음악(영상)파일 7.3%, 온라인 게임 0.7%, 디지털만화 34.3%

6) 영화·공연 관람 및 온라인 콘텐츠 매출액 추이(원자료, 2015~2022년)

표 3 영화·공연 관람 및 온라인 콘텐츠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공급가액 추정: 2024~2028년

(단위: 억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영화 입장		11,141	11,450	11,768	12,095	12,431
공연 관람		2,442	2,530	2,621	2,714	2,812
온라인 콘텐츠	방송 프로그램 ¹⁾	8,416	9,333	10,349	11,476	12,726
	영화·비디오물	4,827	5,361	5,953	6,611	7,341
	음악파일·음악영상파일 ¹⁾	19,461	20,874	22,390	24,015	25,758
	게임 ¹⁾	81,498	82,102	82,710	83,323	83,940
	디지털만화	23,866	32,058	43,062	57,842	77,695

주: 1. 공급가액은 매출액 원자료에서 최종 부가가치세액(공급가액의 10%) 및 영세율 대상인 수출액을 제외한 금액

1) 매출액에 수출액이 포함된 경우, 해당 콘텐츠가 포함된 산업 전체의 수출액 비중(2021년 기준, 방송 프로그램 7.1%, 음악파일·음악영상파일 9.5%, 게임 51.9%)을 적용해 추정

콘텐츠에 대한 부가가치율은 2019~2021년 평균 수준이 유지됨에 따라 영화 입장 25.9%, 온라인 게임 42.9% 등을 적용

표 4 영화·공연 관람 및 온라인 콘텐츠 산업의 부가가치율: 2019~2021년

(단위: %)

구분		대상 산업	2019~2021년 연평균
영화 입장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5.9
공연 관람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5.4
온라인 콘텐츠	방송 프로그램	방송산업	27.4
	영화·비디오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5.9
	음악파일·음악영상파일	음악산업	32.7
	게임	게임산업	42.9
	디지털만화	만화산업	35.6

자료: 영화 입장·공연 관람·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한 부가가치율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그 외 항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산업조사」 자료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영화 입장(억원)	17,154	17,432	17,566	18,140	19,140	5,104	5,845	11,602
공연 관람(억원)	3,633	3,650	3,974	3,917	4,183	1,373	2,197	-
온라인 콘텐츠 (억원)	방송 프로그램 ¹⁾	640	1,072	2,466	1,155	1,015	4,467	7,311
	영화·비디오물 ²⁾	3,349	4,125	4,362	4,739	5,093	4,253	3,606
	음악파일·음악영상파일	13,280	14,454	16,531	17,453	18,440	19,036	19,163
	게임 ³⁾	88,433	91,022	108,844	118,649	128,278	162,097	182,432
	디지털만화	1,239	1,481	2,029	2,657	4,033	5,882	10,832

주: 1. 공연 관람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매출액은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공급대가' 기준

1)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매출액에 'OTT 등 온라인 납품 건수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추정

2) '영화산업 극장 외 시장 매출' 중 온라인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DVD·블루레이 등', 'TV방영권' 매출액 제외) 기준

3) '게임 제작 및 배급업' 산업 중에서 PC게임, 모바일게임, 콘솔게임을 기준으로 하며, 콘솔게임의 경우 전체 매출액에 별도로 조사된 '콘솔게임 네트워크 접속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추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공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콘텐츠산업조사」; 영화진흥위원회, 연도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연도별 「공연예술조사」;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연도별 「방송영상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연도별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최종 세수효과는 연도별·콘텐츠별 '면세 대상 공급가액 전망 ×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 × 세율'로 추계하였으며, 5년간(2024~2028년) 부가가치세 감소액은 3조 3,985억원(연평균 6,797억원)으로 추계

- 5년간 총 부가가치세 감소액 중 국세(74.7%)는 2조 5,387억원, 지방소비세(25.3%)는 8,598억원 수준

표 5 영화·공연 관람 및 온라인 콘텐츠 부가가치세 면세 신설 세수효과 추정: 2024~2028년

(단위: 억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영화 입장		-289	-297	-305	-313	-322	-1,526	-305
공연 관람		-86	-90	-93	-96	-100	-465	-93
온라인 콘텐츠	방송 프로그램	-231	-256	-284	-314	-349	-1,434	-287
	영화·비디오물	-125	-139	-154	-171	-190	-779	-156
	음악파일·음악영상파일	-636	-683	-732	-785	-842	-3,678	-736
	게임	-3,499	-3,525	-3,551	-3,577	-3,604	-17,756	-3,551
	디지털만화	-850	-1,141	-1,533	-2,059	-2,766	-8,349	-1,670
전체 세수효과		-5,716	-6,129	-6,651	-7,317	-8,172	-33,985	-6,797

주: 세수효과는 국세인 부가가치세(74.7%)와 지방소비세(25.3%)를 포함한 금액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정 훈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7)

1. 비용추계 개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2.20. 박정 의원 대표발의)은 현행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외에 자동차세 면제를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례의 적용기한을 감면 시 1년간(2024년) 653억원의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

표 1 비용추계 개요

의안명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20112호)
발의일	2023. 2. 20.
대표발의	박정 의원
주요내용	다자녀 양육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신설
심사경과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3.2.21.) 및 상정('23.4.25.)
추계결과	2024년 653억원 세입 감소

2.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신설의 세수효과는, 다자녀 양육가구가 보유한 자동차의 배기량 분포를 추정 후 배기량 구간별로 차량 1대당 평균 자동차세를 적용하여 예상되는 재정감소 규모를 추계

- 향후 전체 다자녀 양육가구는 매년 3.5%('16~'21년 연평균 증감률) 감소하며, 다자녀 양육가구 중 88.2%가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자동차세 면제 대수를 계산
 - ▶ 「인구총조사」 상 다자녀 양육가구는 2016~2021년 연평균 3.5% 감소하는 추세
 - ▶ 「제14차 재정패널조사」 상 2020년 기준 다자녀 양육가구 중 차량을 보유한 가구 비율은 88.2%
- 다자녀 양육가구 차량의 배기량 분포는 「제14차 재정패널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비율을 적용
 - ▶ 해당 가구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분포를 산출하며, 해당 분포가 향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

- 배기량 구간별 1대당 평균 자동차세는 「2022년 지방세통계연감」 상 비영업용 자가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향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
- 배기량 구간별로 감면대수에 1대당 평균 자동차세를 곱하여 최종적인 세수효과를 계산
- 현행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지방세 특례가 2024년 말 종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2024년 한 해 동안만 세수효과가 발생

표 2 비용추계 산식

재정수입 감소(2024년) = Σ (배기량별 면제대상 자동차 대수¹⁾ × 1대당 평균 자동차세²⁾)

1) 배기량별 면제대상 자동차 대수 = 다자녀 양육가구 수^{a)} × 자동차 보유가구 비율^{b)} × 배기량별 차량 분포^{c)}

- a) 「인구총조사」의 미성년자 자녀 3인 이상 가구 수를 토대로 추정
 - 2016~2021년 다자녀 양육가구 연평균 3.5% 감소
- b) 「제14차 재정패널조사」상 다자녀 양육가구 중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 비율
 - 다자녀 양육가구 중 자동차를 1대 이상 보유한 비율: 88.2%
- c) 「제14차 재정패널조사」상 다자녀 양육가구의 자동차 배기량 분포

2) 1대당 평균 자동차세액

「2022 지방세통계연감」 상 배기량 구간별로 비영업용 자가용 승용차의 평균 자동차세액

3. 비용추계 상세 내역

「인구총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다자녀 양육가구 및 감면대상 차량대수를 전망

-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양육가구는 2016년 58.7만 가구에서 2021년 49.0만 가구로 연평균 3.5% 감소하는 추세

표 3 미성년자가 있는 자녀수별 가구 현황: 2016~2021년

(단위: 가구)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자녀	537,973	519,957	499,093	472,344	467,629	448,404
4자녀	42,742	41,597	40,269	38,359	38,129	36,683
5자녀 이상	6,039	5,915	5,785	5,514	5,422	5,220
계	586,754	567,469	545,147	516,217	511,180	490,307

자료: 통계청의 「인구총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1년 다자녀 양육가구 수를 기준으로, 향후 '16~'21년 연평균 증감률 - 3.5%에 따라 매년 감소한다고 가정하고 전망한 2024년 다자녀 양육가구는 약 44.0만 가구

표 4 향후 다자녀 양육가구 수 전망: 2022~2024년

(단위: 가구)

	2022	2023	2024
다자녀 양육가구 수	473,010	456,324	440,226

자료: 통계청의 「인구총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다자녀 양육가구 수에 자동차 보유 비율(88.2%)를 적용하면, 약 38.8만 대의 차량이 자동차세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

표 5 개정안에 따른 자동차세 면제 차량대수 전망: 2024년

(단위: 가구)

	전체 다자녀 양육가구 전망치 (A)	자동차세 감면대상 전망치 (A × 88.2%)
2024년	440,226	388,434

자료: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제14차 재정패널조사」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면제대상 차량을 배기량별로 안분한 후, 1대당 평균 자동차세액을 곱하여 세수효과 산출

- 다자녀 양육가구의 자동차 배기량 분포를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해 다음과 같이 산출

표 6 다자녀 양육가구가 보유한 차량의 배기량 분포: 2020년 기준

(단위: %)

	1000cc 이하	1600cc 이하	2000cc 이하	2500cc 이하	3000cc 이하	3000cc 초과
비중	7.0	8.4	32.4	36.8	10.4	5.0

주: 다자녀 양육가구가 보유한 자동차 가운데 가장 높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제14차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향후 배기량 분포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배기량 구간별로 자동차세 면제 차량대수를 추정

표 7 다자녀 양육가구의 자동차세 면제 차량대수 전망: 2024년

(단위: %, 대수)

배기량 구간별	(비중)	대상차량 수
1000cc 이하	(7.0)	27,281
1600cc 이하	(8.4)	32,478
2000cc 이하	(32.4)	126,014
2500cc 이하	(36.8)	142,902
3000cc 이하	(10.4)	40,272
3000cc 초과	(5.0)	19,487
계		388,43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2 지방세통계연감」를 바탕으로 비영업용 자가용 승용차의 1대당 평균 자동차세액을 계산

표 8 배기량 구간별 비영업용 자가용 승용차의 1대당 자동차세액: 2021년 기준

	1000cc 이하	1600cc 이하	2000cc 이하	2500cc 이하	3000cc 이하	3000cc 초과
신고건수 (A, 만건)	220	698	1,144	463	281	211
자동차세액 (B, 억원)	984	6,167	17,369	9,228	5,757	5,823
1대당 평균액 (B/A, 만원)	4.5	8.8	15.2	19.9	20.5	27.6

자료: 행정안전부의 「2022 지방세통계연감」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배기량별 차량대수에 1대당 평균 자동차세를 적용하여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액 계산

표 9 다자녀 양육가구의 자동차세 면제금액 추정: 2024년

(단위: 대, 만원)

	추정대수 (A)	1대당 자동차세 면제액 (B)	자동차세 면제액 (C = A × B)
1000cc 이하	27,281	4.5	121,920
1600cc 이하	32,478	8.8	286,861
2000cc 이하	126,014	15.2	1,913,478
2500cc 이하	142,902	19.9	2,847,754
3000cc 이하	40,272	20.5	823,974
3000cc 초과	19,487	27.6	537,231
계			6,531,218

다자녀 양육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신설함에 따라 자동차세는 2024년 65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개정안은 현행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외에 추가적으로 자동차세 면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인 점을 감안 시 세수효과는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

표 10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자동차세, 2024년

(단위: 억원)

	2024년
다자녀 양육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신설(안 제22조의2)	-653

재정추계 이슈 및 분석

난임 치료지원 입법동향 및 재정전망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의안 비용추계 활용 실태 조사 결과



난임 치료지원 입법동향 및 재정전망

남 희 추계세제분석관 (02-6788-3737)
임 술 기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740)
강 민 지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746)

1. 논의배경

난임 치료지원은 2022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며 최근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난임 진료 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임

- 우리나라는 지난 15년 동안 세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초저출산¹⁾이 심화되고 있음
 -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²⁾은 2002년부터 초저출산에 해당하는 1.3명 이하로 떨어졌고, 2022년에는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표 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2002~2022년

(단위: 명)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
합계출산율	1.178	1.191	1.164	1.085	1.132	1.259	1.192	1.149	1.226	1.244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출산율	1.297	1.187	1.205	1.239	1.172	1.052	0.977	0.918	0.837	0.808	0.780

주: 2022년은 예측치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3.05.24. 접속

- 2022년 기준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최근 초혼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향후에도 난임 경험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난임 관련 정책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한 상황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에 있는 여성의 17.2%는 난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혼 연령이 높아질수록 난임 경험률이 증가하여 35세 이상 기혼 여성의 33.1%는 난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³⁾

1)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상황

2)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2021, p.225

표 2 평균 초혼 연령, 2012~2022년

(단위: 세)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남성	32.1	32.2	32.4	32.6	32.8	32.9	33.2	33.4	33.2	33.4	33.7
여성	29.4	29.6	29.8	30.0	30.1	30.2	30.4	30.6	30.8	31.1	31.3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22년 혼인·이혼 통계」, 2023.03.16.

2. 개요

가. 난임 현황

우리나라 난임 진단 환자 수는 남녀 모두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난임 시술을 받는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은 8만 5,962명, 여성은 15만 5,762명이며,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과 같은 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 환자 수는 7만 5,141명, 총 시술 횟수는 17만 4,090건임([표 5] 참조)

표 3 난임 진단자(진료인원) 수, 2018~2022년⁴⁾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31,783	228,806	229,781	251,600	241,724
남성	78,743	79,683	79,386	89,214	85,962
여성	153,040	149,123	150,395	162,386	155,762

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남성불임(N46), 여성불임(N97) 코드로 주상병 진단을 받은 대상자 수로 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하며, 발체기간은 2018.1.1.~2023.4.30.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지원현황

(1) 난임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소관의 난임치료 지원은 ①난임 시술⁵⁾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과 ②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일부)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③난임 부부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이 있음

4) 현행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는 “난임(難妊)을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라고 명시함. ‘불임’ 단어를 ‘난임’으로 바꾸자는 캠페인에 따라 「모자보건법」 상 ‘불임’도 ‘난임’으로 개정되었으나(2012.8.2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여전히 ‘불임’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

5)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을 말함

이 중 ①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은 2017년 10월부터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과 인공수정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원내용)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난임 시술 유형별, 연령군별로 차이가 있으며, 신선배아는 9회, 동결배아는 7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적용되고, 만 44세 이하의 경우 전체 진료비의 30%, 만 45세 이상의 경우 50%를 부담
-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

표 4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지원 개요

구분			횟수	본인부담률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체외 수정	신선배아	9회	30%	50%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주: 본인부담금 외 일부 비급여(자궁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비용)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 (지원 실적) 2022년 기준 건강보험이 적용된 난임 시술(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을 받은 여성은 7만 5,141명이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총 난임 시술 건수는 17만 4,090건
 - 이 중 만 44세 이하 난임 시술 인원은 7만 2,543명, 건수는 16만 7,863건으로 각각 전체 연령의 96.4%, 96.5%를 차지

표 5 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인원 및 건수, 2019~2022년¹⁾

(단위: 명, 건)					
구분	연령 ⁴⁾	2019	2020	2021	2022
난임 시술 인원 ²⁾	만 44세 이하	64,158	66,724	74,323	72,543
	만 45세 이상	1,161	1,926	2,284	2,598
	소계	65,319	68,650	76,607	75,141
난임 시술 건수 ³⁾	만 44세 이하	128,755	143,544	163,481	167,863
	만 45세 이상	2,099	4,467	5,031	6,227
	소계	130,854	148,011	168,512	174,090

주: 1) 여성 기준 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인원 및 건수임
2) 동일 대상자의 중복 시술을 제외한 실제 인원
3) 건강보험 적용 차수가 차감된 난임 시술 기준 건수(공납포 등 차수 미부여 시술 제외)
4) 해당 연도에 여러 시술이 있을 시 최초 시술 나이를 기준으로 집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재정 규모)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는 정부 재정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로 집행되고 있으며⁶⁾, 해당 급여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 2,439억원, 2022년 1~9월 기준 1,916억원에 달함

표 6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현황, 2018~2022년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1~9월)
요양급여비용	공단부담금	1,577	1,747	2,082	2,439	1,916
	본인부담금	698	813	1,008	1,173	874
	합계	2,276	2,560	3,090	3,612	2,790

주: 2018~2022년 9월 진료분으로, 건강보험 난임시술(F021) 청구 명세서 중 진료기간 내에 진료개시일자 포함 건 산출, 2023.5.제출자료
자료: 보건복지부

또한 보건복지부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후 환자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②“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수행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시행 중⁷⁾

- (지원내용) 보조생식술을 받는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 난임 시술 유형별, 연령군별로 시술비 지원액(상한)에 차이가 있으며, 만 44세 이하의 경우 시술 1회당 최대 30~110만원, 만 45세 이상의 경우 20~90만원씩 지원
 - ▶ 보건복지부는 「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를 통해 지방이양 전의 지원범위(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최대 지원 횟수, 지원금액)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수준이 축소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음⁸⁾

표 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지방이양사업) 개요

구분			횟수	지원액(상한)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체외 수정	신선배아	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보충적 지원(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 본인부담금 외 일부 비급여(자궁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비용)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 6) 현재 건강보험은 국가재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서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7) 보건복지부, 「2023 모자보건사업 안내」, 2023.
- 8) 현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과 행정안전부 보전금(일부 지자체)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난임부부 시술 지원범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음

- (지원 대상)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표 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 (지원내용)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자궁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비용) 등 시술별 최대 지원액 범위 내
- (지원대상) 국내법상 법적혼인상태(사실혼 포함)의 난임부부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사업 경과)
 - 지원횟수 및 대상확대: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지원횟수 변경, 2019년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 180% 이하
 - 지원금액 확대: 2019년 회당 최대 50만원 → 2020년 회당 최대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등

자료: 보건복지부

- (지원 실적) 2022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 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인원은 5만 903명이며, 시술비를 지원받은 총 시술 건수는 11만 734건임
- (재정 규모)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방이양 전인 2021년을 기준으로 사업비 732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이양 후인 2022년 이후로는 공식 집계 자료가 생산되고 있지 않음

표 9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현황, 2019~2022년^{1),2)}

(단위: 명, 건,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지원 인원 ³⁾	38,983	45,189	50,819	50,903
지원 건수	72,404	91,939	105,081	110,734
지원 금액 ⁴⁾	29,721	61,962	73,231	지방이양

- 주: 1) 연도별 지원기준 및 선정기준이 달라 단순비교 불가
 2) 시술종료일 기준 추출, 추출시점에 따라 수치변동 가능(23.3.17. 기준일자 추출)
 3) 시술종료일 기준의 당해연도 시술받은 지원에 대한 중복제외(실인원 수)
 4) 국비와 지방비 합산 값(지자체경상보조, 서울(30%), 그 외(50%))

자료: 보건복지부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제11조의4에 따라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지원내용) 난임부부 및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상담업무(유선·대면·온라인), 자조모임 등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운영, 지역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며, 중앙 및 권역 6곳에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

표 10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현황

구분	운영기관	지정
중앙	국립중앙의료원	2018.06.
인천권역	가천대길병원	2018.12.
대구권역	경북대학교병원	2018.12.
전남권역	현대여성아동병원	2018.12.
경기권역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2020.12.
경북권역	안동의료원	2021.10.

자료: 보건복지부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임신부, 산모(출산 후 12주 이내), 양육모(출산 후 3년 이내, 한부모의 경우 7년 이내) 및 배우자, 그 외 가족 등
- (지원 실적) 2022년 기준, 중앙 및 권역 5개소 센터의 난임 관련 상담은 9,561건이며, 임신부 및 산모를 포함한 상담 건수는 3만 6,862건

표 11 2022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상담실적

					(단위: 건)
구분	임신부	산모	난임 등	합계	
중앙	811	1,592	3,728	6,131	
인천권역	1,155	5,652	1,015	7,822	
대구권역	3,252	1,671	1,091	6,014	
전남권역	610	4,573	995	6,178	
경기권역	1,228	2,206	2,280	5,714	
경북권역	2,170	2,381	452	5,003	
합계	9,226	18,075	9,561	36,862	

자료: 보건복지부

- (재정 규모) 중앙센터(국립중앙의료원) 1개소의 2023년 기준 사업 예산은 5억 7,600만원, 인천, 대구, 전남, 경기, 경북 등 5개 권역센터의 총 예산은 8억 3,300만원(국비 50%) 배정

(2) 난임치료휴가 지원 등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가임
 - 201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최초 1일에 대해서는 유급(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2일은 무급휴가를 주도록 규정⁹⁾
 -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¹⁰⁾
- 난임치료휴가제도의 인지도 및 활용실적 등은 아직 높지 않은 상황
 - 고용노동부는 난임치료휴가제도의 인지도, 활용 가능 여부, 활용 실적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난임치료휴가제도에 대해 알거나,¹¹⁾ 들어본 적은 있는 사업체¹²⁾는 전체 조사대상의 53.6% 수준에 머물러 모른다고 응답한 업체가 4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¹³⁾
 - 난임치료휴가제도를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사업체 중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51.6%이며, 난임치료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 중 2021년 난임치료휴가 활용 실적은 4.5%에 불과함
 - 이들 기업에서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수는 평균 1.7명이며, 이들의 사용 일수는 평균 2.4일로 조사됨¹⁴⁾

표 12 난임치료휴가 제도: 사용 일수 및 사용 근로자수, 2017~2021년

(단위: 일, 명)

종사자규모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사용 일수	평균 사용 근로자수	평균 사용 일수	평균 사용 근로자수	평균 사용 일수	평균 사용 근로자수	평균 사용 일수	평균 사용 근로자수	평균 사용 일수	평균 사용 근로자수
합계	2.7	1.4	2.9	1.7	2.4	1.6	2.6	1.6	2.4	1.7
5~9인	2.8	1.0	3.0	1.6	1.4	1.0	2.5	1.1	2.2	1.3
10~29인	2.4	1.2	3.1	1.2	3.0	1.0	2.6	1.5	2.4	1.8
30~99인	2.4	1.7	2.4	1.2	3.3	1.0	2.9	1.3	2.6	1.6
100~299인	4.8	1.5	2.4	1.7	2.6	3.1	2.3	2.1	2.4	1.5
300인 이상	2.7	3.4	2.4	2.9	2.3	3.7	2.0	2.9	2.5	2.6

자료: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실태조사」, 각 연도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11) 잘 알고 있는 경우 24.2%, 대충 알고 있는 경우 13.8%

12) 들어본 적은 있는 경우 15.6%

13)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22.

14)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22.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6년 이후 난임 시술을 경험한 자 6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¹⁵⁾ 조사대상자 중 임금노동자는 527명으로, 이들 중 21.3%만이 본인이 근무했던 직장에 ‘난임치료휴가가 있었고 실제 사용하였다’고 응답함¹⁶⁾

(3) 난임 시술 의료비 세제 지원

난임 관련 세제 지원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중 난임시술비와 관련된 세액공제가 있음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와 성실사업자 등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한도 금액 및 세액공제율은 지출 구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 중 난임 시술 의료비는 연 7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 적용을 받지 않으며, 세액공제율은 30%로 적용

표 13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2023년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15%
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15%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한도 없음	20%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30%

주: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자료: 국세청

3. 입법 동향

가. 난임치료 지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중 난임치료 지원은 주로 「모자보건법」에서 다루지고 있으며, 제21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난임치료 지원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어 심사 중

15) 조사대상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기혼 여성임

16) 여성정책연구원, 「난임여성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제도 인식 및 이용실태와 정책과제」, “KWDI 이슈페이퍼”, 2022.05.31.

-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17)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내용을 임의규정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주로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 난임극복 지원에는 ①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②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③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이 포함
 - ▶ 개정안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대상 및 범위(한의학)의 확대, 난임 상담 확대, 생식세포 동결·보존비용 지원 등을 제안

표 14 제21대 국회 난임치료 지원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법안	유형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심사경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 시술비용	이종성의원 (2021.1.28.)	•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전부 지원	소관위 심사중
		박성민의원 (2022.7.20.)	• 난임 시술비 지원에 대한 제한 폐지 (연령 및 소득, 지원 횟수 제한 금지)	소관위 심사중
		이명수의원 (2022.10.28.)	• 난임 시술비 지원에 대한 제한 폐지 (제한없는 지원 제공)	소관위 심사중
		이학영의원 (2023.4.27.)	• 난임 시술비 지원에 대한 제한 폐지 (소득, 지원 횟수 등에 따른 지원 금액 차등 금지)	소관위 심사중
	생식세포 동결·보존비용	최연숙의원 (2023.4.14.)	• 정자·난자의 동결·보존 등에 대한 국가 지원	소관위 심사중
		김민석의원 (2023.5.11.)		소관위 심사중
	한의학 난임 시술비용	서영석의원 (2022.11.25.)	• 한의학 난임 시술비에 대한 국가지원	소관위 심사중
	난임 심리치료	김정재의원 (2021.1.7.)	• 난임 극복지원 사업에 심리치료 포함	소관위 심사중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나. 난임치료휴가 지원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 중 난임휴직의 신설 및 난임치료휴가 지원은 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에서 다루지고 있으며, 제21대 국회에서도 난임휴직의 신설 및 난임치료휴가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을 규정한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심사 중

- 난임휴직의 신설 및 난임치료휴가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저출산의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난임휴직급여 및 난임치료휴가로 인한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려는 것임

17)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난임휴직의 신설 및 난임치료휴가는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며, 이는 난임휴직 및 유급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지원을 내용으로 함
- ▶ 이 중 난임휴직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¹⁸⁾으로 난임휴직에 대한 정의와 휴직기간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며, 고용보험기금의 지급근거는 「고용보험법」에 명시됨
- ▶ 난임치료휴가도 마찬가지로 난임치료휴가 기간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며,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고용보험기금의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및 고용보험기금의 지급 기간에 대한 내용은 「고용보험법」에 규정됨

표 15 제21대 국회 난임치료휴가 및 난임휴직 지원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법안	유형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심사경과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	권은희의원 (2020.7.6.)	-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난임치료휴가급여 지급 -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장(30일 이내) 및 유급휴가 확대(30일 이내) - 분할 사용 가능, 난임치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소관위 심사중
		전주혜의원 (2020.07.31)	-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난임치료휴가급여 지급 -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장(60일 이내) 및 유급휴가 확대(60일 이내) - 일단위 사용, 통상임금에 상응하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지급	소관위 심사중
		이상현의원 (2021.11.1.)	-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난임치료휴가급여 지급(최초 6일) -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장(7일 이내) 및 유급휴가 확대(7일 이내)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지급 - 난임치료휴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포함	소관위 심사중
		이명수의원 (2022.11.28.)	-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난임치료휴가급여 지급 -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장(30일 이내) 및 유급휴가 확대(30일 이내)	소관위 심사중
		박광온의원 (2022.1.10.)	-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난임치료휴가급여 지급. 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45일에 한함 -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장(60일 이내) 및 추가연장 가능(최대 30일), 유급휴가 확대(최대 90일), 일단위 사용	소관위 심사중
		김도읍의원 (2022.12.22.)	-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난임치료휴가급여 지급 -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장(15일 이내) 및 유급휴가 확대(15일 이내)	소관위 심사중
		윤두현의원 (2023.02.13.)	-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난임치료휴가급여 지급 -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장(15일 이내) 및 유급휴가 확대(15일 이내)	소관위 심사중
		임이자의원 (2023.03.27.)	-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난임치료휴가급여 지급(최초 5일) -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장(10일 이내) 및 유급휴가 확대(최초 5일)	소관위 심사중
	난임치료 휴가 난임휴직	최강욱의원 (2023.03.13.)	-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난임치료휴가급여 지급. 단,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 한함 - 현행 공무원 복무규정과 유사하게 사출 유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유급) 사용, 일단위 사용	소관위 심사중
	난임휴직	박용진의원 (2023.05.17.)	-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난임휴직급여 지급 - 난임휴직 신설(3개월 이내) 및 최초 30일 유급휴직	소관위 심사중

주: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동시에 발의됨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안 의안번호 2122071)

다. 난임 시술 의료비 세제 지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 중 난임 시술 의료비 세제 지원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다루지고 있으며, 제21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난임 시술 의료비 세제 지원 개정안이 발의되어 심사 중

- 제21대 국회에서 난임 관련 세제 지원 법안은 총 7건이 발의되었으며, 이 중 3건이 소관위 심사 대상
 - ▶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며, 이 중 난임시술 의료비 대상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거나, 난임시술 관련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 중
 - ▶ 「조세특례제한법」은 성실사업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며, 이 중 난임시술 의료비 대상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개정안이 발의 중

표 16 제21대 국회 난임 의료비 세제 지원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법안	유형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심사경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 대상	김기현의원 (2020.11.6.)	- 근로자의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20% → 30% - 근로자의 고위험임산부·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폐지: 15% → 20%	대안반영폐기 (2021.12.2.)
		정일영의원 (2021.9.27.)	근로자의 난임시술비 및 난임시술관련 의약품비 세액공제율 인상: 20% → 30%	대안반영폐기 (2021.12.2.)
		기획재정위원장 (2021.12.1.)	근로자의 난임시술비 및 난임시술관련 의약품비 세액공제율 인상: 20% → 30%	원안가결 (2021.12.2.)
		김희재의원 (2022.7.15.)	- 근로자의 난임시술비 및 난임시술관련 의약품비 세액공제율 인상: 30% → 50% - 근로자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 15% → 50% -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율 인상 및 대상 확대 등: 15% → 50%, 총급여 7천만원이하 근로자 → 총급여 1억원 이하 근로자, 공제한도 200만원 → 공제한도 폐지	소관위 심사중
		박형수의원 (2022.11.25.)	근로자의 난임관련 공제대상에 '난임을 대비하기 위한 배아·난자·정자의 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추가	소관위 심사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사업자 대상	정부 (2022.9.1.)	- 성실사업자 등의 난임시술비 및 관련 의약품비 세액공제율 인상: 20% → 30% - 성실사업자 등의 고위험임산부·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 15% → 20%	수정가결 (2022.12.23.)
		김희재의원안 (2022.7.15.)	- 성실사업자 등의 난임시술비 등 세액공제율 인상: 20% → 50% - 성실사업자 등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 15% → 50% - 성실사업자 등의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율 인상 등: 15% → 50%,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사업소득금액 1억원 이하, 공제한도 200만원 → 공제한도 폐지	소관위 심사중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4. 추가재정소요

가. 난임치료 지원

(1) 추계의 전제

현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본고는 발의된 개정안 중 난임 시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추계가 가능한 “난임 시술비용” 유형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고자 함
 - ▶ “한의학 난임 시술비용”과 “생식세포 동결·보존비용” 유형의 경우, 현재 한의학 난임 시술과 생식세포(정자·난자) 동결 및 보존 시술이 비급여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술인원, 건수 및 비용 등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추계가 곤란함¹⁹⁾
- 박성민의원안(2116545), 이명수의원안(2117985), 이학영의원안(2121696)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을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보건복지부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수행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운영 중²⁰⁾
- 지원 시술 항목과 지원 금액 기준은 「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²²⁾의 지방이양 전 기준 지침을 준용하여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에 대한 현재 지원액(상한)을 소득과 연령에 차등을 주지 않고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 「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며,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에 한해 각각 최대 9, 7, 5회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20~110만원으로 시술별·연령별 차등을 두고 있음
- 추계대상은 소득 및 연령기준 폐지로 인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신규 대상자에 대한 추가 지원금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존 대상자에 대한 연령군별 차등 지원을 폐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지원금의 합임

19)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식세포를 체외에 동결 및 보관하는 행위는 전체 과정을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건강보험 적용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한편, 서울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난자 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으며(2024년 시행), 20~40세 여성을 대상으로 200만원 한도 내에서 난자동결 첫 시술 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임

20)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한의학, 한약 등을 통한 난임치료를 지원하거나 난임주사 투약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자체 사업을 시행(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지원」, 「난임주사제 투약비용(행위료)지원사업」 등) 중이나, 본 추계에서는 동 지원이 개정안의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 시 고려하지 않음

21) 본 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2021년까지의 제도(지원기준, 지원금액 등)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22) 보건복지부는 「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를 통해 지방이양 전의 지원범위(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최대 지원 횟수, 지원금액)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수준이 축소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음

- 본 추계에서는 현행 사업과 동일하게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 개정안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비급여를 포함한 시술자의 총 난임 시술 횟수를 파악할 수 없어 현행과 동일한 횟수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²³⁾
- 추가재정소요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대상자 수에 1인당 평균 지원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모든 연령대에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 ▶ 현행 사업이 연령군별(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로 지원액 상한을 구분하고 있으나, 실 지원 1건당 평균 지원액은 2개 연령군 모두 지원 상한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 지원 단가가 높은 만 44세 이하의 평균 지원 단가를 전 연령에 적용
 - ▶ 2021년 기준 신선배아 1건당 평균 지원액은 만 44세 이하의 경우 101.6만원, 만 45세 이상의 경우 94.8만원이며, 동결배아의 경우 각각 46.6만원, 41.3만원, 인공수정의 경우 19.1만원, 19.4만원임
- 소득기준 폐지 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의 본인부담금이 감소함에 따라 난임 시술 횟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본 추계는 이러한 수요 증가효과를 고려하지 않음
 - ▶ 또한 본 추계 결과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에 이미 시술비를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재정소요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 결과보다 감소할 수 있음
 - ▶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미 「의료급여법」에 따라 급여 대상 본인부담금을 감면받고 있으므로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²⁴⁾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가정

(2) 비용추계 방법

추가재정소요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폐지에 따른 추가 지원분과 연령기준 폐지에 따른 추가 지원분의 합으로 산출

- 소득기준 폐지에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대상자 추가 지원분과 연령기준 폐지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자 추가 지원분의 합을 산출

23) 현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실적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시술 지원 건수는 모든 시술 유형에서 2회를 초과하지 않아(1.4~1.6회) 사업의 횟수 상한에 미치지 못하므로, 비급여 시술을 포함하더라도 총 난임 시술 건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4)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다르게 난임 시술 유형별 지원 건수가 별도로 관리되지 않음. 다만, 보조생식술 진료행위별 수가코드(R6401~R6560)로 추출한 난임 시술 진료실인원은 2021년 기준 196명으로 진료행위별 중복 인원을 고려하면 그 수는 더 적을 것으로 보임

(가) 소득 및 연령기준 폐지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신규 대상자 추가 지원분 추계

(대상자 수) 건강보험 적용 전체 난임 시술자 수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수혜자 수를 차감하여 산출

- 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자 수는 동 사업의 지방이양 전인 2021년 기준 시술자 수에 최근 3년(2018~2021년) 증가율(6.13%)을 곱하여 추계
 - ▶ 연도별로 사업 지원기준이 다르고 연도별 수혜 인원의 직접 비교가 불가함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자 증가율을 준용함
 - ▶ 또한 2022년의 경우 동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첫 번째 해로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운영이 안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분석 기간에서 제외함

표 1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대상자 수 전망

(단위: 명)

구분1	구분2	2024	2025	2026	2027	2028
시술자 수(A)	체외수정(신선배아)	66,099	70,151	74,451	79,015	83,859
	체외수정(동결배아)	42,193	44,780	47,525	50,438	53,530
	인공수정	26,623	28,255	29,987	31,825	33,776
수혜자 수(B)	체외수정(신선배아)	41,704	44,260	46,973	49,853	52,909
	체외수정(동결배아)	28,019	29,737	31,560	33,495	35,548
	인공수정	14,063	14,925	15,840	16,811	17,841
대상자 수(C=A-B)	체외수정(신선배아)	24,395	25,891	27,478	29,162	30,950
	체외수정(동결배아)	14,174	15,043	15,965	16,943	17,982
	인공수정	12,560	13,330	14,147	15,015	15,935

주: 사업 수혜자 수(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3.5.1. 기준일자 추출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당 평균 시술비 지원 단가) 2021년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시술 1건당 평균 지원액에 1인당 평균 지원 횟수를 곱하고 최근 3년(2020~2023년) 평균 수가인상률(1.53%)을 적용하여 산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연령대별(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상한 지원액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1건당 지원 실적은 상한액을 하회하므로 본 추계는 2021년 기준 만 44세 이하 지원 실적치를 전 연령에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 ▶ 2022~2023년은 수가인상률 실적치 적용
- 1인당 평균 시술 횟수는 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으며, 시술 유형별로 1.4~1.6건 수준임

표 18 1건당 평균 시술비 지원단가 전망

(단위: 만원)

유형	2024	2025	2026	2027	2028
체외수정(신선배아)	106.3	107.9	109.5	111.2	112.9
체외수정(동결배아)	48.7	49.5	50.2	51.0	51.8
인공수정	20.0	20.3	20.6	20.9	21.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1인당 평균 시술 횟수는 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으므로, 2022년 기준 평균 시술 횟수를 적용하여 신선배아 1.6건, 동결배아 1.4건, 인공수정 1.5건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19 1건당 평균 시술 횟수

(단위: 건)

유형	2019	2020	2021	2022
체외수정(신선배아)	1.4	1.5	1.5	1.6
체외수정(동결배아)	1.3	1.4	1.4	1.4
인공수정	1.5	1.5	1.5	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소득기준 폐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소득기준 폐지에 따른 대상자 수와 1인당 평균 지원 단가를 곱하여 추계하며, 2024년 기준 539억원 소요 예상

표 20 소득기준 폐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4~2028년

(단위: 억원)

유형	2024	2025	2026	2027	2028
체외수정(신선배아)	405	436	470	506	545
체외수정(동결배아)	96	103	111	120	129
인공수정	38	41	44	48	51
합계	539	580	625	674	72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연령기준 폐지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존 대상자 추가 지원분 추계

(1건당 지원금 차액) 2021년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만 44세 이하 대상자들의 시술 1건당 평균 지원액과 만 45세 이상 대상자들의 평균 지원액의 차액을 계산

- 신선배아의 경우 만 44세 이하 대상자의 1건당 평균 지원액이 6.8만원, 동결배아의 경우 5.3만원 더 높음

- ▶ 반면 인공수정의 경우 만 45세 이상 대상자의 평균 지원액이 0.3만원 높으므로, 연령제한 폐지에 따른 추가지원분은 없는 것으로 가정

연령기준 폐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1건당 지원금 차액에 사업 수혜자 수와 1인당 평균 지원횟수를 곱하여 추계하며, 2024년 기준 2억 8,500만원 소요 예상

표 21 연령기준 폐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4~2028년

(단위: 백만원)

유형	2024	2025	2026	2027	2028
체외수정(신선배아)	235	252	269	287	307
체외수정(동결배아)	50	53	57	60	65
인공수정	—	—	—	—	—
합계	285	305	325	348	37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비용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난임시술비용을 소득, 연령의 제한없이 지원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541억원, 2028년 730억원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3,161억원(연평균 632억원)으로 추계됨

- 본 추계 결과는 현 제도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한 가구에 지원하는 금액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를 고려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감소할 수 있음
- 또한 본 추계는 현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1인당 평균 지원단가를 준용한 결과로서, 향후 지원단가 변경 시 추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표 22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4~2028년

(단위: 억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연평균
소득 및 연령기준 폐지에 따른 신규 대상자 추가재정소요	539	580	625	674	726	3,144	629
연령기준 폐지에 따른 기존 대상자 추가재정소요	3	3	3	3	4	16	3
합계	541	583	629	677	730	3,161	632

주: 단수 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난임치료 휴가 지원 등

(1) 추계의 전제

난임휴직의 신설 및 난임치료휴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난임휴직 및 난임치료휴가급여에 대한 고용보험 기금 지원으로 인해 발생

- 본고는 기 발의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중 난임치료 지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이 중 추계가 가능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국가(고용보험기금)의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고자 함
- (난임치료휴가)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국가(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이 시행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난임치료휴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가공무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실태를 토대로 산출
- (난임휴직)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난임휴직이 신설되고, 휴직 급여가 지원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난임휴직의 신설에 따른 사용자 수를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곤란
 - 근로자의 난임휴직 수요를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우며,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규칙」 제71조 및 제58조에 따른²⁵⁾ 난임휴직은 질병휴직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질병휴직 사용자를 해당 질병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실제 난임휴직 사용자 수를 산출할 수 없음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가정

난임치료휴가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국가공무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실태를 토대로 산출한 사업대상자에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의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을 적용하여 산출

- (사업대상자)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지급대상자는 기 발의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²⁶⁾인 경우에 한하며, 전망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수에 국가공무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현황을 적용하여 추계

25) 「공무원임용규칙」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제58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불임·난임치료를 포함한다)은 그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른 휴직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6)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광업·운수업·창고업·통신회사 등의 경우 300인 이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은 200명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

- ▶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 한해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은 권은희의원안(의안번호 제2101502호), 김도읍의원안(의안번호 제2119086호), 윤두현의원안(의안번호 제2119979호), 임이자의의원안(의안번호 제2120890호), 최강욱의원안(의안번호 제2120581호) 등에 규정됨
- ▶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지원이 시행될 경우 난임치료휴가의 사용인원 및 사용기간이 증가할 수 있지만, 장애에 발생할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정확히 산출할 수가 없으므로 본 추계는 최근(2018~2022년) 국가공무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현황을 토대로 산출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2항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는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휴가 사용일은 시술 유형에 따라 결정됨
 - ▶ 2021년 기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공무원의 경우 최대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²⁷⁾ 2021년 말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2023년 현재 기준 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시술 유형에 따라 사용 가능한 휴가일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연간 사용 횟수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최대 2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2021년에 비해 최대 4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었던 2022년에 1인당 평균 난임치료휴가의 사용일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2항에 따른 난임치료시술휴가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 (지급단가)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지급단가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준용하여 산출

27)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 배우자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며,²⁸⁾ 이에 대해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²⁹⁾에 따라 국가(기금)가 지급하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³⁰⁾를 통해 규정됨
- (지급기간) 난임치료휴가로 인한 고용보험 지급기간은 시나리오별로 구분하여 추계함
 - ▶ 장래에 발생할 혼인율, 출산율,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행태 및 인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장래에 발생할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 국가공무원의 근로환경 및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과 우선대상지원기업의 근로환경 및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에 따라 사용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가정

(2) 비용추계 방법

(사업대상자) 개정안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의 지원대상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수에 국가공무원의 난임휴가 사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 추계기간(2024~2028년) 동안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수는 최근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수에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

표 23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수: 2018~2022년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증가율
남	5,413,054	5,506,153	5,550,856	5,717,138	5,587,083	0.8%
여	4,140,886	4,347,256	4,453,487	4,681,098	4,596,363	2.6%

자료: 고용노동부

28) 「고용보험법」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9) 「고용보험법」

제76조(지급 기간 등)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142호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최초 5일분 급여가 401,910원을 초과하는 경우: 401,910원

- 동 기간 동안 난임휴가자 수는 산출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수에 2022년 기준 국가공무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 ▶ 2022년 기준 국가공무원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1인당 사용일 수(여성 3.7일, 남성 1.4일)가 추계기간(2024~2028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24 국가공무원 난임치료휴가 사용현황

(단위: 명, 일)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국가공무원 현원		—	289,253	295,403	298,405	305,192
여성	현원(A)	—	71,104	73,823	76,687	80,228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수(B)	158	227	248	330	331
	현원 대비 사용자 수(C=B/A)	—	0.32%	0.34%	0.43%	0.41%
	난임치료휴가 사용일 수(D)	293	393	444	598	1,218
	1인당 난임치료휴가 사용일 수(E=D/B)	1.9	1.7	1.8	1.8	3.7
남성	현원(F)	—	218,149	221,580	221,718	224,964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수(G)	131	200	245	305	449
	현원 대비 사용자 수(H=G/F)	—	0.09%	0.11%	0.14%	0.20%
	난임치료휴가 사용일 수(I)	175	297	432	422	614
	1인당 난임치료휴가 사용일 수(J=I/G)	1.3	1.5	1.8	1.4	1.4

주: 각 부처 제출자료로 현원은 2019년부터 조사, 군인·군무원, 교원 등 제외
자료: 인사혁신처

(지원단가) 추계기간(2024~2028년) 동안 난임치료휴가에 따른 지급단가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준용하여 산출

-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³¹⁾ 이 중 최초 5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을 지원³²⁾
 - ▶ 배우자출산휴가급여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지원은 2019년 시행되었으며, 고용보험의 재정지원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함
 - ▶ 추계기간(2024~2028년) 동안 최저임금의 인상 등으로 인해 배우자출산휴가급여의 지급단가가 인상될 수 있으나, 최근(2019~2023년) 배우자출산휴가 상한액의 추이로 미루어보아 추계기간 동안 지원단가(401,910원/5일)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32) 「고용보험법」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표 25 배우자출산휴가 상한액

(단위: 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배우자출산휴가 상한액 고시(5일)	382,770	382,770	382,770	382,770	401,910

자료: 고용노동부고시

(지급기간)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의 지급기간은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2로 구분하여 추계

- 시나리오1은 2022년 기준 국가공무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현황을 토대로 추계하여 국가공무원의 실제 사용현황을 적용하였으며, 시나리오2는 남성의 경우는 시나리오1과 동일하게 산출하고 여성은 배우자출산휴가의 지급기간을 준용하여 산출

(3) 비용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급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에 따라 2024년 72~93억원, 2028년 78~102억원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375~487억원(연평균 75~97억원)으로 추계됨

-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2024~2028년) 동안 사업대상자 수에 난임치료휴가에 따른 지원단가와 지급기간을 적용하여 산출
- (사업대상자)
 - ▶ 추계기간(2024~2028년) 동안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수는 최근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수에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
 - ▶ 추계기간(2024~2028년) 동안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수에 2022년 기준 국가공무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비율(남성 0.20%, 여성 0.41%)을 적용하여 산출

표 26 사업대상자(추정치): 2024~2028년

(단위: 천명)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수	남성	5,676	5,721	5,767	5,813	5,859
	여성	4,843	4,971	5,102	5,237	5,375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수	남성	11.33	11.42	11.51	11.60	11.69
	여성	19.98	20.51	21.05	21.61	22.18

주: 1. 각 표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실제 난임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원단가) 2023년 기준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401,910원/5일)을 준용
- (지급기간)
 - ▶ 시나리오1은 2022년 기준 난임휴가를 사용한 국가공무원의 1인당 평균 난임휴가 사용일 수인 남성 1.4일, 여성 3.7일을 적용하여 추계
 - ▶ 시나리오2는 남성근로자는 2022년 기준 난임휴가를 사용한 국가공무원의 1인당 평균 난임휴가 사용일 수를 적용하고, 여성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5일)을 준용³³⁾
- (추계결과) 추가재정소요는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수에 지원단가와 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하며, 2024년 기준 72~93억원 소요 예상

표 27 시나리오별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4~2028년

(단위: 억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시나리오1					
남성	12	13	13	13	13
여성	59	61	62	64	66
합계	72	73	75	77	78
시나리오2					
남성	12	13	13	13	13
여성	80	82	85	87	89
합계	93	95	97	100	102

주: 1.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실제 난임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난임 시술 의료비 세제 지원

(1) 추계의 전제

난임 시술 의료비 세제지원 확대의 세수효과 추정시, 동 개정안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전제

- 본고는 발의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중 난임 시술 의료비 세제지원과 관련해 현재 소관위심사대상 이면서 추계가 가능한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대상 난임 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에 대한 세수효과를 산출하고자 함

33) 임이자의원안, 의안번호 제2120890

- 「소득세법」 중 김회재의원안(2116471)과 「조세특례제한법」 중 김회재의원안(2116470)에서 난임시술 의료비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제안하고 있는 세액공제율 인상안(50%까지 인상)을 기준으로 세수효과 추계
-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성실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한 경우 신청 가능한데, 난임 시술을 시행한 연도의 의료비는 이를 초과한다고 가정

난임 시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국세통계연보의 2021년 귀속 소득 기준(현재 이용 가능한 최신연도) 근로소득세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자료 중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 전체 의료비 대비 난임시술 의료비 비중을 전제로 추계

- 의료비 지출액 중 난임 시술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기준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지출 세부내역을 활용하여 추계
-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 본인부담금 진료비 증가율을 따른다고 가정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가정

(2) 비용추계 방법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현황)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인원은 2021년 기준 각각 273.0만명, 1.2만명이며, 의료비 공제세액 금액은 각각 9,496억원, 82억원임

- 근로자의 2021년 귀속 기준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총액은 6.4조원이며, 의료비 공제세액금액은 이의 15% 수준인 0.9조원임

표 28 근로자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현황, 2021년 귀속소득 기준

(단위: 만명, 백만원, %)

	의료비 공제대상 인원 (A)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 (B)	의료비 공제세액 금액 (C)	의료비 실효공제율 (D=C/B, %)	1인당 의료비 공 제대상 (E=B/A)	1인당 의료비 공 제세액 (F=C/A)
합계	273.0	6,366,116	949,618	14.9	2.3	0.3

자료: 국세청, 「2022 국세통계연보」, 2022

- 성실사업자의 2021년 귀속 기준 의료비 공제세액 금액은 82억원이며,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실효공제율이 성실사업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추정하는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은 550억원임
- ▶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공제 자료는 국세통계연보에 공제신청 인원 및 공제세액 금액만 공개되고 있음에 따라, 공제대상 금액은 추정하여 사용

표 29 성실사업자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현황, 2021년 귀속소득 기준

(단위: 명, 백만원, %)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공 제대상 인원(A)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공 제세액(B)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실효공제율(C)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 추정 (D=B/C)
합계	11,844	8,191	14.9	54,973

자료: 국세청, 「2022 국세통계연보」, 2022

(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의 세수효과)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각각에 대한 2021년 귀속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 총진료비 대비 난임시술비 비중을 곱한 후, 이에 공제율 인상폭(20%p)을 곱하여 추계

- 난임 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폭 20%p는 현재 소관위 심사 대상인 김희재의원(2116471)에서 제안하고 있는 인상폭을 준용함
-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 전체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증가율(7.7%)을 따른다고 가정
- 개정안이 2023년 중 통과되어 2024.1.1.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
 - ▶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는 각각 2024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가 다음연도 연말정산시에 전액 환급, 다음연도 확정신고시 반영되는 것으로 가정

표 30 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의 세수감소 효과, 2021년 귀속소득 기준

(단위: 억원, %)

	총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 (추정) ¹⁾ (A)	총 진료비 대비 비중 (난임시술비 비중) (B)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난임시술비) (C=A×B)	의료비 공제세액 (난임시술비) (D=C×20%p)
근로자	63,661.2	0.4	274.2	54.82
성실사업자	549.7	0.4	2.4	0.5

주: 1) 성실사업자의 경우 추정금액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비용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 대상 난임 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할 경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307억원의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며, 성실사업자 대상 난임 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할 경우에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3억원의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난임 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의 세수효과는 난임 부문에 지출한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 추정치에 세액공제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추계
- 근로자 대상 난임 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향후 5년간 약 30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근로자 대상 난임 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2022년부터 20%에서 30%로 인상
- 성실사업자 대상 난임 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향후 5년간 약 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성실사업자 대상 난임 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2023년부터 20%에서 30%로 인상

표 31 난임 시술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의 세수효과: 2024~2028년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근로자의 세액공제율 인상 (30% → 50%)	—	-68	-74	-79	-85	-307	-77
성실사업자의 세액공제율 인상 (30% → 50%)	—	-1	-1	-1	-1	-3	-1

주: 1.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정수기준의 세수효과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결론 및 시사점

난임치료 지원 및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난임시술비용을 소득, 연령의 제한없이 지원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541억원, 2028년 730억원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3,161억원(연평균 632억원)으로 추계됨
-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고용보험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국가공무원의 난임휴가 사용일 수(여성 3.7일, 남성 1.4일)를 적용할 경우(시나리오1) 2024년 72억원, 2028년 78억원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375억원이 소요되며, 남성근로자는 국가공무원의 난임휴가 사용일 수를 적용하고, 여성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5일)을 적용할 경우(시나리오2) 2024년 93억원, 2028년 102억원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487억원으로 추계됨

-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의 난임 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할 경우, 소득세 세수효과는 2025년 -68억원, 2028년 -85억원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307억원(연평균 -77억원)으로 추계되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성실사업자의 난임 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할 경우, 소득세 세수효과는 2025년 -1억원, 2028년 -1억원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3억원(연평균 -1억원)으로 추계됨

표 32 추가재정소요 및 세수효과: 2024~2028년

(단위: 억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난임치료 지원	소득 및 연령기준 폐지에 따른 신규 대상자 추가재정소요	539	580	625	674	726	3,144	629
	연령기준 폐지에 따른 기존 대상자 추가재정소요	3	3	3	3	4	16	3
	소계	541	583	629	677	730	3,161	632
난임치료휴가	시나리오1	72	73	75	77	78	375	75
	시나리오2	93	95	97	100	102	487	97
난임시술 의료비 세제지원	근로자의 세액공제율 인상 (30% → 50%)	—	-68	-74	-79	-85	-307	-77
	성실사업자의 세액공제율 인상 (30% → 50%)	—	-1	-1	-1	-1	-3	-1

주: 1. 각 표의 합계는 단순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실제 난임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3. 징수기준의 세수효과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난임치료지원 정책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이며, 난임휴직의 신설, 난임치료휴가의 국고(기금) 지원 및 기간 확대, 난임시술비용의 차등 지급 폐지, 난임 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 등 난임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이 활발하게 발의되고 있음

- 난임 시술 지원범위가 확대된 경우,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방이양 후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예산 편성에 부담을 가질 수 있으므로 사업의 지원 대상이나 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등 자체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상 난임부부에게도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현황에 따라 지원 횟수, 금액, 한도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음
 - ▶ 본 사업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지자체 사업 내용과 지원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난임휴직 및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이 시행되고, 난임시술비용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경우 고용보험을 포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추계 결과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은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기금의 재정부담으로 귀결되어 기금의 재정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등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적 정책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적극적 정책 추진 필요
 - ▶ 초혼 연령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난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합리적인 추가재정소요 산출을 토대로 관련 정책에 대한 체계적 논의 필요
 - ▶ 특히 난임치료휴가 및 난임휴가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주요 재원으로 추진되나,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주 및 근로자의 보험료로 조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금의 재정건전성 및 수익자부담원칙 측면에서 재원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현시점에서 난임휴직의 신설에 따른 사업대상자 등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난임치료지원 관련 개정안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서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반회계 전입 확대 등을 포함한 정책적 고려 필요
- 난임 시술 의료비 세제 지원이 확대될 경우,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 현재 난임 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의 세수효과만 추계하였는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난임 시술 비용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소득세수 감소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이 미 연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61)

1. 배경 및 목적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연금개혁이 추진되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022년 7월에 출범한 이후,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형평성 측면에서의 직역연금 개편에 대한 논의도 다루고 있음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022년 7월 22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공식 출범하였으며, 2023년 5월 20명으로 구성된 제2기 민간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큰 틀의 연금개혁 방향, 세부적인 개혁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은 1960~70년대에 도입된 이후 4차례의 연금개혁을 실시하였으나 재정의 지속가능성,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음
- 이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과 퇴직연금, 기초연금 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직역연금은 전 국민 대상의 공적연금보다 먼저 도입되고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로 설계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직역연금제도 해외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직역연금제도의 논의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NABO 재정추계 & 세제이슈」 제14~18호에서 ‘주요국의 공적연금개혁 사례’ 시리즈로 독일, 일본, 스웨덴, 캐나다, 영국의 공적연금제도 도입, 개혁, 현행 제도 개요, 주요 현황 등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분석한 바 있음
- 직역연금 해외사례 조사는 2022년 9월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발간한 「해외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에서 공무원연금 제도 연혁과 현행 제도 위주로 소개되었으나 재정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음

이에 본고에서는 독일, 영국, 캐나다, 스웨덴, 일본의 공무원연금제도 연혁, 현행 제도 및 재정현황 등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앞서 언급한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시리즈에서 다루었던 국가를 동일하게 선택하여 해당 국가의 공무원연금제도 연혁과 현행 제도 개요, 재정 현황 등을 조사하고 분석¹⁾

1) 주요국의 공무원연금 연혁과 현행 제도는 공무원연금공단(2022)의 「해외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 참고

2. 주요국의 공무원연금제도 연혁

가. 독일

독일은 1873년에 비기여제 공무원연금을 도입하였고 120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해오다가 1990~2000년대에 모수개혁을 시작으로 공무원연금제도 분리 운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실시

- (1992년 모수개혁) 공무원연금 수급최소연령을 기존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고, 최대 가입기간을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
- (1998년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고령화로 위한 재정악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1999~2017년 기간 동안 공무원 보수 및 수급자의 연금인상률을 매년 0.2%p 낮추고 감소된 지출만큼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계획 수립
 - ▶ 다만, 2001년 모수개혁으로 연금지급률 인하를 실시하여 그에 따라 발생한 지출 감소액의 50%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함에 따라 당초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계획을 2010년까지 유보하고 2011년부터 재개하여 2017년까지 적립
- (2001년 모수개혁 및 리스터연금 도입) 민간근로자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하향 조정하는 개혁에 따라 형평성 측면에서 공무원의 연금지급률도 하향 조정(재직기간 1년당 1.875% → 1.79375%)하고 공적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축소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리스터연금 도입
 - ▶ 리스터(Riester)²⁾연금: 공적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감독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가입 시에는 보조금 또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
- (2007년 구조개혁)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방공무원, 16개 주·지방정부별로 이관하여 분리·운영하고 신규 공무원부터 완전적립방식 제도로 전환

나. 영국

영국은 1834년에 비기여제 방식의 공무원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공적연금 적용으로 다층보장체계³⁾를 구축한 후 2000년대에는 연금지여결정방식 다양화, 연금인상변경, 신국가연금 도입 등의 구조 및 모수개혁 실시

- (도입~1990년대 제도 정비) 공적연금 적용, 근거법령 제정, 연금충당부채 정부부담금제도 도입 등
 - ▶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the Beveridge Report)에 따라 공무원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의 공적연금 도입
 - ▶ 1972년에 「국가공무원법(Superannuation Act 1972)」을 제정하여 공무원연금제도 근거법령 마련

2) 2000년 독일 노동부장관 리스터(Riester)가 공적연금의 소득보장기능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

3) 공무원에게 독립된 연금제도를 적용하면서 동시에 전 국민 대상의 공적연금도 적용하는 독립·다층보장체계가 있고, 전 국민 대상의 공적연금과 완전히 통합하고 별도의 비기여제 공무원연금을 보장하는 통합·다층보장체제로 구분할 수 있음

- ▶ 1995년에 공무원연금 비용지출 상황을 파악하여 연금충당부채부담률⁴⁾을 산정한 후 공무원 보험료(배우자 연금 및 유족급여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소속기관이 전액 부담
- (2000년대 이후 구조 및 모수개혁) 연금급여결정방식의 다양화, 연금인상변경, 신국가연금 도입 등
 - ▶ 2002년에 기존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⁵⁾의 모수를 변경하고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⁶⁾을 추가로 도입하여 2002년 10월 이후 공무원 임용자의 경우 둘 중에 선택하여 가입
 - ▶ 2010년에는 연금인상방식을 기존 소매물가지수에서 소비자물가지수(2011년부터 적용)로 변경하고 2015년에는 확정급여형의 연금지급률을 재직기간당 2.32%로 인상
 - ▶ 2016년에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되고 있던 공적연금인 국가기초연금과 국가2층연금을 통합하여 신국가연금 도입

다. 캐나다

캐나다는 1870년에 연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제도를 도입하고 1996년 전국민 공적연금 도입으로 다층보장체계⁷⁾를 구축하고 2000년에 공무원연금기금 회계를 구계정과 신계정으로 분리하는 구조개혁 실시

- (도입~1990년대 제도 정비) 근거법령의 정비, 공적연금 적용 등
 - ▶ 1924년 기여금부담률, 연금지급률, 수급개시연령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근거법령으로 「구 공무원연금법(CSSA, Civil Service Superannuation Act)」 제정
 - ▶ 1954년 「신 공무원연금법(PSSA, Public Service Superannuation Act)」 제정으로 공무원연금급여는 연방공무원이 퇴직 시 요구할 수 있고 국가가 보장하는 고유한 권리로 규정
 - ▶ 1966년에 도입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득비례형 공적연금(CPP/QPP, Canada/Quebec Pension Plan)은 연방공무원에게도 적용되며 보험료, 연금급여 산정 등에서 두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
- (2000년 구조개혁) 공무원연금기금 투자방식 변경, 연금기금회계를 2000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구계정과 신계정으로 분리 등
 - ▶ 2000년 4월 이전에는 연금기금의 거래내역이 정부 계정에만 기록되고 실제 자산시장에 투자되지 않았으나 4월에 공무원연금투자위원회(PSPIB, Public Sector Pension Investment Board)를 설립하여 투자 시작
 - ▶ 2000년 이전과 이후로 연금기금회계를 구계정과 신계정으로 분리하고, 지불능력을 상실한 구계정은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하며 신계정은 완전적립을 목표로 운영

4) 완전적립제도의 표준보험료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자인 소속기관이 4년마다 소득 수준별로 산정한다.

5) 확정급여형은 공무원이 퇴직 시 받을 연금급여가 재직기간과 평균 보수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는 구조로서 공무원이 퇴직하기 전까지는 정부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정부에 귀속되므로 공무원이 받게 되는 연금급여는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6) 정부가 매년 공무원 보수의 일정비율을 연금계좌에 예치하는 제도로 공무원과 정부가 적립금을 공동 운용하며 연금급여가 수익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7) 공무원에게 독립된 연금제도를 적용하면서 동시에 전 국민 대상의 공적연금도 적용하는 독립·다층보장체계가 있고, 전 국민 대상의 공적연금과 완전히 통합하고 별도의 비기여제 공무원연금을 보장하는 통합·다층보장체제로 구분할 수 있음

라. 스웨덴

스웨덴은 1778년에 비기여제 공무원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 모수개혁 중심에 변화가 있었으나 1936년 다층적 구조개혁에 따라 기여제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과 통합시키고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전액부담하는 직역연금제도를 공무원에게 적용

- (도입~1930년대 모수개혁) 수급개시연령 조정, 기여금제도 도입, 소득대체율 조정, 적용대상 확대 등
 - ▶ 1778년 도입 당시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은 중앙정부 정규직 공무원(50% 이상이 비정규직)이었고 기여금 납부 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비기여제방식으로 70세에 퇴직하는 경우 평생 봉급을 받는 구조
 - ▶ 1877년에 70세 퇴직을 의무화하고 65세에 조기퇴직하는 경우 이전 임금의 약 3분의 2 수준의 연금 지급
 - ▶ 1907년에 수급개시연령을 남성 67세, 여성 60세로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을 65%로 낮추었으며 기여금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
 - ▶ 1934년에 공무원연금제도 적용대상에 중앙정부 비정규직 공무원, 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포함
- (1936년 구조개혁)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퇴직연금제도 적용 등
 - ▶ 1913년에 세계 최초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보험, 즉 국민연금을 도입하였고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 부담
 - ▶ 1936년에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구조개혁을 실시하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통합되어 공무원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
 - ▶ 근로자의 90% 이상이 가입한 직역연금제도(고용주가 전액부담하는 준강제적 연금제도로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 퇴직연금과 유사)를 공무원에게도 적용하여 노후소득을 다층적으로 보장

마. 일본

일본은 1890년에 공무원 및 군인에게 적용하는 「은급법(恩給法)」을 제정하면서 공무원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 다른 직종의 공제연금, 후생연금과 통합하는 방향의 구조개혁을 추진

- (1958년 은급제도·직종별 공제조합 통합)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 제정에 따라 공무원과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은급제도와 철도 등 직종별 공제조합을 공제연금으로 통합
 - ▶ 공제연금은 우리나라의 직역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으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철도, 담배, 통신, 농림어업단체직원 등을 대상으로 함
- (1986년 공제연금 구조개혁) 공적연금을 다층제로 전환하면서 공제연금 대상자인 공무원 등도 국민연금(20세 이상 60세 미만 전국민 대상 공적연금)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구조개혁 실시

- (2015년 공제연금·후생연금 통합) 공제연금(국가 및 지방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의 보험료율, 급여체계 등을 후생연금과 일치시키면서 근로자 연금제도를 일원화
 - ▶ 철도·담배·통신 공제연금은 1997년, 농림어업단체직원 공제연금은 2002년에 후생연금으로 통합
 - ▶ 국가 및 지방공무원 등에 대한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의 통합은 2012년에 결정되었고 2015년부터 시행

3. 주요국의 공무원연금제도 현황 및 비교 분석

가. 독일

독일의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연방공무원)는 민간 근로자의 공적연금제도와 분리된 단층제도이고 비기여제 원칙 하에 구제도(순수부과방식)와 신제도(완전적립방식)로 이원화된 형태로 운영

- (일반사항) 정년과 수급개시연령이 일치하고 단계적으로 연장 중이며 5년 이상 재직 시 수급권 부여

표 1 독일의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연방공무원 기준)

정년(= 수급개시연령)	수급요건	보험료율	연금지급률
2020년 60세 → 2033년 65세	5년 이상 재직	0%(비기여제)	1.79375%

자료: 공무원연금공단(2022) 「해외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 2022」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수입과 지출) 공무원기여금 납부가 없는 비기여제이므로 수입은 없고, 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이 지출항목이며 회계상 연방정부의 인건비 일부로 편성하여 전액 국가예산으로 부담
- (가입자 및 수급자 수) 2019년 말 기준 연방 및 지방정부 가입자 수는 176만명, 수급자 수는 139만명

나. 영국

영국의 국가공무원은 신국가연금과 공무원연금제도의 다층보장체계를 적용받으며, 신국가연금은 의무가입이지만 공무원연금은 탈퇴가 가능한 특징이 있음

- (공무원연금 일반사항) 정년제도 없이 수급개시연령은 65세 또는 신국가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따라 연장되며 비기여제 원칙으로 보험료 납부 없음(유족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료 징수)
 - ▶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직역연금은 자동가입제이지만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탈퇴가 가능한 점에서 준강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공무원의 95%가 가입되어 있음

표 2 영국의 현행 신국가연금과 공무원연금제도(국가공무원 기준)

	수급개시연령	수급요건	보험료율	연금지급률
신국가	65세→ 2039년 68세	2년 이상 재직 후 수급개시연령 도달	0~25.8% (공무원, 정부 차등부담)	평균 소득대체율 24.1%
공무원	65세 또는 신국가연금 수급개시연령 중 높은 연령		0% (비기여제)	2.32%

자료: 공무원연금공단(2022) 「해외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 2022」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공무원연금 수입과 지출) 비기여제이므로 별도의 수입은 없고,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 지출
- (공무원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수) 2020년 말 기준 가입자 수는 54만명, 수급자 수는 71만명

다. 캐나다

캐나다는 독립된 형태로 공무원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연방공무원에게도 소득비례형 공적연금을 다층적(소득 비례형 공적연금+공무원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보장

- (공무원연금 일반사항) 공무원 정년은 없고, 2013년 이후 가입자 기준 65세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부담하는 공적 및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13.65~18.18%⁸⁾

표 3 캐나다의 현행 소득비례형 공적연금과 공무원연금제도(연방공무원 기준)

	수급개시연령	수급요건	보험료율	연금지급률
공적	65세	수급개시연령 도달	11.4% (공무원, 정부 균등부담)	25%
공무원	2013년 이전 가입자 60세, 이후 65세	2년 이상 재직	15.9~24.96% (공무원, 정부 균등부담)	소득상한 이하 1.375%, 초과분 2%

자료: 공무원연금공단(2022) 「해외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 2022」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공무원연금 수입과 지출) 수입은 공무원과 정부가 균등부담하는 보험료가 있고, 지출은 퇴직연금, 가교연금(Bridge Pension)⁹⁾, 유족연금, 장해연금이 있음
- (공무원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수) 2020년 말 기준 가입자 수는 33만명, 수급자 수는 28만명

8) 공적연금 보험료율 11.4%와 공무원연금 보험료율 15.9~24.96%의 합은 27.3~36.36%이고, 균등부담이므로 산출된 합을 2로 나누면 공무원이 부담하는 공적 및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13.65~18.18%

9) 공적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65세 전까지 공무원연금과 함께 지급되는 급여

라. 스웨덴

스웨덴의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기여제)과 직역연금(비기여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다층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 받음

- (직역연금 일반사항) 정년제도 없이 수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 중이고 사용자가 보험료 적립

표 4 스웨덴의 현행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제도

	수급개시연령	수급요건	보험료율	연금지급률
국민	2022년 62세 → 2027년 64세	수급개시연령 도달	18.5% (공무원, 정부 균등부담)	명목확정기여방식
직역	1987년 이전 출생자 61세, 이후 62세		기준소득 이하는 6%, 초과분에 31.5% 적용 (사용자 전액부담)	확정급여형

자료: 공무원연금공단(2022) 「해외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 2022」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직역연금 수입과 지출) 수입은 사용자가 부담 및 적용하는 보험료이고, 확정급여형(DC)으로 수급자의 수급기간 선택(5년, 10년, 15년, 20년 또는 종신)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
- (직역연금 수급자 수) 2021년 말 기준 145만명¹⁰⁾

마. 일본

일본은 2015년에 공무원 공제연금을 후생연금으로 통합하고 공무원도 국민연금 대상이 되어 다층적(국민연금+후생연금) 노후소득을 보장하여 70세 미만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공적연금제도 적용

- (후생연금 일반사항) 정년과 수급개시연령이 2031년에 65세로 일치하도록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 중
➤ 보험료율은 18.3%(공무원, 정부 균등부담)이고, 연금지급률은 가입기간,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

표 5 일본의 현행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제도

	정년 ≠ 수급개시연령	수급요건	보험료율	연금지급률
국민	(정년) 2021년 60세 → 2031년 65세	보험료 납부(면제) 10년 이상	정액형	정액형
후생	(수급) 2012년 60세 → 2025년 65세	국민연금 수급요건 충족하고 후생연금 1개월 이상 가입	18.3%	0.5481~0.95%

자료: 공무원연금공단(2022) 「해외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 2022」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0) <https://www.pensionsmyndigheten.se/statistik/pensionsstatistik/> 스웨덴 연금통계청 데이터베이스

- (후생연금 수입과 지출) 수입은 공무원기여금, 은급세대분 비용 등 기타 추가비용에 대한 정부부담금이 있고, 지출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 퇴직수당으로 구성
- (후생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수) 2019년 말 기준 공무원 가입자 수는 394만명, 수급자 수는 271만명

바. 공무원연금제도 비교 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국의 공무원연금제도를 비교하면, 공무원도 다른 공적연금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추가적으로 비기여제의 민간기업 퇴직연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층적인 보장을 하는 방식이 약간 우세

- 독립·단층보장: 우리나라와 독일은 독립된 연금제도로 다른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음
- 통합·다층보장: 스웨덴과 일본은 다른 공적연금과 통합시켜 다층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에서 동일하나, 스웨덴은 공무원에게 비기여제 확정급여형 연금을 추가적으로 보장
- 독립·다층보장: 영국과 캐나다는 공무원을 다른 공적연금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추가적으로 독립된 공무원연금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동일하나, 영국은 비기여제로 운영 중

대부분의 국가는 정년제도가 없거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정년이 일치하나, 2023년 기준 우리나라와 일본은 정년과 수급개시연령이 불일치

- 다만, 일본은 2021년 60세에서 2031년 65세로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2031년 이후에는 65세로 정년과 수급개시연령이 일치하게 됨

가입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독일의 공무원연금제도가 정년과 수급개시연령의 일치, 비기여제 등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캐나다와 일본이 높은 보험료율, 낮은 연금지급률 등으로 상대적으로 불리

- 일본은 공적연금의 보장이 있지만 후생연금 지급률이 1% 미만으로 낮고, 캐나다는 공적 및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동시에 납부하여 가입자의 부담률이 13.65~18.18%로 다른 국가들(9% 수준)보다 높음

표 6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 비교

	한국	독일	영국	캐나다	스웨덴	일본
설치연도	1960년	1873년	1834년	1870년	1778년	1890년
보장체계	독립·단층보장	독립·단층보장	독립·다층보장 (신국가+공무원)	독립·다층보장 (공적+공무원)	통합·다층보장 (국민+직역)	통합·다층보장 (국민+후생)
수급요건	10년 이상 재직	5년 이상 재직	2년 이상 재직	2년 이상 재직	수급개시연령 도달	국민연금 수급조건 + 후생연금 1개월 이상
정년	60세	수급개시연령	없음	없음	없음	2021년 60세 → 2031년 65세
수급 개시연령	2022년 61세 → 2033년 65세	2020년 60세 → 2033년 65세	65세 또는 신국가연금 수급개시연령 중 높은 연령	2013년 이전 가입자 60세, 이후 65세	1987년 이전 출생자 61세, 이후 62세	2012년 60세 → 2025년 65세
보험료율	18% (균등부담)	0% (비기여제)	0% (비기여제)	15.9~24.96% (균등부담)	0% (비기여제)	18.3% (균등부담)
연금 지급률	2022년 1.77% → 2035년 1.7%	1.79375%	2.32%	소득상한 이하 1.375%, 초과분 2%	확정급여형	0.5481~0.9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주요국의 공무원연금 재정 현황 및 비교 분석

독립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독일, 영국, 캐나다의 공무원연금 재정 현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재정과 비교 분석

- 통합·다층보장체제로 운영 중인 스웨덴과 일본의 경우, 공적연금 재정 안에 포함되어 있고 공무원 가입자 및 수급자 관련 수입, 지출 등 재정 상황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음

가. 독일

비기여제로 운영하고 있는 독일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출 규모를 장기재정추계를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여 재정지출 부담 완화

- (재정현황) 연방공무원 연금지출 규모는 2010년 145억 유로(22.3조원)에서 2019년 174억유로(22.8조원)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2.0% 증가
 - 1인당 연금월액은 2010년 2,670 유로(412만원)에서 2019년 3,150 유로(413만원)로 연평균 1.9% 증가

표 7 독일 공무원연금 지출총액 및 1인당 연금월액 추이: 2010~2019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가율
지출 (10억 유로)	14.5 (0.43)	14.5 (0.39)	15.2 (0.43)	15.4 (0.41)	15.8 (0.41)	16.1 (0.48)	16.4 (0.47)	16.8 (0.46)	17.1 (0.43)	17.4 (0.45)	2.0%
1인당 연금월액(유로)	2,670	2,680	2,680	2,850	2,870	2,940	2,980	3,020	3,080	3,150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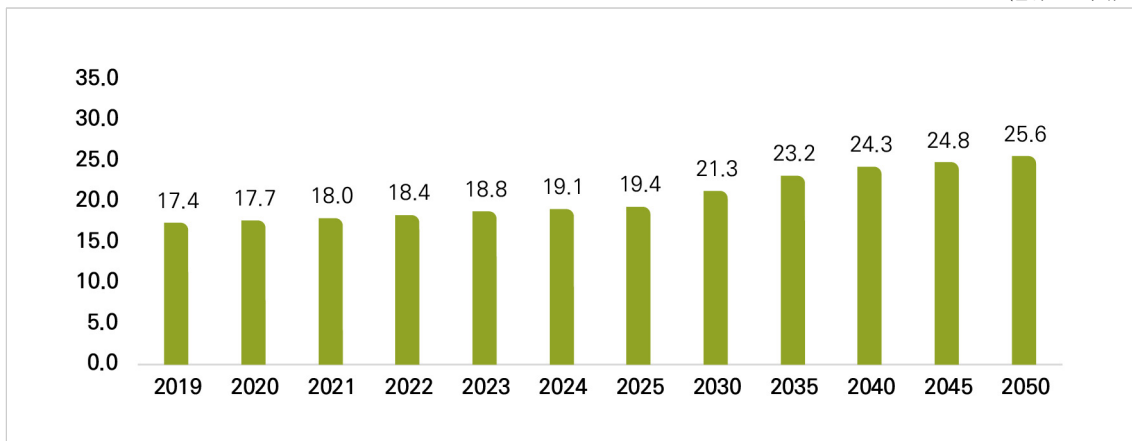
주: 괄호()는 GDP 대비 비율

자료: 독일 연방내무부의 「Sechster Versorgungsbericht der Bundesregierung」, 「Siebter Versorgungsbericht der Bundesregierung」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재정안정화기금)** 2019년 말 기준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약 98억 유로(12.8조원)이고,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금 설정 이후 연간 수익률은 3.9%
 - ▶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는 2035~2040년 사이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재정안정화기금은 2032년부터 15년간 연금급여 지출에 사용될 계획
- **(장기재정추계)** 2020년 제7차 연금지출보고서(Siebter Versorgungsbericht der Bundesregierung)에 따르면, 2050년 재정지출 규모는 256억 유로 예상
 - ▶ 보수인상률은 기간평균 2.8%로 가정한 결과이고 수급자 수는 2019년 63만명에서 2050년 37만명으로 약 41% 감소할 것으로 예상(철도와 우편 부문이 1990년대 민영화로 신규 공무원 채용 없음)

그림 1 독일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 2019~2050년

(단위: 10억 유로)



자료: 독일 연방내무부(2020) 「Siebter Versorgungsbericht der Bundesregierung」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영국

비기여제로 운영 중인 영국의 공무원연금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연금충당부채를 매년 추계하여 공시

- **(재정현황)** 공무원 연금지출 규모는 2013년 80억 파운드(13.7조원)에서 2022년 116억 파운드(19.1조원)으로 10년 연평균 4.2% 증가
 - ▶ 2018년 99억 파운드 대비 32.3%가 증가한 2019년의 경우, 공무원연금 급여와 관련하여 소송이 있었고 최종 패소하여 37억 파운드(5.5조원)의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한 데에서 기인
- **(연금충당부채)** 장기재정추계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연금충당부채를 재추계하여 공시하는데 2022년 기준 3,421억 파운드(562조원)로 추정
 - ▶ 기준 시점의 가입자, 수급자를 기준으로 퇴직률, 장애발생률, 사망률 등의 인구통계학적 가정과 할인율, 보수상승률 등 일정한 재정적 가정 하에 추계 실시
 - ▶ 퇴직 수당, 질병으로 인한 퇴직 수당 및 가입자 사망 후 적용되는 수당·부상 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음

표 8 영국 공무원연금 지출 및 충당부채 추이: 2013~2022년

(단위: 10억 파운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가율
지출	8.0 (0.41)	7.3 (0.36)	9.1 (0.44)	8.1 (0.38)	7.8 (0.36)	9.9 (0.45)	13.1 (0.59)	9.5 (0.48)	10.5 (0.49)	11.6 (0.52)	4.2%
연금충당부채	160.0	175.7	194.8	187.3	234.0	237.0	237.2	280.1	307.5	342.1	-

주: 괄호()는 GDP 대비 비율

자료: 영국 내각사무처의 각 연도별 「Civil Superannuation Accounts」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캐나다

캐나다는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 중인 구계정 공무원연금의 수입 대비 지출이 큰 상태로 그 부족분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고, 2000년 이후 신계정 공무원연금은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 중

- **(재정현황)** 2022년 공무원과 정부가 납부한 기여금 수입은 59억 캐나다\$(5.7조원)이고 연금지출은 87억 캐나다\$(8.5조원)로 28억 캐나다\$(2.7조원)의 적자 기록
 - ▶ 1인당 연금월액은 2014년 2,335 캐나다\$(222만원)에서 2022년 2,890 캐나다\$(281만원)으로 연평균 2.7% 증가

표 9 캐나다 공무원연금(구계정) 재정 추이: 2014~2022년

(단위: 억 캐나다\$)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가율
기여금수입	46	45	44	45	48	54	53	57	59	3.2%
연금지출	63	66	69	72	74	77	81	83	87	4.1%
재정수지	-17	-21	-25	-27	-26	-23	-28	-26	-28	6.4%
	-(0.09)	-(0.11)	-(0.12)	-(0.13)	-(0.12)	-(0.10)	-(0.13)	-(0.10)	-(0.10)	
1인당 연금월액(캐나다\$)	2,335	2,393	2,443	2,503	2,636	2,699	2,778	2,820	2,890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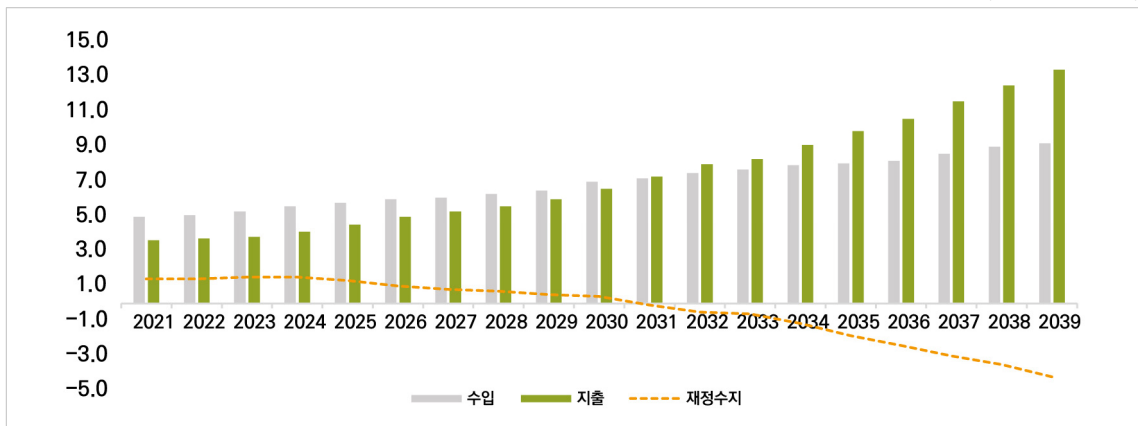
주: 괄호()는 GDP 대비 비율

자료: 캐나다 정부의 각년도별 「Report on the Public Service Pension Plan」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장기재정추계) 2000년 이전 구계정은 이미 지불능력을 상실하였고, 2000년 이후의 신계정은 연금기금에서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완전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31년경 적자 전환 예상

그림 2 캐나다 공무원연금(신계정) 장기재정추계 결과: 2021~2039년

(단위: 백만 캐나다\$)



자료: 캐나다 금융기관 감독청(2021) 「19th Actuarial Report on the Pension Plan for the Public Service of 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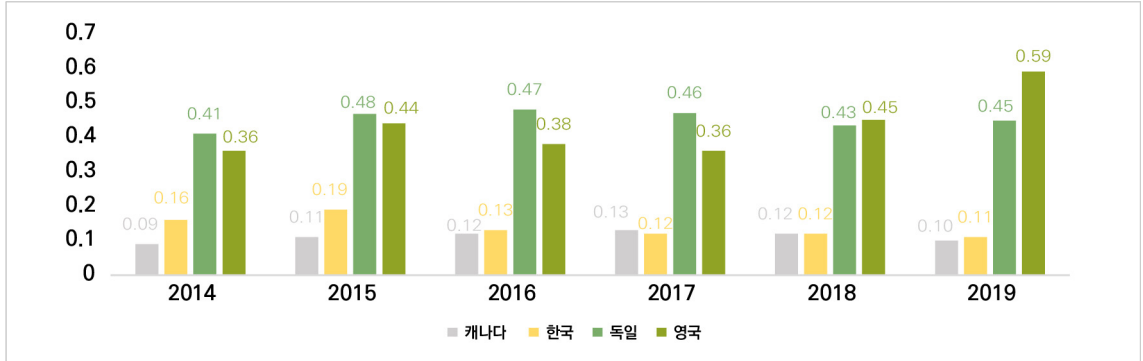
라. 공무원연금 재정 현황 비교 분석

독립적으로 공무원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독일, 영국, 캐나다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순지출을 GDP 대비 비율로 비교하면, 2019년 기준 0.1~0.6% 수준이고 비기여제로 운영하는 국가에서 높게 나타남

- 기여제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과 캐나다(구계정)는 공무원연금 급여 지출을 해당연도의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여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순지출로 보고 각 연도별 GDP로 나누어 산출

그림 3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재정 순지출의 GDP 대비 비율 추이: 2014~2019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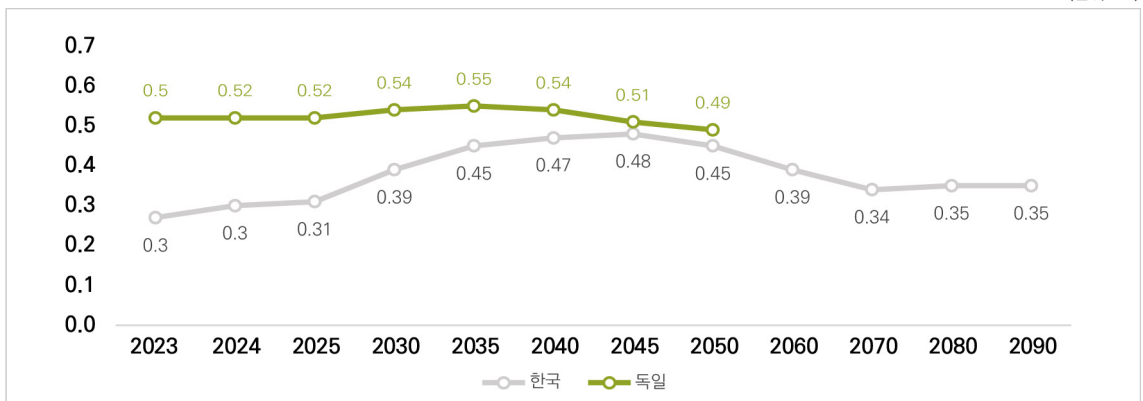
주: 독일, 영국, 캐나다 자료는 [표 7-9]의 값이고 한국의 경우,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적자를 순지출로 보고 각 연도별 GDP로 나눈 값
 자료: 인사혁신처 제출자료, e-나라지표의 국내총생산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장기재정추계결과에 근거하여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재정 순지출의 GDP 대비 비율을 전망하면, 독일은 2023년 0.52%에서 2050년 0.49%로 감소하고 한국은 2023년 0.27%에서 2050년 0.45%로 증가할 전망

- 한국과 독일의 공무원연금제도 차이, 장기 거시경제 변수 전망방법 등의 차이로 비교를 위한 정합성 측면에 한계가 있으나,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재정 순지출 규모의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음
- 한편, 한국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순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2045년 이후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90년에는 0.35%로 전망됨¹¹⁾

그림 4 한국과 독일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재정 순지출의 GDP 대비 비율 전망

(단위: %)



주: 독일 자료는 2050년까지 추계한 결과만 존재하며 [그림 1]의 값에 OECD 전망 독일 GDP로 나누어 산출하였고, 한국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2023)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IV」의 공무원연금 재정추계결과 활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1) 국회예산정책처, 2023.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IV」

1인당 연금월액은 2019년 기준 독일이 413만원, 캐나다 237만원, 한국 248만원으로 독일의 공무원연금 혜택이 상대적으로 큼

- 다만, 캐나다의 경우 다층보장으로 공적연금이 있으므로 실질 연금월액은 237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5. 시사점

주요국의 공무원연금제도는 도입 초기에 독립된 단층보장체계가 주를 이루었으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다른 공적연금과 하향 통합하고 추가적인 급여를 보장하는 등의 다층보장체계로 발전하는 추세

- 주요국의 공무원연금제도가 초기에는 보험료율, 연금지급률 등의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연금재정안정성 문제,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구조개혁으로 바뀌는 경향 있음

주요국의 공무원연금이 다층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점을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개혁 논의에서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 필요

- 한국의 공무원연금은 독일과 유사한 독립·단층보장체계를 유지 중이지만, 본고에서 다룬 국가 중에는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구조개혁 등을 통하여 다층보장체계를 구축
 - ▶ 구조개혁은 국민, 민간근로자, 공무원 등에 동일한 공적연금(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을 적용하여 다층보장체계로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
 - ▶ 국가에 따라서는 사용자 전액부담의 보험료 적립을 통해 공무원에게 확정급여를 지급하여 추가적으로 소득 보장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본고에서 다룬 국가 중 2031년 이후에 정년과 수급개시연령이 불일치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공무원의 정년과 연금 수급개시연령 차이에 대한 논의 시작 필요

- 공무원 정년제도 없이 62~65세에 수급이 개시되거나 정년과 수급개시연령이 일치되는 경우가 대부분
- 본고에서 다룬 국가 중 공무원 정년과 수급개시연령이 불일치 하는 국가는 2023년 현재 한국과 일본이지만, 일본은 2031년 이후 정년과 수급개시연령이 일치될 예정
- 한국의 경우, 정부가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서 정년 연장 관련 사회적 논의 추진을 발표
 - ▶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정년을 2000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회적 논의 및 의견수렴 방법 및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음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재정 순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비기여제로 운영하고 있는 독일과 영국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2019년 기준 한국과 캐나다는 각각 0.11%, 0.10%로 비기여제로 운영 중인 독일과 영국의 0.43%, 0.59%보다 낮은 상황
 - 캐나다와 영국의 경우 다층보장체계이므로 공무원연금 이외에 정부가 공무원에게 지출하는 공적연금 급여를 포함하면 상기 비율보다 높아질 수 있음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2050년경에는 비기여제로 운영 중인 독일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2030~50년대 시기의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독일은 2023~2050년 기간 동안 GDP 대비 비율이 0.5%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한국은 2023년 0.27%에서 2045년 0.4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GDP 대비 비율이 2050년 이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GDP 대비 비율이 증가하는 구간에 대한 재정안정화를 위한 노력 필요
 - 예를 들면, 독일처럼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검토하되, 기금재원은 재직자와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연금액 한시적 동결, 재정안정화기여금 부과 등으로 조달하여 재정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활용

의안 비용추계 활용 실태 조사 결과

신 헌 태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53)

1. 개요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비용추계 활용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용추계 활용도 제고 및 업무개선 방향을 모색

표 1 설문조사 개요

조사명	2023년도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실태 설문조사
조사목적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의안 비용추계 활용 실태 및 활용도 제고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의안 비용추계 업무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조사대상	제21대 국회의원 보좌진
응답자 수	813명 ¹⁾
조사방법	방문면접조사 및 유치조사 ²⁾
조사기간	2023. 4. 3.(월) ~ 4. 7.(금)
조사기관	케이에스오아이 주식회사

주: 1) 모집단의 크기가 2,691명(국회의원 299명 × 9명/국회의원)인 경우 95%의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를 $\pm 3\%p$ 로 설정하는 경우 요구되는 표본 크기는 765명이며, 95%의 신뢰수준에서 표본 크기가 813명인 경우 표본오차는 $\pm 2.87\%p$ 임

2) 유치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응답 의사를 확인한 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전달하고 이후 재방문을 통해 응답 완료된 설문지를 회수하는 설문조사 방법을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조사 결과

가. 의안 비용추계 제도 인지 및 의뢰 경험

응답자 813명 중 의안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93.4%(759명)로, 국회의원 보좌진 대부분이 의안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비용추계 의뢰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90.4%(686명)로 나타남

표 2 의안 비용추계 제도 인지

(단위: 명, %)

설문 문항: 비용추계 제도를 알고 계셨습니까?		
구 분	응답자 수	응답자 비율
1. 알고 있음	759	93.4
2. 모름	54	6.6
합 계	813	1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의안 비용추계 의뢰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비용추계 의뢰 경험의 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의안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47.8%(363명)가 의안 비용추계 의뢰 경험이 연간 1~5회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연간 의뢰 건수 빈도가 높아질수록 응답자 비율이 감소함

표 3 의안 비용추계 의뢰 경험

(단위: 명, %)

설문 문항: 비용추계를 의뢰하신 경험은 1년에 몇 번 정도 있으십니까?		
구 분	응답자 수 ¹⁾	응답자 비율
1. 없음	63	8.3
있음	2. 1~5회	363
	3. 6~10회	160
	4. 11~15회	93
	5. 16회 이상	70
	소계	686
6. 무응답 등	10	1.3
합 계	759	100.0

주: 1)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759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자 분포

1. 연간 비용추계 의뢰 경험이 있는 경우의 경험 빈도는 연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의안발의 시 고려사항과 비용추계서 첨부

의안발의 시 고려사항으로는 정책적 필요성과 정치적 필요성이 우선시되고 있으며, 의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에 대한 영향은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1순위 응답자 기준으로 의안발의 시 고려사항의 우선순위는 정책적 필요성(76.1%), 정치적 필요성(14.2%), 정책적 부작용(3.2%), 통과 가능성(2.7%), 정치적 반대(2.5%), 재정에 대한 영향(1.4%) 순
- 1순위와 2순위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는 정책적 필요성(46.1%), 정치적 필요성(24.7%), 정책적 부작용(17.8%), 통과 가능성(4.5%), 재정에 대한 영향(3.4%), 정치적 반대(3.4%) 순

- 재정에 대한 영향은 2순위까지 고려하는 경우 1.4%에서 3.4%로 고려사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증가하나 여전히 의안발의 고려사항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편임

표 4 의안발의 시 고려사항

(단위: 명, 건수, %)

설문 문항: 의안발의 시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 간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구 분	1순위 응답자 수	2순위 응답자 수	1~2순위 응답 건수
1. 정치적 필요성	115 (14.2)	287 (35.3)	402 (24.7)
2. 정치적 반대	20 (2.5)	35 (4.3)	55 (3.4)
3. 정책적 필요성	619 (76.1)	131 (16.1)	750 (46.1)
4. 정책적 부작용	26 (3.2)	264 (32.5)	290 (17.8)
5. 통과 가능성	22 (2.7)	51 (6.3)	73 (4.5)
6. 재정에 대한 영향	11 (1.4)	45 (5.5)	56 (3.4)
합 계	813 (100.0)	813 (100.0)	1,626 (1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을 수반하는 의안발의 시에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¹⁾에 따라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요구서 중 비용추계요구서 첨부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많았음

-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 첨부을 선호하는 응답자 비율은 64.7%(491명)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 선호 비율 29.8%(226명)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남
- 의안발의 시 비용추계요구서 첨부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시간 단축(79.4%), 번거로운 비용추계서 첨부 절차(13.4%), 의안 통과와 유리함(6.3%) 순으로 나타남

표 5 의안발의 시 비용추계 관련 문서 첨부에 대한 선호

(단위: 명, %)

설문 문항: 국회법은 의안발의 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거나(1),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2)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더욱 선호하십니까?		
의안발의 시 첨부 비용추계 관련 문서 선호	응답자 수 ¹⁾	응답자 비율
1.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	226	29.8
2.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 첨부	491	64.7
3. 무응답 등	42	5.5
합 계	759	100.0

주: 1)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759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자 분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동법 제79조의2제2항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사 전에 해당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의장과 비용추계 요구 의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6 의안발의 시 비용추계요구서 첨부 선호의 이유

(단위: 명, %)

설문 문항: 의안발의 시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는 절차(2)를 선호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 분	응답자 수 ¹⁾	응답자 비율
1.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390	79.4
2. 법률안 등 의안 통과에 유리할 것 같아서	31	6.3
3. 비용추계서 첨부 절차가 번거로워서	66	13.4
4. 무응답 등 ²⁾	4	0.8
합 계	491	100.0

주: 1)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759명 중 의안발의 시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 첨부을 선호하는 응답자 491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자 분포

2) 비용추계서 작성 소요 기간 등을 비용추계요구서 첨부에 대한 선호에 대한 이유로 한 응답자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전반적으로 볼 때 의안발의 시 비용추계로 인한 불편이나 번거로움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의안발의 시 비용추계로 인한 불편이나 번거로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5%(216명)로 없다고 응답한 비율 34.1%(259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5%(262명)임

표 7 의안발의 시 비용추계로 인한 불편

(단위: 명, %)

설문 문항: 비용추계 때문에 의안의 발의에 불편이나 번거로움이 있으십니까?							
구 분	전혀 없음	별로 없음	보통	다소 있음	많이 있음	무응답 등	합계
의안발의 시 비용추계로 인한 불편이나 번거로움	38 (5.0)	221 (29.1)	262 (34.5)	184 (24.2)	32 (4.2)	22 (2.9)	759 ¹⁾ (100.0)
	259 (34.1)			216 (28.5)			

주: 1)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759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자 분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의안 비용추계 결과의 활용 경험

의안심사 과정에서 비용추계 결과가 언급되거나 의안심사 결과에 중요 고려사항으로 작용한 사례를 경험한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의안심사 과정에서 비용추계 결과를 활용하여 국회의원이 질의 또는 언급한 사례를 경험한 응답자는 의안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68.6%(521명)이며, 국회 근무경력 기간 전체에서 1~2회 경험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빈도(257명)로 나타나며, 경험 빈도가 높아질수록 응답자 비율이 감소함
- 비용추계 결과가 의안심사 결과에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작용한 사례를 경험한 응답자는 의안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63.5%(482명)이며, 국회 근무경력 기간 전체에서 1~2회 경험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빈도(257명)로 나타나며, 역시 경험 빈도가 높아질수록 응답자 비율이 감소함

표 8 의안심사 시 비용추계 결과의 활용: 국회의원의 질의 또는 언급

(단위: 명, %)

설문 문항: 의안심사 과정에서 비용추계 결과를 활용한 국회의원들의 질의나 언급을 경험한 적이 국회 근무경력 기간에 몇 번 정도 있으십니까?		
구 분	응답자 수 ¹⁾	응답자 비율
1. 없음	184	24.2
있음	2. 1~2회	257
	3. 3~4회	153
	4. 5~6회	61
	5. 7회 이상	50
	소계	521
6. 무응답 등	54	7.1
합 계	759	100.0

주: 1)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759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자 분포
1. 연간 비용추계 결과가 언급되거나 중요 고려사항으로 작용한 사례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경우의 경험 빈도는 국회 근무경력 기간 전체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9 의안심사 시 비용추계 결과의 활용: 의안심사 결과에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작용

(단위: 명, %)

설문 문항: 의안심사 과정에서 비용추계 결과가 의안의 수정·가결·부결 등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작용한 사례를 목격한 적이 국회 근무경력 기간에 몇 번 정도 있으십니까?		
구 분	응답자 수 ¹⁾	응답자 비율
1. 없음	191	25.2
있음	2. 1~2회	257
	3. 3~4회	140
	4. 5~6회	49
	5. 7회 이상	36
	소계	482
6. 무응답 등	86	11.3
합 계	759	100.0

주: 1)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759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자 분포
1. 연간 비용추계 결과가 언급되거나 중요 고려사항으로 작용한 사례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경우의 경험 빈도는 국회 근무경력 기간 전체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결과 의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안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의안발의 여부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과반인 383명(50.5%)을 차지하며 의안 가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역시 과반인 463명(61.0%)으로 나타남

- 추가재정소요가 큰 비용추계 결과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의안발의 단계 및 의안심사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10 추가재정소요가 큰 비용추계 결과에 따른 의안발의 여부 검토 의향

(단위: 명, %)

설문 문항: 의안발의 이전 확인한 비용추계 결과에서 의안에 따른 재정소요가 클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의안의 제출 여부를 다시 검토하시거나 수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 분	전혀 없음	별로 없음	보통	다소 있음	많이 있음	무응답 등	합계
추가재정소요가 큰 비용추계 결과에 따른 의안발의 여부 검토 의향	22 (2.9)	137 (18.1)	204 (26.9)	328 (43.2)	55 (7.3)	13 (1.7)	759 ¹⁾ (100.0)
	159 (20.9)			383 (50.5)			

주: 1)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759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자 분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11 추가재정소요가 큰 비용추계 결과의 의안 가결에 대한 영향

(단위: 명, %)

설문 문항: 비용추계 결과에서 의안에 따른 재정소요가 클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의안심사 과정에서 의안의 가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부정적	다소 부정적	보통	다소 긍정적	매우 긍정적	무응답 등	합계
추가재정소요가 큰 비용추계 결과의 의안심사에 대한 영향	44 (5.8)	419 (55.2)	179 (23.6)	89 (11.7)	5 (0.7)	23 (3.0)	759 ¹⁾ (100.0)
	463 (61.0)			94 (12.4)			

주: 1)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759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자 분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의안 비용추계 활용에 대한 인식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의안 비용추계 제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안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71.7%(544명)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3.4%(26명)로, 의안 비용추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표 12 의안 비용추계 제도의 필요성

(단위: 명, %)

설문 문항: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비용추계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임	보통	그려한 편임	매우 그려함	무응답 등	합계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의안 비용추계 제도의 필요성	1 (0.1)	25 (3.3)	187 (24.6)	412 (54.3)	132 (17.4)	2 (0.3)	759 (100.0)
	26 (3.4)			544 (71.7)			

주: 1)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759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자 분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의안 비용추계의 활용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대해서는 의안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41.6%(316명)가 보통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33.2%(252명)가 긍정적으로, 21.1%(160명)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표 13 의안 비용추계의 전반적 활용도

(단위: 명, %)

설문 문항: 의안심사 과정에서 비용추계 결과의 활용이 전반적으로 볼 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임	보통	그려한 편임	매우 그려함	무응답 등	합계
의안 비용추계의 전반적 활용도	25 (3.3)	135 (17.8)	316 (41.6)	238 (31.4)	14 (1.8)	31 (4.1)	759 (100.0)
	160 (21.1)			252 (33.2)			

주: 1)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759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자 분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의안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그 활용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의안 비용추계 결과가 잘 활용되지 않는 주요 원인에 대해 국회의원의 관심 부족, 비용추계의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비구속성, 추계 되지 않은 비용추계 등에 동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리커트 5점 척도(Likert 5-point scale)²⁾에 따른 평균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관심 부족(3.77), 비용추계의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비구속성(3.76), 추계 되지 않은 비용추계(3.73), 비용추계 제공 정보 부족(3.36), 늦은 비용추계 회답(3.18) 순으로 응답하였음
- 의안 비용추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추계 되지 않은 비용추계(3.42), 국회의원의 관심 부족(3.34), 비용추계의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비구속성(3.30)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표 14 의안 비용추계 활용이 미흡한 원인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명, 리커트 5점 척도)

설문 문항: 의안심사 과정에서 비용추계 결과가 잘 활용되지 않는 원인이 다음과 같은 사유라는 점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구 분	의안 비용추계 제도 인지 응답자 전체		의안 비용추계 활용도 부정 평가 응답자		
	응답자 ¹⁾	평균	응답자 ²⁾	평균	
1. 비용추계의 제공 정보가 부족함	740	3.17	157	3.36	
2. 추계 안 된 비용추계가 많음	734	3.42	154	3.73	
3. 비용추계의 회답이 늦음	734	3.16	153	3.18	
4. 비용추계에 대한 국회의원의 관심이 부족함	748	3.34	159	3.77	
5. 비용추계 내용의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없음	737	3.30	157	3.76	

주: 1) 의안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759명 중 각 설문 항목별로 무응답자 있음

2) 의안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의안 비용추계의 전반적 활용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보인 응답자 160명 중 각 설문 항목별로 무응답자 있음

1.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동의 수준의 평균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산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리커트 5점 척도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제시된 설문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측정 수치 간 순서(혹은 서열)가 의미가 있는 서열척도(ordinal scale)의 특성이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측정 수치 간 간격이 같은 등간척도(interval scale)로 간주하여 '전혀 동의하지 않음'-'동의하지 않는 편임'-'보통'-'동의하는 편임'-'매우 동의함'에 대해 1점부터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함

의안 비용추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원의 관심 강화,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 요구권 강화, 신속한 비용추계 회답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리커트 5점 척도에 따른 평균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관심 강화(4.02),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 요구권 강화(3.95), 신속한 비용추계 회답(3.85), 비용추계 제공 정보 확대(3.77),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작성 인원 확대(3.71), 비용추계서 양식의 간소화(3.69), 더욱 적극적인 비용추계(3.6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의안 비용추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신속한 비용추계 회답(3.92), 국회의원의 관심 강화(3.90), 비용추계의 제공 정보 확대(3.89), 자료 요구권 강화(3.83), 비용추계서 양식의 간소화(3.76), 더욱 적극적인 비용추계(3.71),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작성 인원 확대(3.66)의 순으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표 15 의안 비용추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명, 리커트 5점 척도)

설문 문항: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비용추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하다는 점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구 분	의안 비용추계 제도 인지 응답자 전체		의안 비용추계 활용도 부정 평가 응답자	
	응답자 ¹⁾	평균	응답자 ²⁾	평균
1. 비용추계의 제공 정보 확대	756	3.89	160	3.77
2. 더욱 적극적인 비용추계	755	3.71	159	3.68
3. 신속한 비용추계 회답	743	3.92	158	3.85
4. 비용추계에 대한 국회의원의 관심 강화	749	3.90	158	4.02
5. 비용추계 내용의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구속력 강화	748	3.46	160	3.44
6.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작성 인원 확대	745	3.66	157	3.71
7.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 요구권 강화	743	3.83	158	3.95
8. 비용추계서 양식의 간소화	736	3.76	159	3.69

주: 1) 의안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759명 중 각 설문 항목별로 무응답자 있음

2) 의안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의안 비용추계의 전반적 활용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보인 응답자 160명 중 각 설문 항목별로 무응답자 있음

1.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동의 수준의 평균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산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시사점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의안 비용추계 제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국회법」 제79조의2 개정으로 의원발의 및 위원회제안 등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작성을 전담하고 있음

비용추계 결과 의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안발의 및 심사 과정에서 비용추계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의안심사 과정에서는 비용추계 결과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결과, 의안 비용추계 결과가 잘 활용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국회의원의 관심 부족, 비용추계의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비구속성, 추계 되지 않은 비용추계 등으로 나타났음

향후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활용도를 제고하여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용추계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추가재정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의안을 중심으로 비용추계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용추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국회의원의 관심 강화, 비용추계의 전문성 강화,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 요구권 강화 등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의안발의 건수의 증가추세와 한정된 비용추계 업무 담당 인력을 고려할 때,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용추계 업무의 효율적 개선과 비용추계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중장기적으로는 비용추계 전담 인력 확충 및 의안비용추계시스템의 고도화와 함께 입법과정의 개선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표 16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 비용추계 회답 실적

(단위: 건, 명, 건/명)

연도	비용추계 접수 건수	비용추계 회답 건수			비용추계 업무 담당 인원 수 ¹⁾	비용추계 업무 담당 인원당 비용추계 접수 건수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2017	3,407	931	1,264	1,212	28	121.7
2018	3,179	929	990	1,260	28	113.5
2019	2,779	751	1,019	1,009	28	99.3
2020	4,645	926	1,919	1,800	28	165.9
2021	4,910	1,152	1,474	2,284	28	175.4
2022	4,009	1,335	654	2,020	28	143.2
2023. 5월 말	2,393	541	380	1,094	28	205.1 ³⁾

주: 1) 정원 기준

2) 연 단위 환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 동향 및 이슈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연장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주요내용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연장

박 성 은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68)

1. 최근 유류세 탄력세율 동향

금년 4월 정부가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 목적에서 유류세 탄력세율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면서 2021년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온 유류세율 인하 조치는 2년 가까이 지속될 예정¹⁾

- 정부는 2021년 말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같은 해 11월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20% 인하하였으며, 2022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탄력세율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가능 폭(‘21년 10월 탄력세율 기준 △37%, 기본세율²⁾ 기준 △30%³⁾)까지 세율 인하
 - ▶ 휘발유는 2021년 10월 820.5원/ℓ 수준이었으나 2022년 8월 515.8원/ℓ 까지 점진적으로 인하(△37%)하였고 2023년 1월 경유·부탄가스와 달리 615.2원/ℓ 으로 소폭 인상(△25%)
 - ▶ 경유는 2021년 10월 581.7원/ℓ 수준이었으나 2022년 8월 369.2원/ℓ 까지 점진적으로 인하(△37%)

표 1 유류세율 추이: 2021년 11월 ~ 현재

(단위: 원/ℓ)

유종	기간별 세율	~ 21.10		21.11 ~ 22.4		22.5 ~ 22.7		22.8 ~ 22.12		23.1 ~ 현재	
		세율 ¹⁾	합계	세율	합계 (인하폭 ²⁾)	세율	합계 (인하폭)	세율	합계 (인하폭)	세율	합계 (인하폭)
휘발유	교통·에너지·환경세	529	820.5	423	656.2 (△20%)	370	573.9 (△30%)	332.5	515.8 (△37%)	396.7	615.2 (△25%)
	교육세	79.4		63.5		55.5		49.9		59.51	
	자동차세 주행분	137.5		110		96.2		86.5		103.1	
	부가가치세	74.6		59.7		52.2		46.9		55.9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	375	581.7	300	465.3 (△20%)	263	408 (△30%)	238	369.2 (△37%)	238	369.2 (△37%)
	교육세	56.3		45		39.5		35.7		35.7	
	자동차세 주행분	97.5		78		68.4		61.9		61.9	
	부가가치세	52.9		42.3		37.1		33.6		33.6	

주: 1)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탄력세율

2) 인하폭은 2021년 10월 적용 세율 기준

1.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에 부과됨

2.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에 부과되나 본고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주행분 합계의 10%로 산정함

자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본고에서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주행분 및 부가가치세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

2) 기본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로, 휘발유는 475원/ℓ, 경유는 340원/ℓ 임

3) 2022년 8월 세법개정을 통해 탄력세율 조정폭이 기본세율(「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 기준 ±30% 범위에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 기준 ±50% 범위(동법 제2조제3항)까지 확대

2.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배경

2021년 말 시작된 원유 수입가격, 환율 및 물가상승이 최근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정의 주요 배경

- 미달러화 환율의 변동성 확대 가운데, 국내 원유 수입가격이 2021년 말부터 상승하고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이 가속화되었으며 소비자 물가는 2022년 상승률이 전년 대비 5.1%로 1998년(7.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⁴⁾
 - ▶ 다만, 원유가격은 2023년 들어 2021년 말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
 - ▶ 미달러화 환율은 2022년 상반기 미국 금리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 코로나19 봉쇄조치 장기화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상승하였다가('22년 10월 1,426원/달러) 하반기 미국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 등으로 약세로 전환되었으나 2023년 들어 다시 상승 중('23년 5월 1,328원/달러)
 -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 국제유가 하락 및 경기 둔화 등 공급 및 수요측 물가압력이 다소 완화되면서 전년수준(5.1%)보다 낮아지고 있지만('23년 5월 3.2%), 근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에도 여전히 전년 하반기 수준(4.6%)에서 유지 중('23년 5월 4.3%)
- ※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023년 (1월) 5.2% → (3월) 4.2% → (5월) 3.2%

그림 1 월별 국제원유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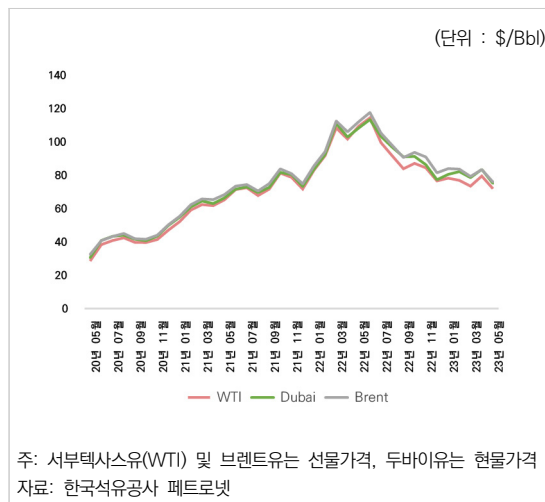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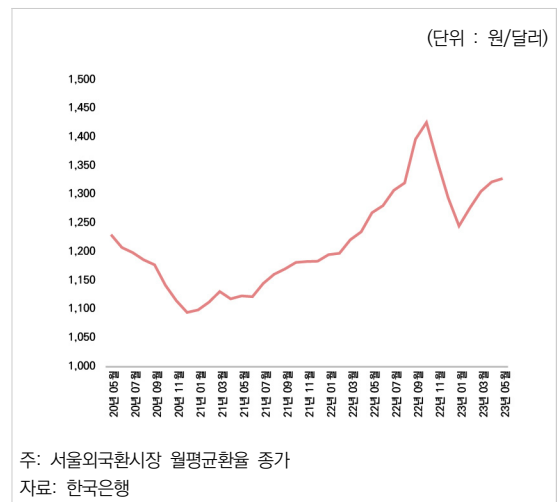


그림 2 월별 미달러화 환율 추이



4) 한국은행(「2022년도 연차보고서」 및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3.3) 등 참조

그림 3 소비자물가지수 추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단위: %)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3. 유류 판매가격 추이

휘발유 및 경유의 평균판매가격은 2022년 7월 고점 도달 이후 점차 낮아졌으며 2023년 5월에는 2021년 3분기 수준을 보임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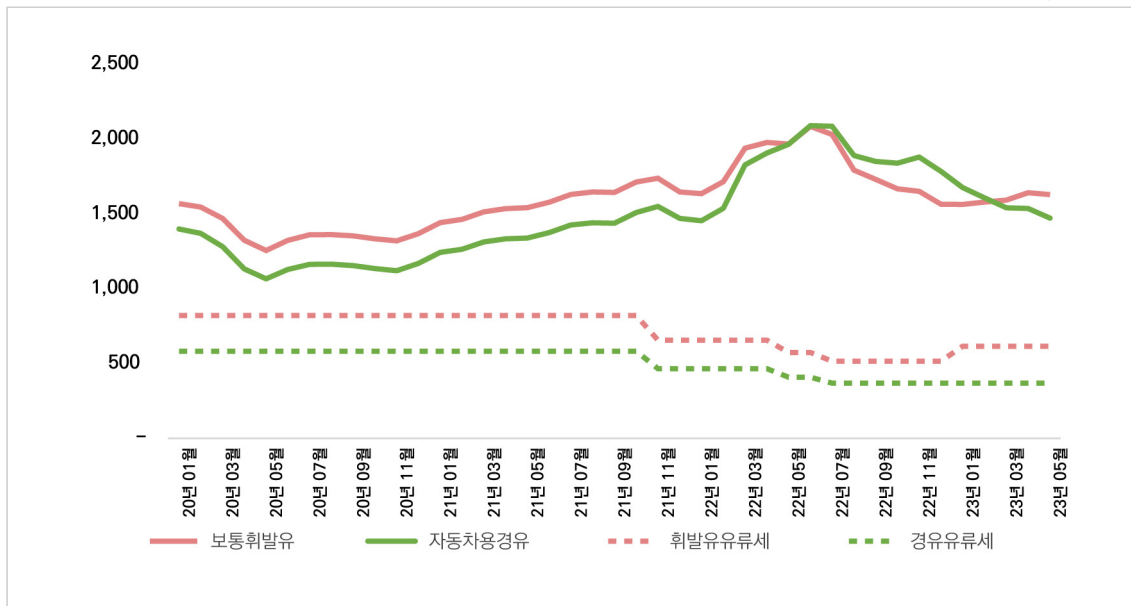
- 휘발유 판매가격은 2021년 10월 1,700원/ℓ을 상회하다가 같은 해 11월 원유가격 하락 및 유류세 인하 조치로 연말 1,600원/ℓ 대까지 하락한 후,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원유가격이 급상승하여 2,000원/ℓ 대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원유가격 하락 및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로 2023년 5월에는 1,600원/ℓ 수준에서 형성
- 경유 판매가격은 2022년 상반기 수급 차질 등으로 급상승하면서 같은 해 7월부터 휘발유보다 높아 졌으나 하반기 국제 원유가격 하락 및 유류세 최대 인하폭 유지⁶⁾ 등으로 점차 하락하여 2023년 5월에는 휘발유보다 낮은 1,400원/ℓ 수준에서 형성

5) 주유소 평균판매가격: (휘발유) '21년 7월 1,629원/ℓ, '23년 5월 1,629원/ℓ, (경유) '21년 8월 1,441원/ℓ, '23년 5월 1,472원/ℓ

6) 2023년 1월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의 경우 △37%에서 △25%로 축소되었으나 경유는 종전의 △37% 유지

그림 4 유종별 평균판매가격 및 유류세 부담 추이

(단위: 원/ℓ)



주: 유종별 평균판매가격은 부가세 포함한 전체 주유소 평균판매가격,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주행분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
 자료: 한국석유공사 오피넷(국내유가통계) 등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주요내용

이 정 훈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7)

1. 개요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수립되며, 각 부처가 조세특례를 평가하고 신규·변경을 건의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

- 정부는 2023년 3월 28일(화)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통해 2023년 조세지출 운용방향 및 추진 일정 등을 발표

그림 1 조세지출 성과평가 및 세법개정안 관련 주요 추진 일정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1월 ~)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 제출 (각 부처 → 기재부) (~ 4월 30일)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7월 중)	세법개정안·성과평가 결과 국회 제출 (9월 3일)
--------------------------	---	-----------------------	--------------------------------

- 2023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1건 및 심층평가 대상 23건(의무10건, 임의 13건)을 발표
 - 예비타당성평가: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정부는 평가결과를 법률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함
 - 심층평가: (의무대상) 일몰도래 조세특례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항목
(임의대상)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성과 검증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표 1 2023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

구분		조세특례 항목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 (1건)		중고휴대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신설
조세지출 심층평가 (23건)	의무심층평가 (10건)	①농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②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⑤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⑥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⑦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⑧농협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⑨영농조합법인 및 조합원 등에 대한 조세특례, ⑩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액 공제
	임의심층평가 (13건)	①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②수협 분할 등에대한 과세특례, ③영어조합법인 및 조합원 등에 대한 조세특례, ④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⑤근로장려금, ⑥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⑦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⑧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⑨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⑩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⑪공도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⑫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⑬청년 임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자료: 정부의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작성

2. 2023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의무심층평가 대상의 주요내용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1건)

- 중고휴대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신설
 - ▶ (내용)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중고휴대폰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
 - ▶ (기대효과) 중고휴대폰 거래 양성화 및 거래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가가치세 세부담 완화

의무심층평가 대상 (10건)

- ① 농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 ▶ (내용) 농·어업·임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면제

표 2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실적 추이: 2018 ~ 2022년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전망)
부가가치세	2,908	2,892	2,565	2,893	3,802
개별소비세	331	289	289	376	286
교통·에너지·환경세	7,196	7,547	7,997	7,421	5,954
교육세	1,129	1,175	1,243	1,169	891
계	11,564	11,903	12,094	11,859	10,932

자료: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②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 (내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해, 취업 후 3년간(청년 5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

표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실적 추이: 2018 ~ 2022년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전망)
소득세	1,935	6,068	7,792	8,397	9,672

자료: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③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 (내용) 공익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10~40% 감면

표 4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실적 추이: 2018 ~ 2022년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전망)
소득세	1,373	1,524	2,097	2,896	3,646

자료: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④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 (내용)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표 5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실적 추이: 2018 ~ 2022년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전망)
부가가치세	1,926	2,000	2,120	2,111	2,630

자료: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 (내용) 회사택시 기사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 경감

표 6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실적 추이: 2018 ~ 2022년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전망)
부가가치세	1,877	2,012	2,022	1,786	1,812

자료: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 (내용)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19%로 분리과세

표 7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 추이: 2018 ~ 2022년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전망)
소득세	1,482	1,469	719	731	901

자료: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⑦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7호 등)

➤ (내용) 다음의 주권 양도 등에 따라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면제

㉠ 부실금융기관 등이 보유주권을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양도, ㉡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등이 부실우려조합의 주권을 양수 후 양도, ㉢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부실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권양도, ㉣ 신설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 ㉤ 금융기관 주식과 금융지주회사 주식 간 교환, ㉥ 부실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주권양도,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추종지수 반영을 위한 주권 양도, ㉧ 농협금융지주회사가 한국산업은행에서 현물출자 받은 주권을 자회사에 양도, ㉨ 기업재무안전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투자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양도,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교환

표 8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실적 추이: 2018 ~ 2022년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전망)
증권거래세	471	481	102	811	220

자료: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⑧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3)

➤ (내용) 농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대한 손금 산입

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구조개편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표 9 농업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 추이: 2018 ~ 2022년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전망)
법인세	0	7	8	9	7
부가가치세	495	518	530	550	579
계	495	525	539	559	586

자료: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⑨ 영농조합법인 및 조합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내용) 영농조합법인: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합원: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관련 배당소득세 면제 등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그 외 부동산은 이월과세

표 10 영농조합법인 및 조합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실적 추이: 2018 ~ 2022년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전망)
소득세	130	140	148	178	141
법인세	202	188	194	209	212
계	332	328	343	387	353

자료: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⑩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

➤ (내용) 의료비·교육비의 15%,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

표 1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공제 실적 추이: 2018 ~ 2022년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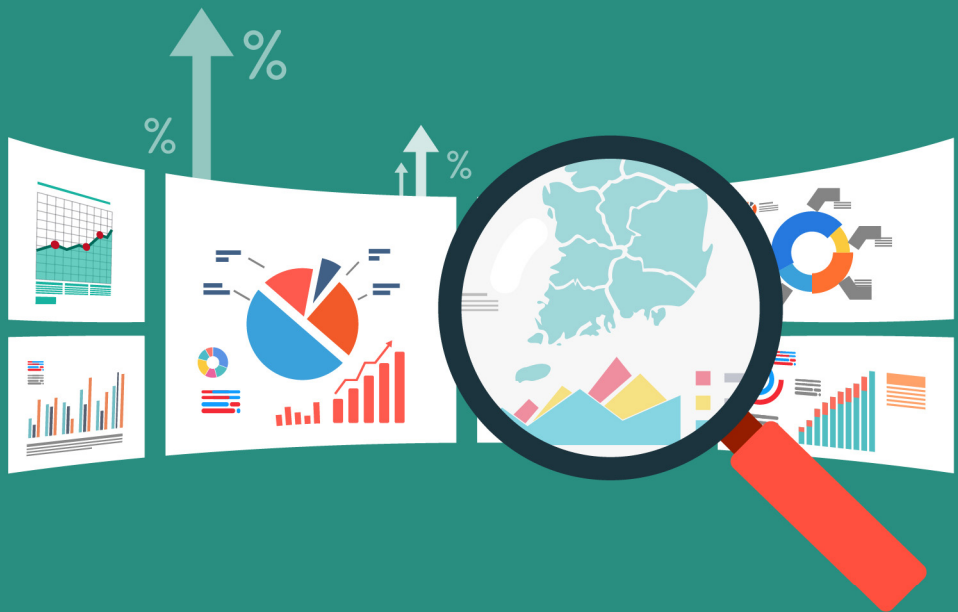
	2018	2019	2020	2021	2022(전망)
소득세	326	411	398	322	334

자료: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조세 이슈 및 분석

글로벌 조세지출의 현황 및 시사점

- Global Tax Expenditures Database(GTED)를 중심으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사적연금 세제 논의 동향
양도소득세액 결정요인의 세수증감 기여도 분석



글로벌 조세지출의 현황 및 시사점

- Global Tax Expenditures Database(GTED)를 중심으로

태정림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52)

1. 논의 배경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이란 사회·경제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비과세·감면 등 조세우대 조치로서 국가 세입의 감소를 야기함에 따라 예산상 직접적인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인 조세지출로 불리우며, 특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간접적인 보조금의 성격도 지님에 따라 숨은 보조금으로도 지칭됨

- OECD(1996)는 조세지출을 일반적인 조세체계 원칙인 ‘기준 조세체계’를 벗어난 것으로 규정
 - ▶ 기준 조세체계: 세목별 과세대상, 세율구조, 과세구간 및 과세단위, 과세기간, 국제조세규약 등을 의미
- 국가별로 기준 조세체계가 상이하고 조세지출의 범위에 대한 국가 간 합의된 기준 등도 존재하지 않아 그동안 단일한 기준에 의한 조세지출 비교 연구는 제한적으로 진행됨

지난 2021년 6월, ‘독일 개발·지속가능성 연구소(IDOS)¹⁾’와 ‘경제정책협의회(CEP)²⁾’는 조세지출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독일 연방 경제협력개발부(BMZ) 및 UN 등의 지원을 받아 전세계 조세지출 데이터베이스인 ‘The Global Tax Expenditures Database(GTED)’를 구축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함

- GTED는 독일 개발·지속가능성 연구소(German Institute for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IDOS)와 스위스의 경제정책협의회(Council on Economic Policy, CEP)에서 1990년 이후 전세계의 조세지출 관련 공식 정보를 취합하여 표준화된 범주로 구축한 최초의 조세지출 데이터베이스임
 - ▶ 조세지출이 정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재정지출과 사실상 동일하지만 조세지출의 규모 및 효과성 등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인식 하에서 조세지출에 대한 일관된 정보 제공 및 투명성 제고, 전세계적으로 효과적이고 공정한 조세지출 설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GTED를 구축함

본고에서는 이번에 공개된 GTED를 이용하여 글로벌 조세지출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1) ‘독일 개발·지속가능성 연구소(IDOS)’는 1964년 베를린에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독일개발연구소(German Development Institute)가 그 기원이며, 2022년 6월 현재의 기관명으로 변경하며 소재지도 Bonn으로 이전함. 동 연구소 직원은 204명(이중 박사급 연구인력은 95명), 2021년 기준 연구소 수입은 독일 연방정부(75%) 및 주정부(25%) 출연금과 자체수입 등으로 구성(자료출처: <https://www.idos-research.de/en/about-us/>)

2) ‘경제정책협의회(CEP)’는 취리히에 소재한 재정, 통화 및 무역정책에 초점을 맞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제 비영리, 초당적 경제정책 싱크탱크임(<https://www.cepweb.org>)

2. GTED 데이터베이스 개관

GTED는 국가별 조세지출 관련 공식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되었으며, 조사대상 국가 218개국 중 조세지출 데이터가 존재하는 국가는 2023년 5월 기준 106개국으로 파악됨

- GTED는 국가별 조세지출 관련 공식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조세지출 항목, 법적 근거, 감면액 및 수혜자 수 등을 수집³⁾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함
 - ▶ 국가별 조세지출 관련 공식 자료는 정부(주로 재무부) 또는 의회가 제공하는 조세지출에 대한 연간 보고서 및 개별 문서를 사용하였고, 대규모 국제 컨설팅 회사에 의해 출판된 투자 조세지원 등 특정 조세지출에 대한 분석 보고서 등 공개된 자료도 일부 포함됨
 - ▶ 다만, 어떤 문서라도 개별 조세지출의 세부 정보(항목별 조세지출 추정치, 법적 근거, 수혜자 정보 등)가 수록되어야 하며 해당 정보가 없을 경우 동 문서는 조세지출 보고서로 간주하지 않음
- 조세지출 데이터는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조세지출 금액은 미국 달러로 환산하였으며, GDP 대비 조세지출 비중 및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대비 조세지출 비중도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함
- 조세지출의 개념이 일반적인 기준 조세체계를 벗어난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GTED는 특정 조세지출을 다른 국가에서는 기준 조세체제로 간주하는 것 등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정부기관이 발표한 공식적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함

GTED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면 조세지출 항목(Provision)을 기준으로 ① 조세지출에 사용된 세원(Tax Base), ② 정책목표(Policy Objective), ③ 수혜자(Beneficiaries), ④ 조세지출 유형(Tax Expenditure Types)을 수록하고, 해당 조세지출의 절대 규모(US\$)와 GDP 대비 조세지출 비중 및 조세수입 대비 조세지출 비중을 제시함

- 조세지출에 사용된 세원(Tax Base) : 소득과세(법인세, 소득세, 자본이득세 등), 소비과세(판매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물품세, 탄소세 등), 자산과세(부동산세, 재산세, 상속세, 자동차세), 기타
- 정책목표(Policy Objective) : 투자유치/촉진(국내유치 등), 경제분야/활동지원(농업/수출/제조/교통/중소기업 등), 상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수요 증대(교육/의료/금융서비스/주택 등), 환경보호(탄소배출 억제/재생에너지), 재난구조, 특정 수혜집단 지원(특정지역,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가구)
- 수혜자(Beneficiaries) : 기업, 가계, 종교단체, 국제/지역(International/Regional), 비영리·NGO단체
- 조세지출 유형(Tax Expenditure Types) : 면제(Exemption), 공제(Deduction), 과세이연(deferral), 경감세율(reduced rate), 세액공제 또는 환급(tax credit, rebate or refund), 영세율(zero rated)

3) GTED의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항목 예시(https://gted.net/data/Methodology/GTED_DataCollection_Template.xlsx)

3. GTED 데이터베이스⁴⁾를 통해 살펴본 조세지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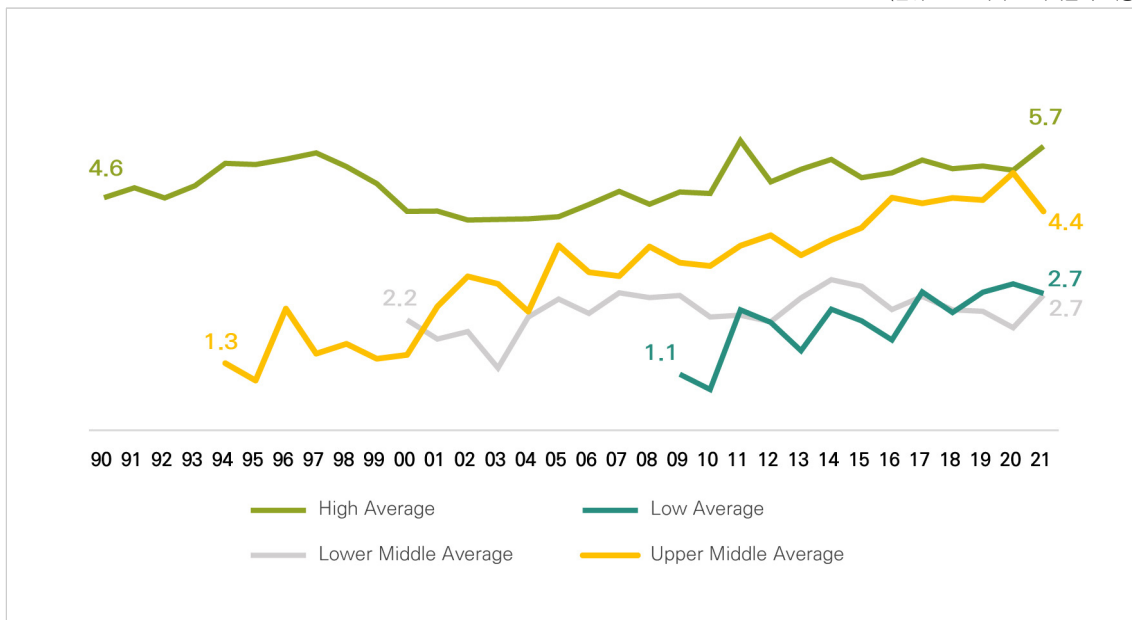
가. 소득기준 국가 그룹별 조세지출(GDP 대비 조세지출 비중) 추이

세계은행(WorldBank)의 소득기준에 따른 국가 그룹별⁵⁾ 조세지출 추이를 보면 고소득 국가의 GDP 대비 조세지출 비중은 1990년 4.6%에서 2021년 5.7%로 증가. 저소득 국가의 경우 2009년 1.1%에서 2021년 2.7%로 증가

- 2010~2021년 기간의 GDP 대비 조세지출 평균을 비교하면 고소득 국가는 5.2%인 반면 저소득국가는 2.2% 수준으로 고소득 국가의 절반을 하회하는 조세지출 활용도를 보임
-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조세지출 비중 변화를 보면 고소득 국가는 2019년 대비 2021년 조세지출 변화폭이 0.4%p로 가장 큰 반면 중상위(upper middle) 국가는 0.2%p 감소하였음

그림 1 소득기준 국가 그룹별 조세지출 추이: 1990~2021년

(단위: GDP대비 조세지출액 비중)



자료: GTED databas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분석에 사용한 GTED 데이터베이스는 버전 1.1.5. 발표일은 2023.4.13.임(접속 및 다운로드 일자: 2023.5.8.)

5) 소득기준 국가그룹 기준은 세계은행(World Bank) 구분에 따른 것이며, 2021년 기준 고소득(High) 국가는 인구 1인당 GNI \$13,205 이상, 저소득(low) 국가는 \$1,085 이하임. 그 외 중상위(upper middle) 국가는 \$4,256~\$13,205, 중하위(lower middle) 국가는 \$1,086~\$4,255 구간에 속하는 국가를 의미함

나. GTED의 조세지출 유형별 분류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2023년 5월 기준, GTED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조세지출 항목(Provision)은 총 24,135개이며 이를 GTED의 조세지출 유형별 분류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세원(Tax Base)별 조세지출 현황

전체 조세지출 항목 중 소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항목이 전체의 48.1%로 가장 많았고, 소득과세 관련 조세지출 항목은 전체의 46.5%로 소비과세와 소득과세 감면이 전체 조세지출 항목의 90% 이상을 차지

- 소비과세 중에서는 부가가치세 · 판매세 · 물품세 관련 감면 항목이 7,583건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
- 소득과세 중에서는 법인소득세 감면 항목이 5,273건으로 개인소득세 감면보다 많았음
- 재산과세 중에서는 부동산 등 고정자산에 대한 감면 항목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음

표 1 세원(Tax Base)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건, %)

세원구분	개별 세목						전체 조세지출
소득과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자본이득세	복수 (multiple)	기타	미기재/ 불명확	24,135 (100.0)
11,228 (46.5)	3,874 (34.5)	5,273 (47.0)	373 (3.3)	630 (5.6)	1,039 (9.3)	39 (0.3)	
소비과세	부가세·판매세· 물품세	관세	사용료	복수 (multiple)	기타	미기재/ 불명확	
11,606 (48.1)	7,583 (65.3)	2,063 (17.8)	336 (2.96)	539 (4.6)	997 (8.6)	88 (0.8)	
재산과세	유산/상속세	부동산 등	차량	복수 (multiple)	기타	미기재/ 불명확	
728 (3.0)	100 (13.7)	245 (33.7)	166 (22.8)	9 (1.2)	192 (26.4)	16 (2.2)	
기타	복수(multiple) + 미기재/불명확 +기타						
573 (2.4)							

자료: GTED databas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② 수혜자(Beneficiaries)별 조세지출 현황

GTED의 수혜자(Beneficiaries)는 기업, 가게, 종교단체, 국제/지역(International/Regional), 비영리·NGO 단체로 구분되며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항목이 9,554건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3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기업 다음으로는 가계에 대한 조세지출 항목이 6,057건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25.1%를 차지하였고, 수혜자 유형이 2개 이상의 복수(Multiple)인 조세지출 항목도 3,231건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13.4%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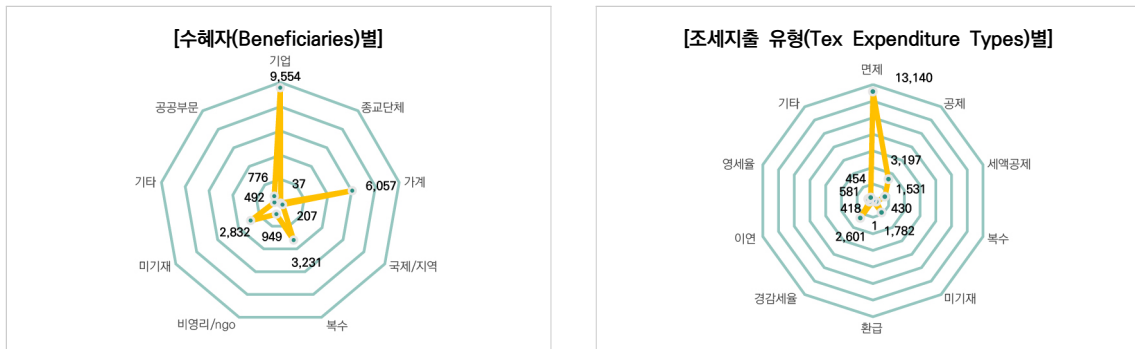
③ 조세지출 유형(Tax Expenditure Types)별 현황

GTED의 조세지출 항목 중 세금면제(Exemption) 항목은 13,140건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5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그 다음으로 소득공제(Deduction) 항목이 3,197건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13.2%를 차지하였고, 세액공제(Tax Credits) 항목은 1,531건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6.3%에 해당
- 소비과세에서 주로 활용되는 경감세율과 영세율의 활용도를 비교하면 경감세율 조세지출 항목이 2,601건(전체 조세지출의 10.8%)인 반면 영세율은 581건(2.4%)으로 경감세율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남

그림 2 수혜자 및 조세지출 유형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건)



자료: GTED databas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④ 조세지출 조항의 일몰 설정(Sunset) 현황

GTED의 조세지출 항목 중 일몰이 설정되었거나 한시적인 운용이 명시된 조항은 2,548건으로 전체의 10.6%에 해당하며, 일몰이 설정되지 않은 조항은 21,587건으로 대부분의 조세지출 항목에 일몰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⑤ 조세지출 정보공개 수준

GTED의 데이터베이스상 1990~2021년 기간 동안 조세지출 개별 항목별로 구체적인 수혜자 규모를 공개한 경험이 있는 국가는 26개국으로 집계되며 이중 OECD 국가는 13개국 수준

- 조세지출 개별 항목별 수혜자 규모를 집계한 경험이 있는 OECD 국가(13개국) : 그리스, 독일, 라트비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콜롬비아, 프랑스

4. 요약 및 시사점

전세계 조세지출 데이터베이스인 GTE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가별 소득 수준이 높은 고소득 국가의 GDP 대비 조세지출 비중은 5.7%인 반면 저소득국가는 2.7%로 조세지출의 활용 수준은 국가별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모습

- 2010~2021년 기간의 GDP 대비 조세지출액 평균(%): 고소득 국가 5.2, 저소득 국가 2.2

GTED에 수록된 조세지출 항목 24,135건을 분석한 결과 조세지출의 수혜자는 기업이 가장 많았고 세금면제 방식의 조세지출 항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한편, 일몰 등 한시적 운용이 명시된 항목은 전체의 10.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우리나라 또한 일몰 규정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비과세·감면 정비에 위해서는 일몰 규정의 설정 및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 재설계 등이 필요함

GTED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본 결과 1990년대 이후 조세지출 정보를 집계·공개하는 국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국가별 조세지출의 관리·감독 수준에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세지출 항목 및 법적 근거, 조세지출에 사용된 세원, 정책 목표, 수혜자, 개별 조항에 대한 감면액 추정치 등 세부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국가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소수에 불과함

GTED는 최초의 전세계 조세지출 데이터베이스로서 조세지출 관련 연구 및 토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지만, 조세지출 규모 등 주요 정보가 중앙정부에 한정하여 집계된다는 점과 국가별 기준 조세체계의 차이에 따른 조세지출 여부에 대한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 등은 GTED의 한계에 해당

- 데이터의 수집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집계됨에 따라 스위스·독일 등 지방정부 차원의 조세지출 활용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총량적 관점의 조세지출 파악은 제한적인 상황
- 특정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기준 조세체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조세지출로 분류하는 국가도 있는 반면 기준 조세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별도 조세지출로 집계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GTED는 이러한 비일관성을 조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해당 국가의 판단에 따라 집계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사적연금 세제 논의 동향

어 수 진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745)

1. 배경 및 목적

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요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으로 구분

-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다층적으로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 및 주택·농지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층에는 저소득층의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제도를 두고 있음

표 1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공무원 등
사적연금	3층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2층	퇴직연금(퇴직금)		
공적연금	1층	국민연금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0층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퇴직연금은 2005년 도입되었으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구분
- 개인연금은 1994년에 도입되었으며, 납입 및 수령 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연금저축과 납입 시에는 세제혜택이 없으나 수령 시 비과세되는 연금보험으로 구분

나. 사적연금 활성화 필요성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공적연금의 노후 소득대체율이 낮은 편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적연금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임¹⁾
- 그러나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20년 기준 22.4%이며²⁾, 평균 수급액은 2022년 말 기준 월 58만원³⁾에 불과한 등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 국민연금의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은 40%이나, 사각지대 및 짧은 가입기간(2022년 말 기준 평균 16.8년⁴⁾)으로 무연금·저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미흡하여 실질 소득대체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함
- 한편, 현재 사적연금의 경우 납입액 규모가 작고 연금수령보다 연금외수령의 비중이 커 노후 안정망 구축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 퇴직연금의 경우 2021년 말 적립금 규모가 전년 대비 15.7%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중도인출 및 해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이 약 13.3%로 추정되나⁵⁾, 소득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2021년에 수령이 시작된 계좌 중 연금수령 비중이 계좌 기준으로는 4.3%, 금액 기준으로는 34.3%에 불과함⁶⁾
 - ▶ 개인연금 중 연금저축의 경우 2021년 말 적립금 규모가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으나, 계약당 납입액 평균이 연 262만원, 계약당 수령액 평균이 연 295만원에 불과함⁷⁾

2. 우리나라의 연금 과세방식 및 현황⁸⁾

가.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납입단계와 운용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EET 방식을 취하고 있음

1) OECD, 「<https://stats.oecd.org>,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2) 보건복지부

3) 국회예산정책처,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I」, 2023

4) 국회예산정책처,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I」, 2023

5) 강성호(2023),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과 시사점」, 「KIRI 리포트 포커스」, 보험연구원

6)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퇴직연금 1년만에 40조원 증가, 총 적립금 295.6조원 달성”, 2022.4.

7)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 2022.4.

8) 이하에서 제시되는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고려하지 않은 국세에 해당하는 세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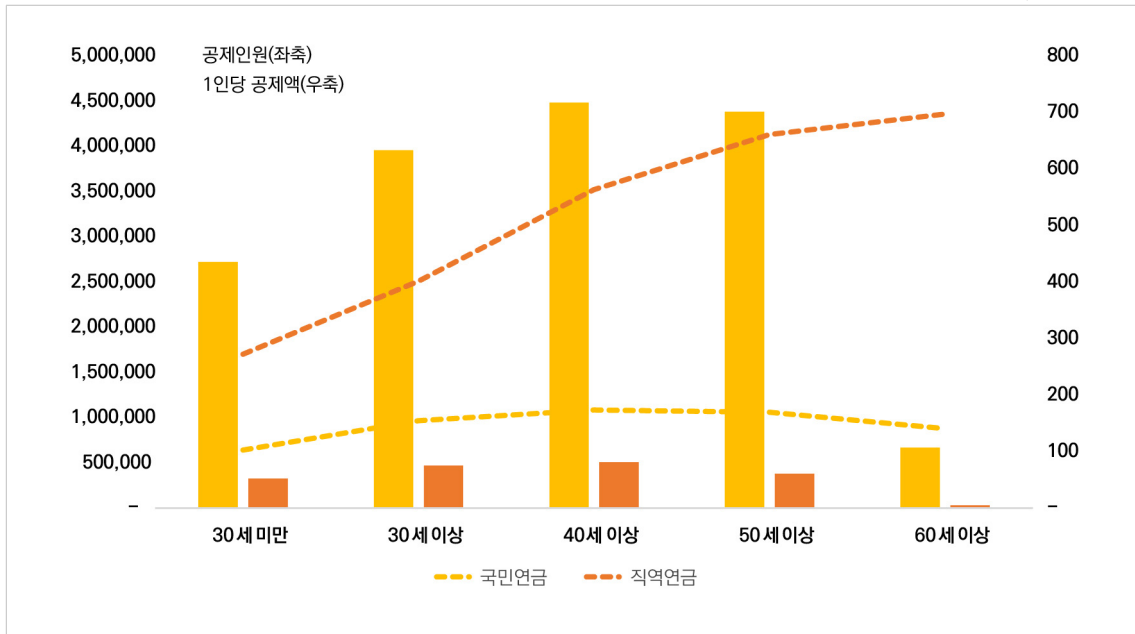
9) ‘납입-운용-수령’의 각 단계별로 ‘E’는 Exemption(면세), ‘T’는 Taxation(과세)을 의미함. 예를 들어, EET 방식의 경우 ‘납입단계 면세(E)-운용단계

(1) 납입단계

- 사용자 납입분에 대하여는 납입한 기여금 전액 손금산입 또는 필요경비 인정
-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소득세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51조의3]
 - ▶ 2021 귀속연도의 연령대별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모두 공제인원과 1인당 공제액이 40대까지는 점차 증가하고, 50대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한편, 공제인원은 국민연금이 직역연금에 비해 연령대별로 약 8~22배 많으나, 1인당 공제액은 직역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연령대별로 약 2.6~5.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 2021 귀속연도 연령대별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 현황

(단위: 명, 만원)



주: 각 수치는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 현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중복자의 보험료 공제 현황을 제외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및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운용수익 발생단계

- 이자, 배당금 등 적립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면세(E)-수령단계 과세(T)'임

(3) 수령단계

-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연금소득을 제외하고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과세¹⁰⁾하며, 퇴직연금(개인분) 및 연금저축 수령액이 1,200만원 초과 시에는 이를 합산하여 종합과세
 - *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보험료에 대해서 과세하고, 수령 시 비과세하는 방식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부터 비과세하고 연금 수령 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법 제20조의3제2항)
- (비과세 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¹¹⁾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장해유족연금·상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직무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비공무상 장해연금·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법 제12조제4호)
- (연금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 제외)에서 900만원 한도로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법 제47조의2)

표 2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 금액의 10%)

나. 사적연금

퇴직연금 사용자 납입분의 경우 실질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납입단계와 운용수익 발생단계에서 비과세하고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EET 방식을 취하며, 퇴직연금 개인 납입분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하여는 납입단계에서 세액공제하고, 운용수익 발생단계에서 비과세하며,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tET 방식¹²⁾을 취하고 있음

(1) 납입단계

- 퇴직연금 사용자 납입분의 경우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손금산입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퇴직금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될 시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과세이연(법 제146조제2항)
- 퇴직연금 개인 납입분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적용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900만원(연금저축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5%) 세액공제(법 제59조의3)

10) 공적연금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 지급 시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공적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 불필요

11)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12) 개인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경우에는 납입액 일부에 대해서 과세될 수 있어 완전한 면세가 아니므로 "E"가 아닌 "t"로 표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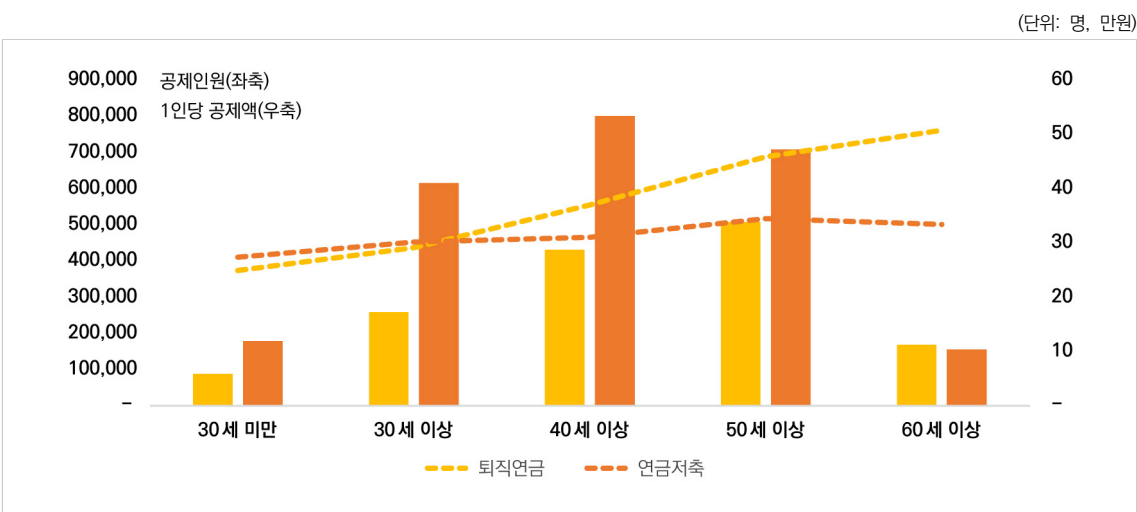
표 3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공제 개정연혁

구 분	~2010	2011	2014	2015	2017	2021	2023
방식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 한도 (만원)	300	400	400	700 (연금저축 400)	700 (연금저축 400.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총급여 1.2억원 이상 300)	50세 미만 700 (연금저축 400), 50세 이상 900(연금저축 600)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총급여 1.2억원 이상 연금저축 300	900 (연금저축 600)
공제율(%)	-		12	12 (단,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12 (단,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주: 각 연도는 시행연도를 의미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1 귀속연도의 연령대별 연금계좌 세액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퇴직연금의 경우 공제인원은 50대까지, 1인당 공제액은 60대까지 점차 증가하며, 연금저축의 경우 공제인원은 40대까지, 1인당 공제액은 50대까 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한편, 공제인원은 주로 연금저축이 퇴직연금에 비해 많으나, 1인당 공제액 은 주로 퇴직연금이 연금저축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 2021 귀속연도 연령대별 연금계좌 세액공제 현황



주: 각 수치는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현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중복자의 세액공제 현황을 제외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및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운용수익 발생단계

- 이자, 배당금 등 적립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3) 수령단계

표 4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수령 시 과세방법

구 분		과세방법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이연퇴직소득(사용자 납입분 퇴직연금)		연금소득(분리과세)	퇴직소득(분류과세)
(개인 납입분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	연금소득(분리과세)	
	그 밖의 경우	연금소득(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기타소득(분리과세)

-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¹³⁾ 시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연금외수령 시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
 - ▶ 연금수령: 연금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¹⁴⁾의 70%, 10년 초과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로 연금소득 분리과세 (법 제14조제3항제9호가목 및 제129조제1항제5호의3)
 - * (예시) 수령연차 10년 이하로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액 =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수령액 ÷ 이연퇴직소득)] × 70%
 - ▶ 연금외수령: 이연퇴직소득세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함) 제202조의2)
 - ▶ 2021 귀속연도의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계좌 원천징수 현황에 따르면 연금외수령 대비 연금수령 비중은 인원 기준 5.8%, 지급액 기준 4.9%에 불과하나, 연금외수령을 선택한 자의 대부분(99.7%)은 지급액이 연 1백만원 이하임

13)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① 55세 이후 인출 개시, ②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후 인출, ③ 연간 일정 한도(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 이하로 인출의 요건 충족

14)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 연금소득을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소득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연금외수령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제2항)

표 5 2021 귀속연도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계좌 원천징수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간 지급액 규모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인원	지급액	소득세(원천징수분)	인원	지급액	소득세(원천징수분)
합 계	97,211	1,318,473	90,002	1,672,092	27,074,145	695,364
1백만 이하	32,988	18,205	584	1,667,603	26,634,576	658,146
2백만 이하	16,475	23,694	961	164	4,328	203
3백만 이하	6,392	15,616	765	101	2,038	103
4백만 이하	3,820	13,234	664	82	2,877	150
5백만 이하	2,756	12,388	593	85	2,394	126
7백만 이하	4,710	28,029	1,209	175	6,031	232
1천만 이하	5,382	45,427	1,640	226	9,309	431
1.2천만 이하	3,694	40,702	1,518	147	8,211	442
2천만 이하	7,076	108,680	4,285	781	46,715	2,320
2천만 초과	13,918	1,012,498	77,782	2,728	357,666	33,211

자료: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인 납입액 및 운용수익) 의료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그 밖의 경우 연금수령 여부 및 수령액 규모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 부득이한 사유 인출: 근로자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라 3~5%¹⁵⁾의 세율로 연금소득 분리과세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 및 제129조제1항제5호의2)
 - ▶ 연금수령: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라 3~5%(종신수령 시 4%이며, 더 낮은 세율 적용)의 세율로 연금소득 분리과세하며, 연 1,200만원 초과 시 15%의 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법 제14조제3항제9호다목, 제64조의4 및 제129조제1항제5호의2)
 - ▶ 연금외수령: 15%의 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법 제14조제3항제8호나목, 제64조의3 및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
 - ▶ 2021 귀속연도의 개인 납입액 및 운용수익에 대한 연금계좌 원천징수 현황에 따르면 연금외수령 대비 연금수령 비중은 인원 기준 49.1%, 지급액 기준 85.6%이며, 연금외수령을 선택한 자의 대부분(99.3%)은 지급액이 연 1백만원 이하임

15)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표 6 2021 귀속연도 개인 납입액 및 운용수익에 대한 연금계좌 원천징수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지급액 규모	연금수령 및 부득이한 사유 인출			연금외수령		
	인원	지급액	소득세(원천징수분)	인원	지급액	소득세(원천징수분)
합 계	579,837	2,305,458	111,898	1,180,718	2,693,924	404,024
1백만 이하	112,680	56,620	2,663	1,173,028	2,611,239	391,621
2백만 이하	101,854	157,114	7,237	1,006	10,225	1,534
3백만 이하	88,030	218,080	10,296	1,101	11,313	1,697
4백만 이하	76,280	265,823	12,785	683	6,911	1,037
5백만 이하	43,720	193,047	9,450	392	3,257	489
7백만 이하	50,981	310,234	15,237	743	6,927	1,039
1천만 이하	77,578	621,408	30,568	955	11,290	1,693
1.2천만 이하	14,527	158,668	7,828	510	7,830	1,174
2천만 이하	7,288	103,942	5,085	920	10,788	1,618
2천만 초과	6,899	220,523	10,748	1,380	14,144	2,122

자료: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참고] 연금저축 및 연금보험 과세방식 비교

개인연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으로서 납입 및 수령 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연금저축(세제비적격)과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세 면제 요건¹⁶⁾을 충족하는 보험상품으로서 납입 시 세제혜택은 없으나, 수령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세제비적격)으로 구분됨

구 분	연금저축	연금보험
납입단계 세제혜택	600만원 한도의 12/15% 세액공제	-
수령단계 세제혜택	저율(3~5%)의 연금소득세	이자소득세 비과세
세제혜택 요건 미충족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15%) 부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14%) 부과

16)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① 즉시연금의 경우 총납입액 1억원 이하로서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② 장기저축보험은 월 150만원 이하로 5년 이상 납입하면서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③ 종신연금보험은 조건 없이 가능함

3. 해외 주요국의 사적연금 과세 동향

가. 국가별 과세체계

다른 해외 국가들은 사적연금에 대하여 각기 상이한 방식으로 과세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표 7 OECD 국가별 사적연금 과세체계

구 분			국 가
납입	운용	수령	
E	E	T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미국,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영국,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칠레, 캐나다, 폴란드, 핀란드
T	E	E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이스라엘, 체코, 헝가리
T	E	T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한국
E	T	T	그리스, 덴마크, 이탈리아, 스웨덴
T	T	E	뉴질랜드, 튀르키예, 호주
E	E	E	멕시코, 슬로바키아

주: 각 단계별로 "E"는 Exemption(면세), "T"는 Taxation(과세)을 의미함. 한편, OECD는 납입단계에서 납입액 전체에 대하여 면세하는 경우만을 "E"로 분류하고,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경우에는 납입액 일부에 대해서 과세될 수 있으므로 "T"로 분류함

자료: OECD(2019), 「Financial incentives for funded private pension plans」

- OECD 국가들의 사적연금에 대한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EET 방식을 취하는 국가가 상당수임
 - (독일) 리스터연금의 경우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고,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며, 연금수령 시 과세
 - (미국) 전통적(Traditional) 401k 및 IRA의 경우 납입액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¹⁷⁾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며, 연금수령 시 과세¹⁸⁾
- 우리나라와 같이 TET 방식을 취하는 국가들의 개인 납입분에 대한 세제혜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¹⁹⁾
 - (오스트리아) 개인 납입액의 25%를 소득공제하였으나, 2016년 이후 신규로 계약된 연금계좌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함(2016년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소득공제 유지)
 - (포르투갈) 35세 미만 400유로, 35세 이상 50세 미만 350유로, 50세 이상 300유로를 한도로 개인 납입액의 20%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 (프랑스) 전년도 총수입의 10%를 한도(단, 연간 사회보장 상한선의 10% 이상 80% 미만으로 제한)로 소득공제 적용

17) 2023년 기준 납입한도는 401k의 경우 \$22,500(50세 이상자는 \$30,000), IRA의 경우 \$6,500(50세 이상자는 \$7,500)임

18) 다만, Roth 401k 및 IRA의 경우 납입액에 대해 과세하나 운용수익과 연금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TEE 방식임

19) OECD(2019), 「Financial incentives for funded private pension plans」

나. 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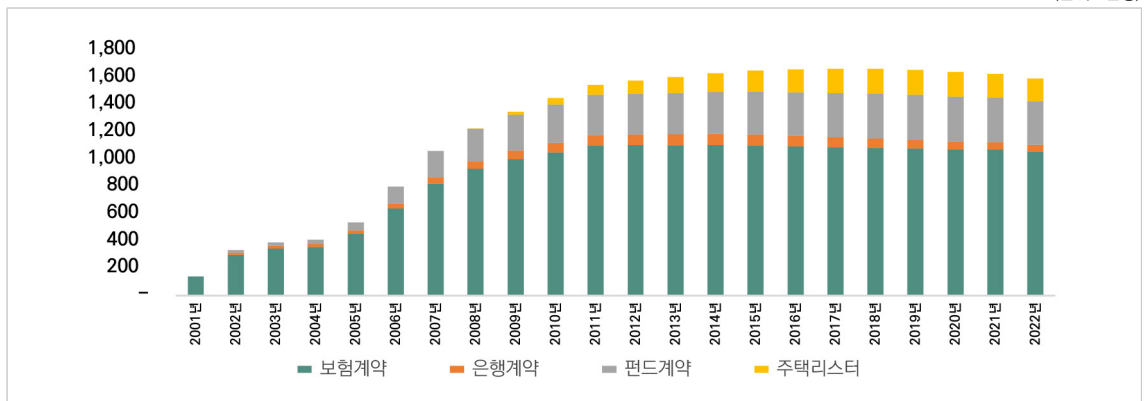
연금개혁을 추진한 해외 주요국들은 공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세제혜택 강화 및 정부보조금 지원 등 사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음

(1) 독일: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

- 독일은 2001년 연금개혁으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08년 50.5%에서 2023년 46.2%까지 삭감함에 따라 공적연금 감소분을 보충하고 사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해 리스터연금 도입
 - ▶ (가입방식) 임의가입 형태이나, 그 대상은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군인, 공무원 및 근로자와 그 배우자, 공적연금 당연가입 대상인 자영업자 등으로 한정
 - ▶ (보험료) 연간 총소득의 4%(최대 2,100유로)를 보험료로 납입하여야 하나, 이 중 정부가 기본보조금 및 자녀보조금을 지원하므로, 실질적으로 전체 보험료에서 정부보조금을 뺀 금액이 본인부담금에 해당함. 다만, 정부보조금이 보험료인 연간 총소득의 4%를 초과할 경우 가입자는 최소 납입액으로서 60유로 납입
 - * 기본보조금: 175유로 / 자녀보조금: 자녀 1인당 185유로(2008년 이후 생의 경우 1인당 300유로)
 - ▶ (세제혜택) 보조금을 포함한 리스터연금 가입액 전체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보조금과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공제로 감면받는 세액과 보조금과의 차액만큼만 공제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가입자는 보조금과 소득공제 혜택 중 큰 것을 받음
 - ▶ (도입효과) 도입 이후 가입자 수는 빠르게 성장하여 1,600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한계) 리스터연금은 운용수익율이 매년 4%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공적연금 감소분을 충당하여 기존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제도 설계 당시에 비해 낮은 수익률로 인해 소득대체율 보전이 어려우며, 운용 수수료가 높다는 비판이 있음

그림 3 리스터연금 가입자 수 추이

(단위: 만명)



자료: 독일 노동사회부

(2) 미국: 예금자 세액공제(Saver's Credit)

- 미국은 저소득층의 은퇴자금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401k, IRA 등²⁰⁾ 가입자에게 소득 수준 및 가구 구성에 따라 최대 \$2,000(부부공동신고의 경우 \$4,000) 한도로 납입액의 10%, 20%, 50%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 다만, 이는 비환급형 세액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로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면세자의 경우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표 8 소득 수준 및 가구 구성에 따른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	부부 공동신고	세대주	기타
50%	\$43,500 이하	\$32,625 이하	\$21,750
20%	\$43,501~\$47,500	\$32,626~\$35,625	\$21,751~\$23,750
10%	\$47,501~\$73,000	\$35,626~\$54,750	\$23,751~\$36,500
0%	\$73,000 초과	\$54,750 초과	\$36,500 초과

주: 기타는 미혼, 부부 개별신고 또는 미망인을 의미함

자료: IRS(2023)

(3) 호주: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은 의무가입 형태의 DC형 퇴직연금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 임금의 10.5%²¹⁾를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 사용자 납입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한계 소득세율과는 관계없이 15%의 세율로 과세되나, 과세소득 37,000 AUD 이하인 경우 납입액에 대하여 15%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납입액에 대해 비과세하는 효과 발생
- 또한, 개인이 추가적으로 납입할 경우 저율과세 및 보조금 혜택 제공
 - (저율과세) 추가납입액에 대하여 27,500 AUD까지 15% 저율과세. 단, 연소득이 250,000 AUD를 초과하는 자의 경우 납입액의 15% 추가 과세²²⁾
 - (보조금) 연소득 54,837 AUD 이하인 경우 추가납입액에 대하여 매칭하여 최대 500 AUD의 보조금 지급

20) 전통적(Traditional) 또는 Roth 방식에 관계 없이 적용

21) 사용자의 부담비율은 2025년 7월까지 점진적으로 12%로 상향될 예정임

22) 호주는 사적연금에 대하여 TTE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이므로, 15%로 저율과세 시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받는 효과가 있음. 한편,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세 한계세율이 높아 슈퍼애뉴에이션 납입에 따른 세제혜택 규모가 커지므로, 저소득층 및 중산층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소득이 250,000 AUD를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것임

표 9 추가납입액 규모에 따른 보조금 지급액 예시

(단위: AUD)

연소득 \ 추가납입액	1,000	800	500	200
39,837 이하	500	400	250	100
39,837~42,837	400	400	250	100
42,837~45,837	300	300	250	100
45,837~51,837	200	200	200	100
51,837~54,837	00	100	100	100

자료: 호주 국세청

- 기여금과 투자수익은 은퇴한 경우에는 60세부터²³⁾, 은퇴 여부와 관계 없이 65세부터 인출할 수 있음. 한편, 호주에서는 연금수령이 강제되지 않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OECD 평균(14.1%)보다 높은 노인빈곤율(23.7%)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4.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연금세제 논의 동향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납입액 규모를 증가시키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장기적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연금세제 운용방식과 관련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가. 납입액 증가 촉진

- 현재 사적연금 납입 촉진을 위해 연 900만원(연금저축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노후소득 준비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에 일부 한계가 있음
 - ▶ (고소득층) 소득세율이 세액공제율보다 높은 경우 납입원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납입단계와 수령단계 모두에서 중복과세되는 문제가 발생
 - * 예를 들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원 초과하여 한계 소득세율이 24%인 경우, 납입액에 대하여 12% 세액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일정 부분 과세됨
 - ▶ (저소득층) 소득규모가 작아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가 유인책이 되지 못하며, 2014년 세제혜택의 역진성 완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 강화를 위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납입액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²⁴⁾

23) 은퇴한 경우 연금을 인출할 수 있는 연령을 2015년부터 2024년까지 60세로 단계적으로 인상(2023년 기준 59세)

24) 정원석(2018), 「연금저축 세제혜택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연금저축 납입행태 변화분석」, 『보험금융연구』

- OECD는 우리나라의 연금계좌 세제혜택 수준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므로 세액공제를 상향 등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연금납입을 장려하기 위해 독일의 리스터연금과 같이 보조금 또는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등 금융 인센티브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음²⁵⁾
 - ▶ 또한, 장기적으로는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등 완전한 EET 방식으로 전환하여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연금세제를 단순화할 것을 권고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세액공제 방식의 저소득층 유인 효과 미비, 이중과세 문제 해소, 국제적 연금과세 흐름에의 부합 및 연금세제 단순화를 위해서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과²⁶⁾, 세제혜택 상향 조정의 효과는 중산층 이상에게 주로 귀속되므로 저소득층을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또는 보조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²⁷⁾ 등이 제시되고 있음

나. 장기 연금 수령 유도

- 현행 연금세제 체계에서는 사적연금을 장기적으로 연금수령할 유인이 적다는 의견이 있음
 - ▶ 이연퇴직소득의 경우 2015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일시금 수령에 비해 세부담을 30~40%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이연퇴직소득 규모가 크지 않아 세부담 감면혜택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크지 않음
 - * 2021년에 수령 개시된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수령 계좌 수의 비중은 4.3%에 불과하나, 연금외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약 1,615만원으로 연금수령 계좌 평균 수령액 1억 8,858만원의 8.6%로서 적립금 규모가 큰 사람은 연금수령을, 적립금 규모가 작은 사람은 연금외수령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0 2021년 퇴직연금 수령 현황

구 분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합 계
계좌수(건)	16,984 (4.3)	380,286 (95.7)	397,270 (100.0)
금액(억원)	32,028 (34.3)	61,398 (65.7)	93,426 (100.0)
계좌당 금액(만원)	18,858	1,615	2,352

주: 괄호 안은 전체 수령 계좌 및 금액 대비 비중(%)

자료: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퇴직연금 1년만에 40조원 증가, 총 적립금 295.6조원 달성", 2022.4.17.

- ▶ 개인납입분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나, 연금수령 시에도 연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리과세 세율이 15%로서 연금수령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25) 「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 Korea」, OECD, 2022

26) 정유석(2018), 「연금보험료 공제방식별 세부담의 차이와 개선방안」, 「국제회계연구」 제81집

27) 이상엽·윤성주(2018), 「연금저축 과세특례제도의 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정원석(2022), 「세제변화에 따른 연금저축과 IRP 납입행태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33권 제4호

- 이와 관련하여 연금수령 시 퇴직연금 원천징수세율 감면율을 상향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²⁸⁾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그 밖에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수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²⁹⁾
- 또한, 연금계좌의 저율·분리과세 한도(현행 연 1,200만원)를 상향하는 내용의 다수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며, 개인연금 가입자가 가입시점에 의무 연금수령 기간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기간에 따라 세제혜택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³⁰⁾
 - ▶ 양경숙의원안(의안번호 2121164) 및 김태년의원안(의안번호 2121859): 연 1,400만원
 - ▶ 김희곤의원안(의안번호 2119716) 및 이인선의의원안(의안번호 2121204): 연 2,400만원

[참고] 연금계좌 저율·분리과세 한도 상향(1,200만원→1,400만원)에 따른 세수효과 예시

- (시나리오 구성) ① 사적연금은 납세자가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각 경우를 구분하였으며, ② 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에 따른 세액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i)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ii)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도 있어 종합소득금액이 큰 경우로 구분
- (공통 가정) ① 연금소득자의 연령은 70세 미만이고,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령액은 연 700만원³¹⁾, 연금계좌 수령액은 연 1,400만원으로, ②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 기본공제, 연금소득공제 및 표준세액공제(7만원)만 적용
- (시나리오 1)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로서 현재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68만원) 대비 +2만원,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210만원) 대비 △140만원 세액 변동

(단위: 만원)

구 분			총연금액 [A]	연금소득 공제[B]	연금소득 금액 [C=A-B]	종합소득 과세표준	(한계) 세율	산출세액	결정세액	최종 납부세액
현 행	종합과세	공적	2,100	700	1,400	1,250	6%	75	68	68
		사적								
	분리과세	공적	700	490	210	60	6%	3.6	0	210
		사적	1,400	-	1,400	-	15%	210	210	
개 정 안		공적	700	490	210	60	6%	3.6	0	70
		사적	1,400	-	1,400	-	5%	70	70	

주: 1)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 기본공제 150만원
2)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표준세액공제 7만원 적용(종합과세 되는 경우)

28) 김희곤의원안(의안번호 2119716)

29) 강성호·안소영(2020), 「주요국의 사적연금 일시금에 대한 과세 강화와 시사점」, 『Kiri 고령화리뷰 Monthly 제31호』, 보험연구원

30) 김세중·정유미(2017),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보험연구원

31) 2022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은 58.6만원으로서 연 단위로 환산하면 703만원이므로, 편의상 연 700만원으로 가정. 또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으로서 과세제외금액은 없다고 전제

- (시나리오 2) 연금소득 외 연 6,000만원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현재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1,157만원) 대비 △215.6만원,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1,081.4만원) 대비 △140만원 세액 변동

(단위: 만원)

구 분			총연금액 [A]	연금소득 공제[B]	연금소득 금액 [C=A-B]	종합소득 과세표준	(한계) 세율	산출세액	결정세액	최종 납부세액
현 행	종합과세	공적	2,100	700	1,400	7,250	24%	1,164	1,157	1,157
		사적								
	분리과세	공적	700	490	210	6,060	24%	878.4	871.4	1,081.4
		사적	1,400	-	1,400	-	15%	210	210	
개정안		공적	700	490	210	6,060	24%	878.4	871.4	941.4
		사적	1,400	-	1,400	-	5%	70	70	

주: 1)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 기본공제 150만원

2)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표준세액공제 7만원 적용(종합과세 되는 경우)

5. 결 어

최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보완 수단으로서 사적연금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최근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 연금개혁을 논의함에 있어서 공적연금 개혁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사적연금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OECD는 우리나라의 연금시스템 변화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거나 주요 위험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 없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향후 연금개혁을 위한 기초로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보완성을 고려하고 연금시스템의 일관성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³²⁾

기존에 사적연금 개혁을 시도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연금 납입을 촉진하고,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 운용방식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독일, 미국, 호주 등과 같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추가적으로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연금 납입액 규모가 크더라도 연금수령 비율이 낮을 경우 중국적으로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미미하므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각종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2) 「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 Korea」, OECD, 2022

양도소득세액 결정요인의 세수증감 기여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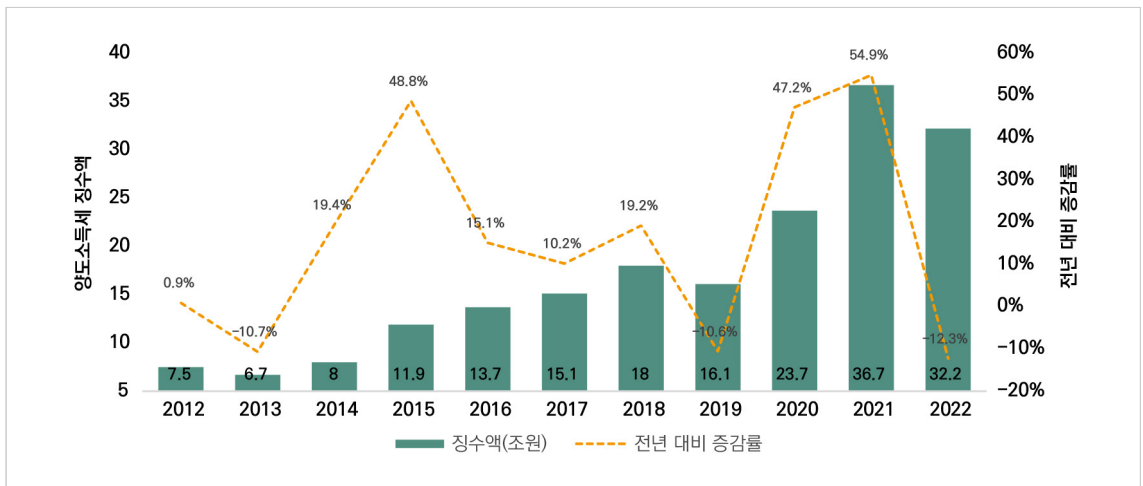
문 석 회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69)

1. 서론

자산시장 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최근 양도소득세수의 변동성도 확대되는 추세

- 2012~2022년 양도소득세 징수액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Delta 12.3\% \sim 54.9\%$ 로 큰 변동폭 시현
 - ▶ 특히, 최근에는 2019년 16.1조원에서 2021년 36.7조원으로 급격한 세수의 상승이 있었으나, 2022년은 전년 대비 4.5조원($\Delta 12.3\%$) 감소한 32.2조원을 기록하는 등 하락 추세로 전환
 - ▶ 과세대상 자산의 보유기간 동안 누적하여 발생한 이익(소득)에 일시적으로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특성상, 양도시점의 자산 거래량 및 가격 등 요인에 영향을 받아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

그림 1 2012~2022년 양도소득세 징수액 및 전년 대비 증감률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최근 양도소득세수 증가 및 변동성 확대 원인 파악을 위해 양도소득세수를 4가지 결정요인으로 분해하고 각 요인이 세수증감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를 자산유형별로 분석하고자 함

- 세수 결정요인을 신고건수 및 건당 양도차익, 과세표준 비율, 실효세율의 4개 요인으로 분해
 - ▶ 각 요인은 과세대상 자산의 거래 및 가격 증감 추이, 제도적 요인 등을 반영하고 있어 해당 요인의 시점별, 자산유형별 변화를 통해 세수 증감의 원인을 파악 가능
- 국세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자산유형 및 자산유형별 징수액 증감분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분석
 -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및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별도 제공받은 개인별 납세자료 중심으로 분석 수행

2. 분석의 개요

양도소득세수 결정요인을 4개로 분해하고, 각 요인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바탕으로 기여도 분석

- (결정요인 분해) 결정세액 산식을 활용하여 신고건수 및 건당 양도차익, 과세표준 비율, 실효세율로 분해

〈양도소득세수 결정요인 분해 산식 및 정의〉

$$\text{결정세액} = \text{신고건수} \times \frac{\text{양도차익}}{\text{신고건수}} \times \frac{\text{과세표준}}{\text{양도차익}} \times \frac{\text{결정세액}}{\text{과세표준}}$$

신고건수 = 연도별 자산 양도 신고건수

건당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신고건수

과세표준 비율 = 과세표준(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공제 등) ÷ 양도차익

실효세율 =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 등) ÷ 과세표준

- ▶ (신고건수) 과세 대상 유형과 양도시점에 따라 신고기한¹⁾이 정해진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특성을 고려할 때, 신고건수 변화는 과세대상 자산 거래량의 시점별 증감과 연관을 가지며 양도소득세수 결정요인 중 수량 관련 요인으로 해석 가능
- ▶ (건당 양도차익) 시점별 전체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차감)을 신고건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건당 양도차익은 과세대상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효과 확인 가능
- ▶ (과세표준 비율) 양도차익 중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비율을 의미하며, 과세표준 산출 이전 단계에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등 차감 효과를 반영
- ▶ (실효세율) 과세표준에서 결정세액(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²⁾ 차감)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양도차익 규모에 따른 누진세율 또는 정책목적상 부과되는 중과세율 등 제도적 요인에 영향

1) (예정신고) 부동산분(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은 양도일이 발생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부담부중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주식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확정신고) 복수의 양도건이 있을 시 그 다음해 5.1.~5.31.까지

2) (부동산분) 전자신고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주식분) 외국납부세액공제

- (요인별 증감률 및 기여도 분석방법) 위에서 제시한 4개 요인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수 증감 기여도를 산출
 - ▶ (세수 증감률 및 요인별 증감률) 로그차분을 이용하여 세수 증감률 및 각 요인의 전년 대비 증감률 산출
 - ▶ (요인별 세수 증감 기여도) 연도별 세수 증감률에 위에서 구한 요인별 증감률을 적용하여 세수 증감에 있어 요인별 기여도를 산출

세수의 변동요인 및 기여도 분석은 전체 양도자산 및 자산유형(토지, 건물, 주식)별로 구분하여 실시

- (전체 자산) 시점별 전체 양도소득세수에 미치는 요인별 영향 분석
 - ▶ (자료) 「국세통계연보」 연도별 징수액 예정신고 자료³⁾ 활용
 - * 자산유형별 분석은 자료 특성 등 사유로 예정신고만 활용하며, 국세통계연보 또한 예정신고를 대상으로 분석 수행
 - ▶ (분석기간) 2015~2021년(기여도 분석은 2016~2021년의 6개년)
- (자산유형별 분석) 과세대상 자산별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분석 수행
 - ▶ (자산유형)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하 '건물등'), 주식의 3가지 유형에 따른 기여도 분석
 - ▶ (자료) 부동산분(토지, 건물등)은 국세통계센터에서 표본추출 및 반출한 예정신고 기반 개인별 납세자료, 주식분은 「국세통계연보」 양도소득세 주식분 예정신고 자료 활용
 - * 주식분을 제외한 부동산(토지, 건물등) 등 자산유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정보(결정세액 도출과정 중 양도소득금액까지)만 공개하므로, 부동산의 세부유형별 분석은 표본자료 활용
 - ** 한편 건물 등 자산유형별 통계자료의 집계기준이 2018년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문제(상세 내용은 후술)가 있으므로 기여도 분석에 서는 고가주택을 분석대상에서 제외
 - ▶ (분석기간) 귀속연도 2015~2021년(기여도 분석결과는 2016~2021년의 6개년)⁴⁾

한편 분석에 활용하는 자료상 제약과 이에 기반한 결과 해석에 있어 한계를 유념할 필요

- (시점별 상이한 국세청 자료 처리기준)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청 제공 자료 중 고가주택 등 자료의 처리 방식이 2018년을 기준으로 달라지므로, 전체 양도소득세 및 자산유형별 분석은 방식을 달리 적용
 - ▶ (고가주택 등 자료 처리방법의 변경) 2018년 이전에는 자산유형별 예정신고 작성 시 과세미달 및 비과세는 제외했으나, 2018년 이후는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분) 등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작성에 있어 비과세분의 양도차익은 제외하고 과세표준은 양도차손을 반영하는 것으로 처리기준 변경

3) 귀속연도 2011~2021년 전체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중 예정신고액의 평균 비중은 97% 가량이며, 분해 산식에 의한 추정세액과 실제 예정신고액간 오차는 평균 0.1% 수준

4) 다만 주식분은 세액 정보가 제공되는 2016년부터 분석하므로 기여도 분석결과는 2017~2021년의 5개년. 한편 요인별 분석을 위해서 주식분 세액의 과세 표준 및 감면세액 정보가 필요한데, 「국세통계연보」 주식분 예정신고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시점(2016~2017년)에 대해서는 결정세액에 비례한 2018~2021년 과세표준 비율 평균(98.9%)을 적용한 추정치 사용

- ▶ (분석대상 범위 차등) 전체 자산에 대한 분석은 「국세통계연보」가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되 2018년 이전과 이후 분석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으므로 2018년 이후를 중점 분석하고, 자산유형별 분석은 개인별 납세자료를 활용하여 고가주택 정보만 별도 추출 및 이를 제외한 세수증감의 기여도 분석
- (표본추출자료의 한계) 자산유형별 개인별 납세자료는 표본추출 및 개인정보 식별 가능성 배제 처리 과정을 거쳤으므로 실제 양도 관련 정보에 기반한 분석결과와 차이 발생 가능
 - ▶ (자료 추출) 예정신고 중 단일신고건⁵⁾에 대해 양도 신고건수 기준 10%로 층화표본추출
 - ▶ (분석 제외 대상) 납세자 식별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관측치⁶⁾, 기타 유형 및 자산 소재지 '미상'(외국인 등)으로 기재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
- (결과 해석에 있어 유의사항) 양도소득세수 결정요인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므로, 상기 방법을 따른 분석은 각 요인의 순효과 측정(partialling out)에 있어 요인간 내생성 등으로 인해 한계를 가짐

3. 양도소득세 증감의 추이

가. 양도소득세수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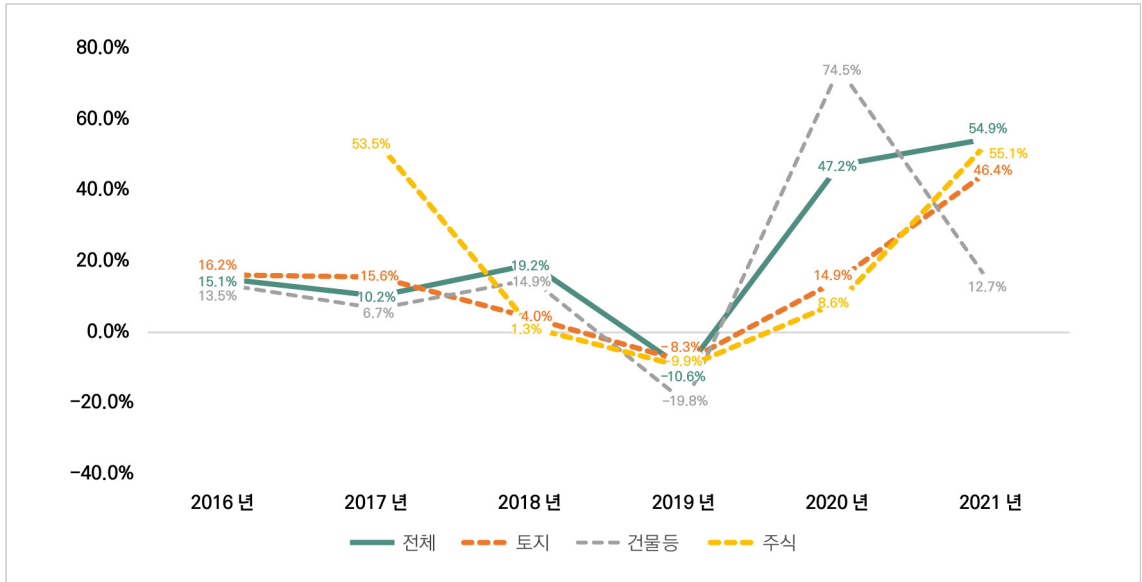
양도소득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2020년에는 건물등 양도소득세수가 커지면서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토지 및 주식 또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며 2021년의 지속적인 세수 증가를 견인

- (토지) 지가상승 및 거래량 회복으로 전년 대비 세수 증가율은 2020년 14.9%, 2021년 46.4% 등 상승 추세
- (건물등) 주택 등 과세대상 자산 거래량 및 가격상승에 힘입어 2020년은 전년 대비 74.5% 증가했으며, 2021년은 자산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누적된 가격 상승효과에 힘입어 전년 대비 12.7% 상승
- (주식)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이며, 2021년 세수는 전년 대비 55.1% 증가

5) 예정신고 중 복수신고건 및 확정신고 자료는 통계센터 자료 표본처리 및 반출 결과의 품질 문제로 분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확정신고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함에 따라, 파생상품 및 다주택자 관련 납세자료 이용에 제약 발생

6) 가령 지역과 자산유형별 조합 분류에 대해 해당 관측치가 5개 이하일 경우, 국세청은 해당 관측치를 제외한 합계액 반출만 허용

그림 2 자산유형별 결정세액의 전년 대비 증감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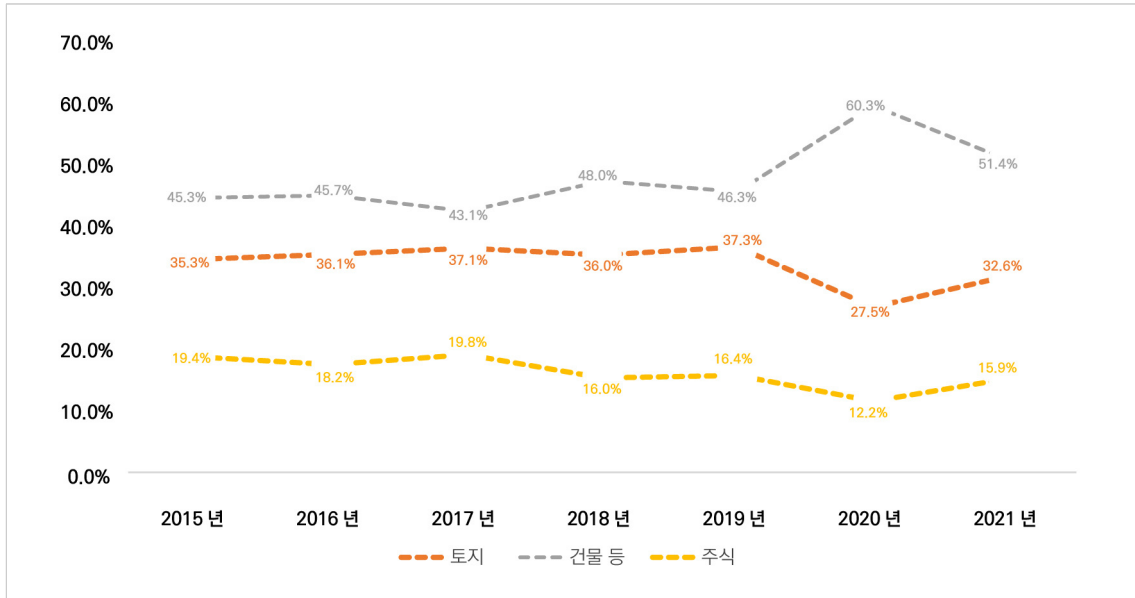


주. 1. 전체 자산의 세액 증감률은 징수액(예정+확정신고) 기준
 2. 고가주택을 제외했으며 예정신고 중 단일신고건에 한해 표본추출 및 기타 반출 조치를 거쳐 가공된 자료를 활용해 추정된 결과
 3. 주식분은 자산건수 기준이고 세액정보가 2016년부터 공개되므로 증감률은 2017년부터 산출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예정신고 및 국세통계센터 제공 개인별 납세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개인별 납세자료를 활용하여 자산유형별 양도소득세수의 비중을 분석하면, 건물등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특히 양도소득세수가 급격히 증가한 2020년 이후에는 건물등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

- (건물등) 2019년까지 평균 비중은 45.7% 수준이었으나 주택 가격 및 거래량의 동반 상승으로 2020년 60.3% 까지 급증하였고, 2021년에는 2020년보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51.4%로 하락(7년 평균 46.8%)
- (토지분) 2019년까지 35~37% 정도 비중을 유지했으나, 2020년 건물등의 세액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아졌지만, 2021년 토지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세액 비중 다소 회복(7년 평균 34.6%)
 ► 다만 건물등에 비해 토지분 세액 비중은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작은 편
- (주식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0년 12.2%로 최저치 기록 후 2021년 반등

그림 3 자산유형별 세액 비중의 연도별 추이



- 주. 1. 자산유형별 세액의 합계에서 각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건물등은 고가주택을 포함
 2. 예정신고 중 단일신고건에 한해 표본추출 및 기타 반출 조치를 거쳐 가공된 자료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이므로 해석에 유의 필요
 3. 가중치 등을 적용하여 추출한 표본자료를 이용한 결과이므로 결정세액 규모는 미공개

자료: 국세통계센터 제공 개인별 납세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양도소득세수 결정요인의 시점별 주요 추이

(신고건수) 전체 자산 기준 2020년 전년 대비 41.7% 급증한 85.4만건 이후 2021년 87.5만건으로 최고치

- (토지) 2019년 이후 토지거래 회복 등에 힘입어 신고건수 증감률은 2021년 21.6%까지 상승
- (건물등) 토지에 비해 신고건수 증감 변동폭이 큰 수준이며 주택 거래량 증감 추이를 따르는 경향
 - ▶ 주택 매매거래량이 급증⁷⁾한 2020년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71.7% 상승했으나 거래량이 감소⁸⁾한 2019년은 전년 대비 △21.6%p로 세수 증가폭 둔화에 기여
- (주식) 주식거래량 증감에 따라 자산건수⁹⁾ 변동도 크게 나타남
 - ▶ 주식거래 급증¹⁰⁾시기인 2020~2021년에 자산건수 증감률 또한 크게 상승했으며 2020년에는 분석기간 중 최고 수치(55.2%) 기록

7) (주택 매매·분양권 전매) 2020년 140만호(전년 대비 +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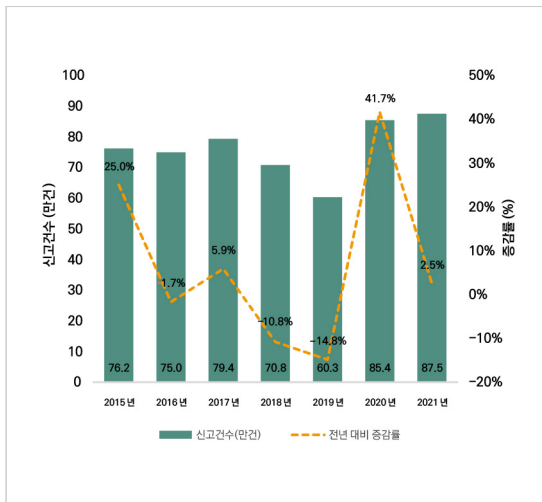
8) (주택 매매·분양권 전매) 2019년 90.7만호(전년 대비 △7.9%)

9) 주식분 세액정보는 자산건수(number of assets) 기준으로 공개되므로 해당 지표를 신고건수 대신 사용

10) (KRX 상장주식 월별 누적 거래대금 전년 동월 대비 변화율) 2020년 2월 41.3%, 8월 125.2%, 2021년 2월 173.4%, 8월 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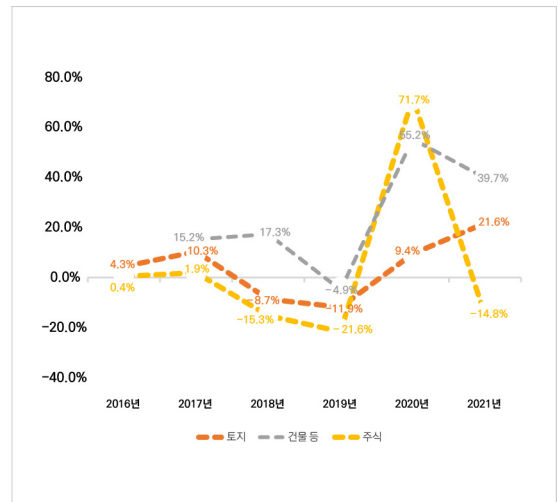
- ▶ 자산건수 증가에는 대주주의 보유액 기준을 하향하여 주식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¹¹⁾을 확대하는 세제 개편안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

그림 4 전체 양도자산 연도별 신고건수 및 증감률



주. 2018년부터 고가주택 등 비과세분 양도차익을 제외하는 등 통계작성 기준의 변경이 있으므로 2018년 이전과 이후의 결과 비교에 있어 유의 필요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예정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5 자산유형별 신고건수의 전년 대비 증감률



- 주. 1. 고가주택을 제외했으며 예정신고 중 단일신고건에 한해 표본추출 및 기타 반출 조치를 거쳐 가공된 자료를 활용해 추정
2. 주식분은 자산건수 기준이고 세액정보가 2016년부터 공개되므로 증감률은 2017년부터 산출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예정신고 및 국세통계센터 제공 개인별 납세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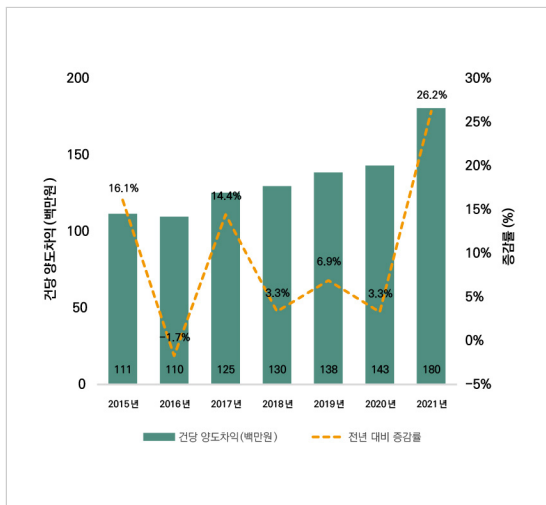
(건당 양도차익) 2016년 이래 꾸준히 상승 중이며, 양도소득세수가 가장 컸던 2021년은 모든 자산유형에서 건당 양도차익 증가율이 증가하면서 평균 1.8억원 수준으로 최고 수준(전년 대비 +26.2%)

- (토지) 토지가격이 대체로 지속 상승하면서 2021년 건당 양도차익은 전년 대비 21.3% 상승
 - ▶ (지가지수, 전국) 93.4(‘20.12.) → 97.3(‘21.12., 전년 대비 +4.2%)
- (건물등)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건당 양도차익 또한 지속 상승, 2021년은 전년 대비 13.1% 증가
 - ▶ (주택 매매가격지수, 전국) 93.4(‘20.12.) → 97.3(‘21.12., 전년 대비 +4.2%)
- (주식) 시점에 따른 건당 양도차익 증감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11)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주관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 비상장주식 등 양도분에 부과하는데, 2020년 4월부터 대주주 보유액 기준을 시가총액 15억원(코스피, 코스닥)에서 10억원까지 하향(상세 내용 참고 3)

- (과세표준 비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 축소 등 세제 개편이 비율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
- 2018년 74.9%에서 2021년 77.2%로 상승 추세
 - 79.8%(15)→ 77.8%(16)→ 77.7%(17)→ 74.9%(18)→ 75.6%(19)→ 75.5%(20)→ 77.2%(21)
- 2018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및 2021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출 방식 개편 등이 과세표준 비율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18년 4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3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해당 공제 적용에서 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출 방식 개편)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출하도록 세제가 개편(이전에는 보유기간만 고려)됨에 따라 공제액 축소

그림 6 전체 양도자산 건당 양도차익 및 증감률



주. 2018년부터 고가주택 등 비과세분 양도차익을 제외하는 등 통계작성 기준의 변경이 있으므로 2018년 이전과 이후의 결과 비교에 있어 유의 필요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예정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7 자산유형별 건당 양도차익의 전년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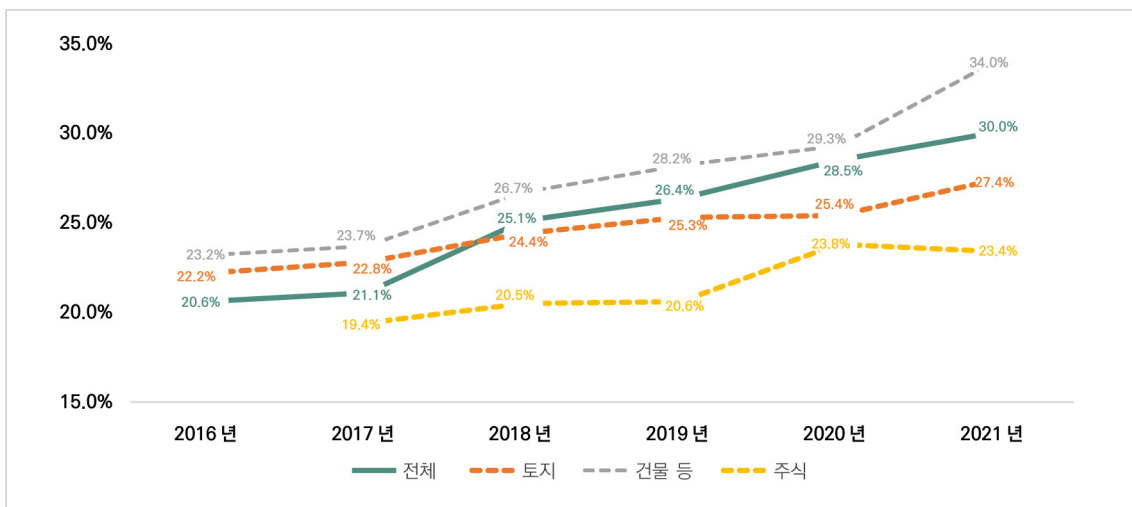
주. 1. 고가주택을 제외했으며 예정신고 중 단일신고건에 한해 표본추출 및 기타 반출 조치를 거쳐 가공된 자료를 활용해 추정
 2. 주식분은 자산건수 기준이고 세액정보가 2016년부터 공개되므로 증감률은 2017년부터 산출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예정신고 및 국세통계센터 제공 개인별 납세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실효세율) 2018년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자산 및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재도입되고, 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강화된 중과세율이 추가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실효세율도 상승

- (토지) 지가상승에 따른 고액 자산양도 증가 등으로 2021년 27.4%까지 실효세율이 상승

- (건물등) 세율 강화 방향의 조세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2016년 23.2%에서 2021년 34.0%로 지속 증가
 - ▶ 2018년 조정대상지역을 신설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에 대해 주택 수에 따라 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 세율을 추가 적용하는 중과세율 재도입
 - ▶ 2021년 이후 단기 양도분에 대한 중과세율을 강화하고,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기존 대비 10%p 추가 상향
- (주식) 세율 강화 방침의 세계개편에 따라 2020년까지 23.8%로 상승했다가 2021년 23.4%로 소폭 하락
 - ▶ 2015년 주식분 세율을 20%로 일원화(중소기업 대주주 세율 인상)
 - ▶ 2020년 중소기업 대주주 양도분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시 세율을 20→25%로 인상

그림 8 자산유형별 실효세율의 추이



주. 1. 전체 자산의 실효세율은 예정신고 기준
 2. 자산유형별 실효세율은 예정신고 중 단일신고건에 한해 표본추출 및 기타 반출 조치를 거쳐 가공된 자료를 활용해 추정했으며, 고가주택은 제외
 3. 주식분은 자산건수 기준이고 세액정보가 2016년부터 공개되므로 증감률은 2017년부터 산출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예정신고 및 국세통계센터 제공 개인별 납세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양도소득세 증감의 결정요인별 기여도 분석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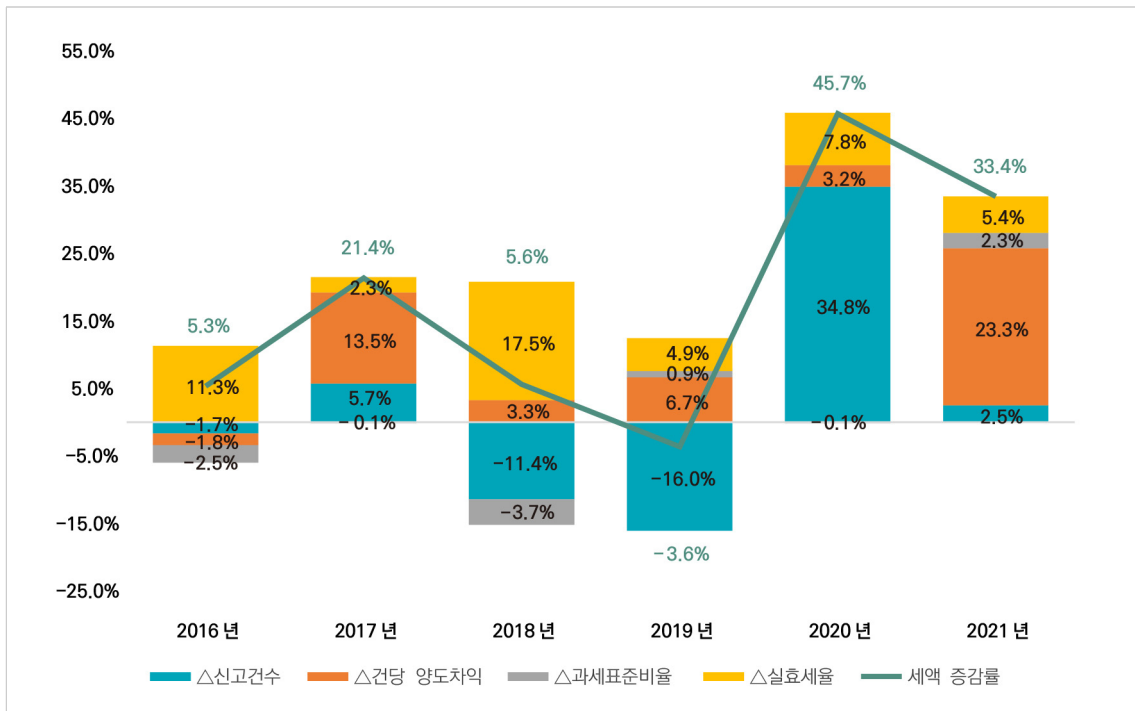
가. 전체 양도소득세 기여도 분석

신고건수(거래량)는 대체로 양도소득세수 증가 및 감소와 방향성을 같이 하며, 건당 양도차익(가격 요인)은 전년 대비 세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시점에 기여도 또한 크게 나타나는 경향

12) 이하 분석에 활용된 양도소득세수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분석자료의 특성으로 예정신고 중 단일신고건에 대한 증감률을 산출한 것으로서 전체 양도소득세 징수액의 증감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해 해석상 유의 필요

- (신고건수) 대부분 기간에서 세수 변동의 주된 요인을 차지하며, 변동성이 큰 시기에 영향력이 커지는 추세
 - ▶ 주택 및 토지 매매거래량이 급증¹³⁾한 2020년 세수 증가분 기여도는 34.8%p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거래량이 감소¹⁴⁾한 2019년은 △16.0%p로 세수 감소에 기여
- (건당 양도차익) 대체로 신고건수 다음으로 큰 기여도를 보이며 자산가격 변동과 밀접한 관계
 - ▶ 2021년의 경우 부동산 거래량은 감소했으나 누적된 가격상승 등으로 건당 양도차익 기여도는 23.3%p로 분석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
- (실효세율) 자산 가격 및 양도소득세제 변화와 연관을 가지는 요인으로 연도별 2.3~17.5%p의 기여도 시현
 - ▶ 2018년에 다주택자 및 규제지역 소재 자산을 중심으로 중과세율이 재도입되는 등 세율 상승에 따라 세수 증가분 기여도는 17.5%p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세수 증가에 기여
- (과세표준 비율) 해당 요인은 시점마다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세수 증감 기여도 또한 크지 않음

그림 9 전체 자산 양도소득세수 증감률의 결정요인별 기여도 분석



주. 앞선 결정요인별 분해산식을 활용했으며, 본 산식에 의해 추정된 기여도는 예정신고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이므로 해석에 유의 필요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예정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3) (토지 매매·분양권 전매) 2020년 299만필지(전년 대비 +21.9%) (주택 매매·분양권 전매) 2020년 140만호(전년 대비 +54.3%)

14) (토지 매매·분양권 전매) 2019년 245.3만필지(전년 대비 △10.5%) (주택 매매·분양권 전매) 2019년 90.7만호(전년 대비 △7.9%)

(참고 1) 결정요인별 세수 증감액

- 신고건수 및 건당 양도차익 변화가 전체 세액증감에 주로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기타 요인(과세표준 비율, 실효세율)의 변동은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
 - ▶ 각 요인의 기간별 증감액을 살펴보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시장 변동이 컸던 2018~2021년에서 신고건수(4.5조원)와 건당 양도차익(11.0조원) 및 실효세율(7.7조원)이 기여한 것으로 추산
 - ▶ 2020년은 신고건수분(8.2조원), 2021년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당 양도차익분(8.6조원)이 세수 증감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추정

양도소득세수 결정요인별 증감액

(단위: 조원)

	△신고건수	△건당 양도차익	△과세표준 비율	△실효세율	전체 세액증감
2016년	△0.2	△0.2	△0.3	1.5	0.7
2017년	0.9	2.0	0.0	0.3	3.2
2018년	△2.1	0.6	△0.7	3.1	1.0
2019년	△2.6	1.1	0.1	0.8	△0.6
2020년	8.2	0.8	0.0	1.8	10.8
2021년	0.9	8.6	0.8	2.0	12.3
'18~'21	4.5	11.0	0.3	7.7	23.5

주. 세수 결정요인별 기여도 분석 결과에 연도별 실제 징수액을 반영하여 산출하여 산출한 추정치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예정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자산유형별 양도소득세 기여도 분석

(토지) 신고건수가 세액증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지만, 세액증감을 변동폭이 건물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각 요인의 영향은 전반적으로 건물등에 비해 낮은 수준

- (신고건수) 세수 증가 및 감소 모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2019년에는 음(-)의 기여도(△12.7%p)를 보여 세수 하락을 견인했으며, 반대로 2021년에는 세수 증가에 기여(+19.5%p)
- (건당 양도차익) 지가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였으므로 대체로 세액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전년 대비 세액 증가율이 가장 컸던 2021년(46.4%)에는 19.3%p로 높은 수준의 기여도 시현
- (실효세율) 2016년을 제외하면 세율 관련 변화가 크지 않아 건물등과 달리 일정한 경향성은 찾기 어려움
 - ▶ 2016년 양도분부터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 10%p 인상(2015.12.31. 양도분까지는 일반 토지건물 세율 적용)

표 1 토지분 양도소득세수 증감률의 결정요인별 기여도 추정

	△신고건수(A)	△건당 양도차익(B)	△과세표준 비율(C)	△실효세율(D)	세액 증감률(A+B+C+D)
2016년	4.2%p	△0.2%p	△2.1%p	14.3%p	16.2%
2017년	9.8%p	9.4%p	△6.2%p	2.7%p	15.6%
2018년	△9.1%p	7.4%p	△1.3%p	7.1%p	4.0%
2019년	△12.7%p	△1.1%p	2.0%p	3.6%p	△8.3%
2020년	9.0%p	3.9%p	1.7%p	0.3%p	14.9%
2021년	19.5%p	19.3%p	△0.1%p	7.6%p	46.4%

주. 예정신고 중 단일신고건에 한해 표본추출 및 기타 반출 조치를 거쳐 가공된 자료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자료: 국세통계센터 제공 개인별 납세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건물등) 신고건수, 건당 양도차익, 실효세율 등 대부분의 요인이 상당부분 세수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수증감률의 변동이 큰 만큼 각 요인의 변동도 큰 것으로 나타남

- (신고건수) 토지와 유사하게 세액 증가와 감소 모두에 기여하되, 그 폭은 더 큰 수준
 - ▶ 세액이 감소했던 2019년(△19.8%)에는 신고건수 감소가 가장 큰 요인(△24.3%p)이었고 주택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건당 양도차익도 감소하면서 세액 감소에 영향(△5.3%p)
 - ▶ 세액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던 2020년(74.5%)에는 신고건수 증가의 기여도는 +54.1%p
 - ▶ 세수 증가율이 둔화된 2021년(12.7%)에는 신고건수 감소로 세액 감소에 기여(△16.0%p)
- (건당 양도차익)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0년(16.2%p) 및 2021년(10.9%p) 모두 세수 증가에 기여
- (실효세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 등 양도소득세제 개편이 추진되면서 세수 증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변경된 세제가 시행되는 때에 기여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
 -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재도입(2주택자 +10%p, 3주택 이상 +20%p)한 2018년 기여도는 11.9%p,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된 중과세율('21.6.1. 이후 양도분, 2주택자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30%p) 및 단기보유에 대한 세율을 인상(보유기간 1년 미만 40→70% 등)한 2021년 14.8%p의 기여도 시현
- (과세표준 비율) 2021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출방식을 개편하면서 해당 공제액이 개편 전에 비해 축소, 해당 요인의 세수 증가 기여도가 2020년(0.6%p)보다 2021년에 증가(3.0%p)

표 2 건물등 양도소득세수 증감률의 결정요인별 기여도 추정

	△신고건수(A)	△건당 양도차익(B)	△과세표준 비율(C)	△실효세율(D)	세액 증감률(A+B+C+D)
2016년	0.4%p	8.0%p	0.7%p	4.4%p	13.5%
2017년	1.9%p	△0.6%p	3.2%p	2.1%p	6.7%
2018년	△16.7%p	19.0%p	0.7%p	11.9%p	14.9%
2019년	△24.3%p	△5.3%p	4.2%p	5.6%p	△19.8%
2020년	54.1%p	16.2%p	0.6%p	3.6%p	74.5%
2021년	△16.0%p	10.9%p	3.0%p	14.8%p	12.7%

주. 고가주택을 제외했으며, 예정신고 중 단일신고건에 한해 표본추출 및 기타 반출 조치를 거쳐 가공된 자료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자료: 국세통계센터 제공 개인별 납세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식) 주식시장 활황 및 상장주식 과세대상 확대(대주주 적용기준 완화) 등 제도변화에 따라 세액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기여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

- (자산건수)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급락하였던 주가지수가 이후 2021년 6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¹⁵⁾하면서 주식거래가 증가했고, 완화된 대주주 기준이 함께 반영되면서 자산건수¹⁶⁾ 기여도도 증가
 - ▶ 자산건수가 세수 감소요인이었던 2019년의 주식거래대금은 전년 대비 △21.4%였으며, 신고건수가 세수 증가요인이었던 2020년 및 2021년의 주식거래대금은 전년 대비 각각 +50.4%, +110.4%
 - ▶ 2020년 대주주 보유액 기준을 시가총액 15억원(~2020년 3월, 코스피 및 코스닥)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함에 따른 과세대상 확대 또한 기여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 (실효세율)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을 상향하는 세제개편안 도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 ▶ 2019년 20%→2020년 25%(과세표준 3억원 초과 시, 3억원 이하는 동일)
- (과세표준 비율) 기본공제(연간 250만원 한도) 외 기타 감면 등이 거의 없어 기여도는 제한적

표 3 주식분 양도소득세수 증감률의 결정요인별 기여도 추정

	△자산건수(A)	△건당 양도차익(B)	△과세표준 비율(C)	△실효세율(D)	세액 증감률(A+B+C+D)
2017년	14.1%p	37.9%p	0.0%p	1.4%p	53.5%
2018년	15.9%p	△20.8%p	0.8%p	5.4%p	1.3%
2019년	△5.0%p	△4.8%p	△0.6%p	0.5%p	△9.9%
2020년	44.0%p	△48.9%p	△0.9%p	14.3%p	8.6%
2021년	33.4%p	22.7%p	0.6%p	△1.7%p	55.1%

주 1. 주식분 세액정보는 자산건수(number of assets) 기준으로 공개되므로 해당 지표를 신고건수 대신 사용

2. 주식분 세액정보는 귀속연도 2016년부터 제공되므로 기여도 분석은 2017년부터 수행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예정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5) (코스피 기준) 2021년 6월 16일 장중 기준 역대 최고치인 3,316.08포인트 기록

16) 「국세통계연보」주식분 세액정보는 자산건수(number of assets) 기준이므로 해당 지표를 신고건수 대신 사용

5. 요약 및 시사점

2016~2021년 자산유형별 양도소득세수의 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건물등이 양도소득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세수 변동성 또한 큰 폭으로 나타나 전체 양도소득세수의 증감 방향을 견인

- 2020년 및 2021년의 경우 건물등 세수 변동이 토지와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
 - ▶ 자산유형별 평균 세수 비중(2016~2021년): (토지) 34.4%, (건물등) 49.1%, (주식) 16.4%,
 - ▶ 전년대비 세수 증감율: (토지) △8.3~46.4% (건물등) △19.8~74.5% (주식) △9.9~55.1%

신고건수와 건당 양도차익이 세수 증감에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며, 특히 양도소득세수가 급증한 2020년은 신고건수, 2021년은 건당 양도차익이 세수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

- 양도소득세수가 전년 대비 상승한 2020년은 건물(주택 등) 거래가 급증하면서 신고건수의 기여도가 높았고, 최대 양도소득세수를 기록한 2021년의 경우 신고건수는 전년보다 낮았지만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높은 양도차익 실현으로 건당 양도차익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신고건수 기여도(2020년): 토지 9.0%p, 건물 54.1%p, 주식 44.0%p
 - ▶ 건당 양도차익 기여도(2021년): 토지 19.3%p, 건물 10.9%p, 주식 22.7%p

실효세율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 규모 증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등으로 세율 수준이 높아지면서 세수 증가에 대한 기여도 상승

- 건물등의 경우 2018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10/20%p) 재도입, 2021년 다주택자 중과 추가 상향(20/30%p) 적용 및 단기보유에 대한 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안의 영향으로 분석기간 중 실효세율 상승 및 세수증가에 대한 실효세율의 기여도 증가
 - ▶ (건물) (실효세율) 2018년 26.7%→ 2021년 34.0%, (실효세율 기여도) 2018년 11.9%p→ 2021년 14.8%p
- 토지의 경우 실효세율의 상승 및 세수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건물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음
 - ▶ (토지) (실효세율) 2018년 24.4%→ 2021년 27.4%, (실효세율 기여도) 2018년 7.1%→ 2021년 7.6%

본고의 양도소득세수 결정요인 분석은 각 요인이 자산유형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자산유형별로 결정요인의 기여도가 상이한만큼 자산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수전망의 필요성 시사

- 건물 등은 거래건수 및 가격 등 변동성이 크고 부동산 관련 제도의 주요 대상으로서 세수 변동성 또한 토지에 비해 큰 경향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수 전망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모형 개선 필요

(참고 2) 부동산(주택 등) 양도소득세제 관련 주요 개정 연혁

- (2000년대 초반) 양도가액 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¹⁷⁾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중과(重課)¹⁸⁾하는 등 과세 강화
- (2009~2017년) 2009년부터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완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14년부터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2017년)
- (2018년) 투기과열지구 외 조정대상지역¹⁹⁾을 신설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에 대해 주택 수에 따라 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 세율 추가 적용²⁰⁾
- (2019년) 다주택자의 주택 수 산정 시 분양권을 포함하는 등 다주택자 범위 확대²¹⁾, 1세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²²⁾
- (2021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및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강화
 - (다주택자 중과세율 강화) 2021.6.1. 이후 양도분에 대해 기존 대비 추가 10%p 상향(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세율추가 적용)²³⁾
 - (단기 양도 세율 강화) 2021년 이후 양도분에 대해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세율: 40%→70%, 1년 이상 2년 미만: 현행 기본세율→60%
- (2022년~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를 2024년 5월 9일까지 유예²⁴⁾
 - (세율 이외 정책)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을 서울 4개 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및 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조세」 등을 참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7) 1세대 3주택 이상은 2002년 10월, 투기지역은 2003년, 1가구 2주택의 비거주주택은 2006년, 모든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서 2007년 이후 양도분에 양도소득세율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부동산 종합대책’, 2005.8.31.)

18) 2005년에는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중과(60%)(‘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 2003. 10. 29.), 2007년에는 1세대 2주택자에도 중과(50%)(‘부동산 종합대책’, 2005.8.31.)

19)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으며 2016년 처음 지정(‘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발표’, 2016.11.3.)된 이래 지정과 해제를 반복

20)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7.8.2.)

21)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12.16.)

22)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정하거나(‘주택시장 안정대책’, 2018.9.1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2년의 보유기간을 산정할 때 다주택 보유기간은 제외하고 1주택이 된 이후 보유기간만 인정(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2019.1.9.), 전입요건의 추가 및 중복보유기간 축소(2년→1년)(‘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9.12.16.)

23) 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기본세율에 상향된 중과세율 적용(‘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020.7.10.)

24) 중과 배제 방침은 2022년 5월 10일 처음 공고했으며, 이후 적용 배제기한을 2024년 5월 9일로 1년 연장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023년 2월 28일 공포

(참고 3) 주식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및 세율 관련 주요 개정사항**1. 대주주 요건 관련**

- (지분율 및 보유액 기준) 2016년 3월 이후 지분율 기준은 동일하지만, 보유액 기준은 낮아져 과세대상 확대
 - ▶ (코스피 주식 기준) 2016년 4월 이후에는 시가총액 25억원(코스피 기준)이었으나, 2020년 4월부터 대주주 보유액 기준을 10억원까지 하향
- (대주주 여부 판단 시 주주 1인 외에 합산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개정에 따라 축소, 확대 반복
 - ▶ (2022년 세법개정 전)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소유한 주식
 - ▶ (2022년 세법개정 이후) 최대주주의 경우는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이 소유한 주식까지 합산하고,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주주를 제외한 본인이 소유한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

2. 세율 관련

- (2016~) 중소기업 대주주의 세율 인상: 10→20%
 - (2018년~) 1년 이상 대주주 보유주식 세율 인상: 20→20~25%*(1년 미만은 30%)
 - ▶ 대주주 외의 경우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외 20%
-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누진공제 1,500만원), 2020.1.1. 이후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로 일원화

표 5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의 변천

시장 구분	2005.8 ~ 2013.6		2013.7 ~ 2016.3		2016.4 ~ 2018.3		2018.4 ~ 2020.3		2020.4 ~	
	지분율	보유액	지분율	보유액	지분율	보유액	지분율	보유액	지분율	보유액
코스피	3%	100억원	2%	50억원	1%	25억원	1%	15억원	1%	10억원
코스닥	5%	50억원	4%	40억원	2%	20억원	2%	15억원	2%	10억원
코넥스			4%	10억원	4%	10억원	4%	10억원	4%	10억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조세」 등을 참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정추계&세제 이슈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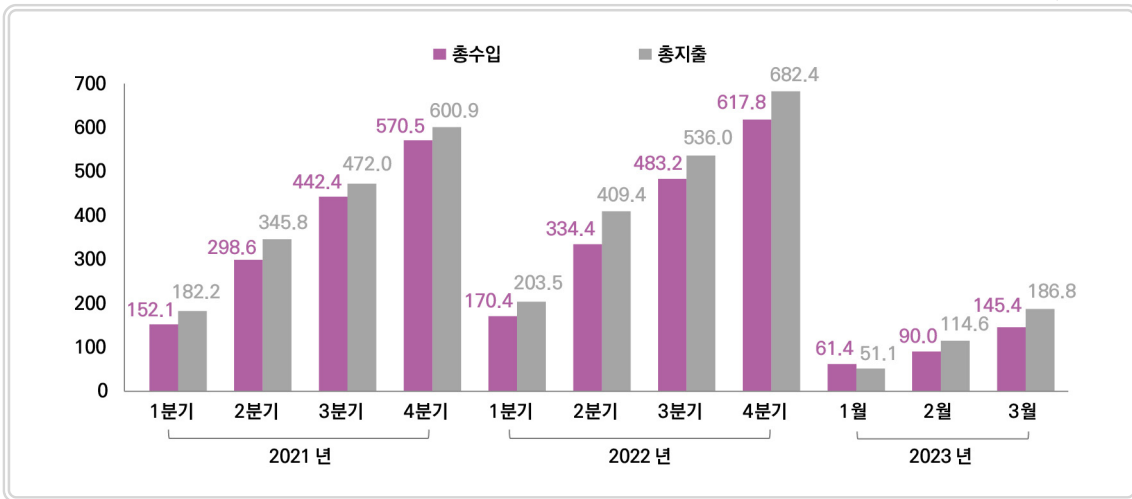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고 은 비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9)

총수입·총지출(분기별·월별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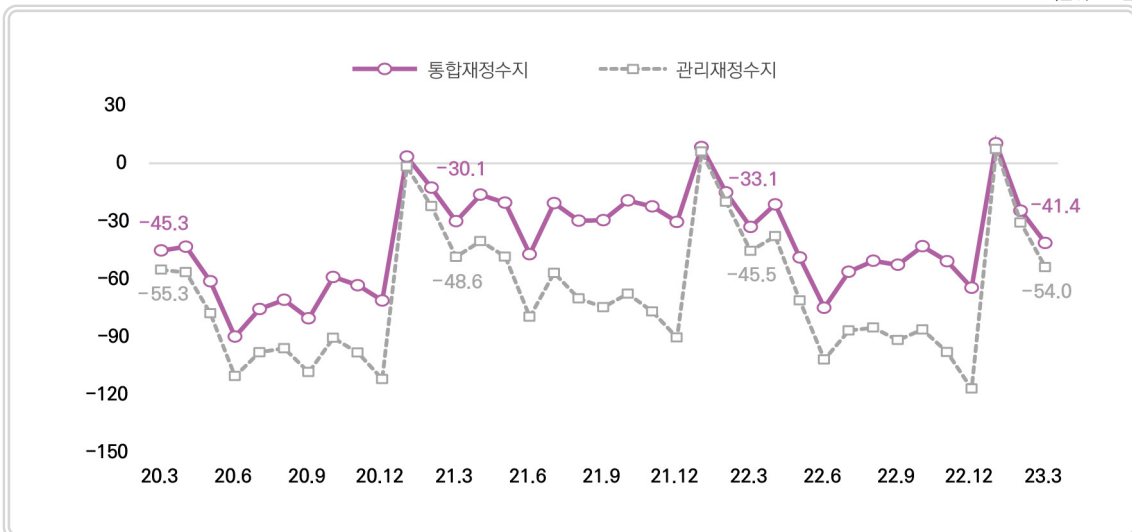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정수지(월별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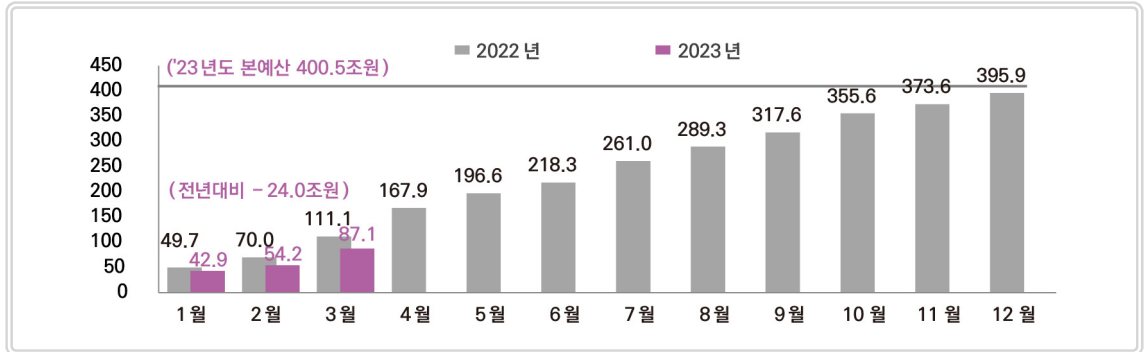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세 실적(월별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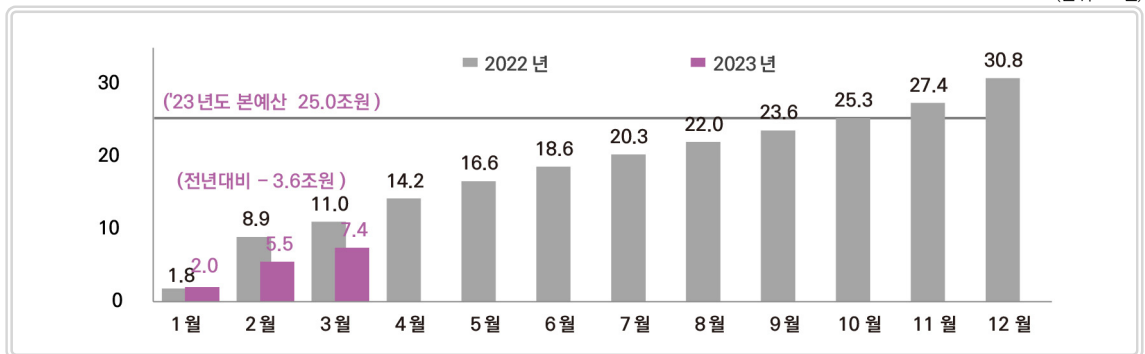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세외수입 실적(월별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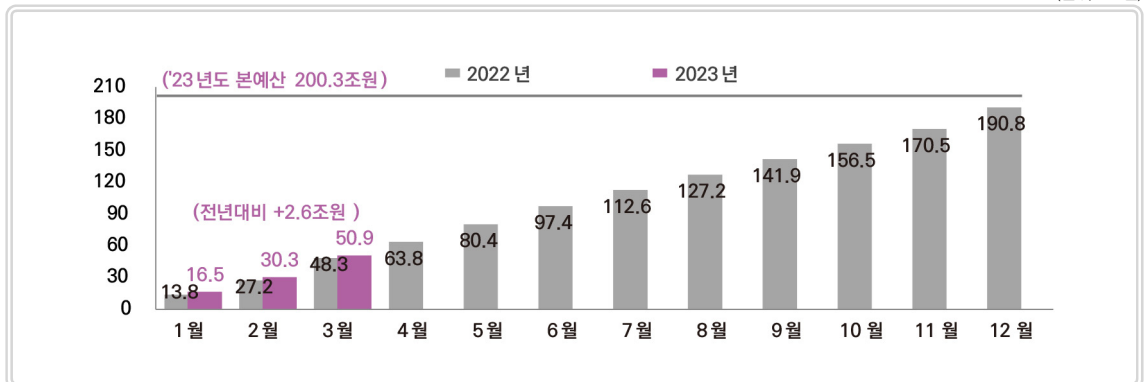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금수입 실적(월별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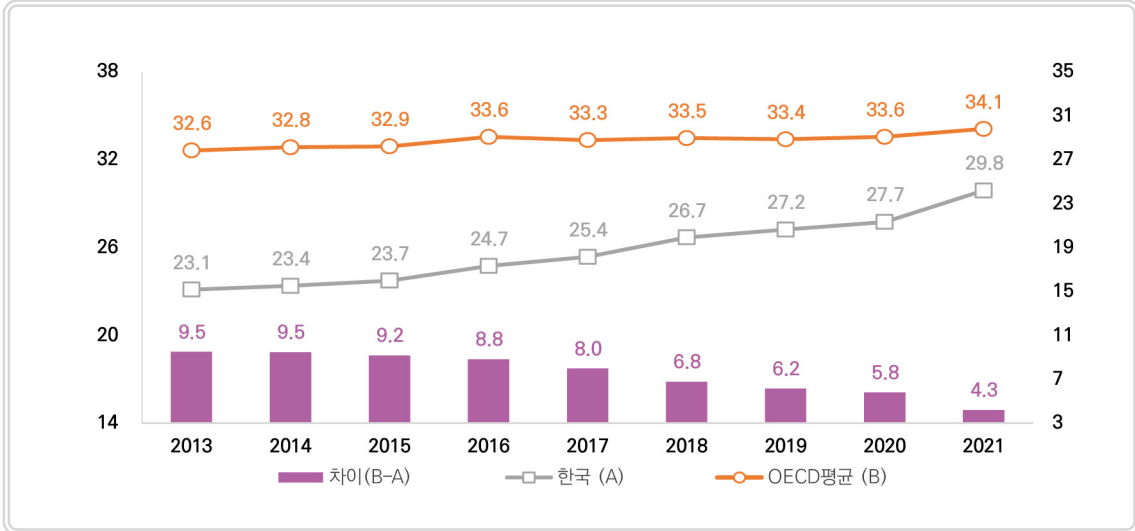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민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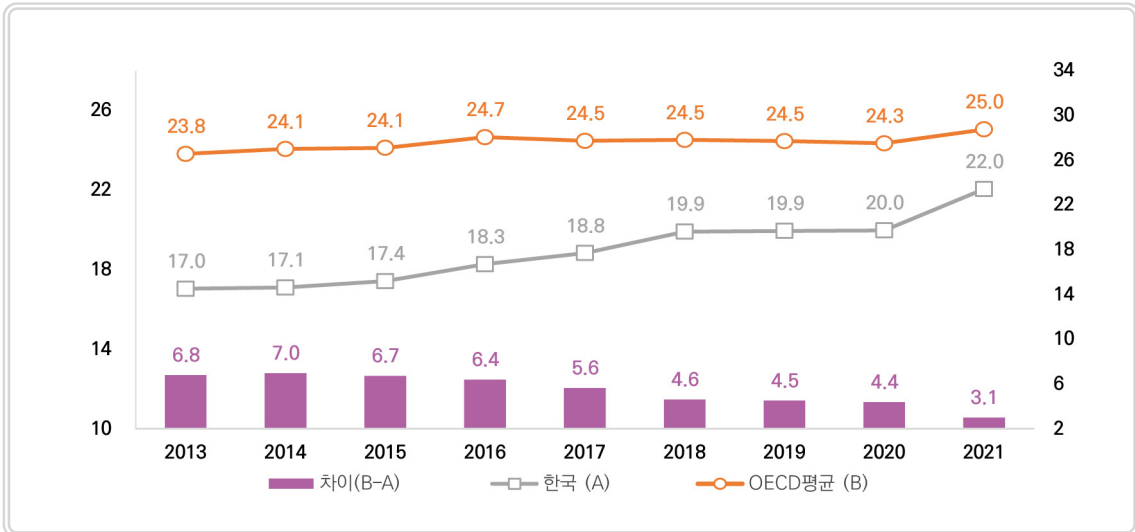
(단위: %)



주: 1) 국민부담률은 명목GDP 대비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합액 비율
 2)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한국은행의 GDP 확정치(2023.6)를 반영하여 계산
 3) OECD 평균은 2021년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38개국 기준이며, 2021년 미발표국가(호주, 일본)의 경우 전년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조세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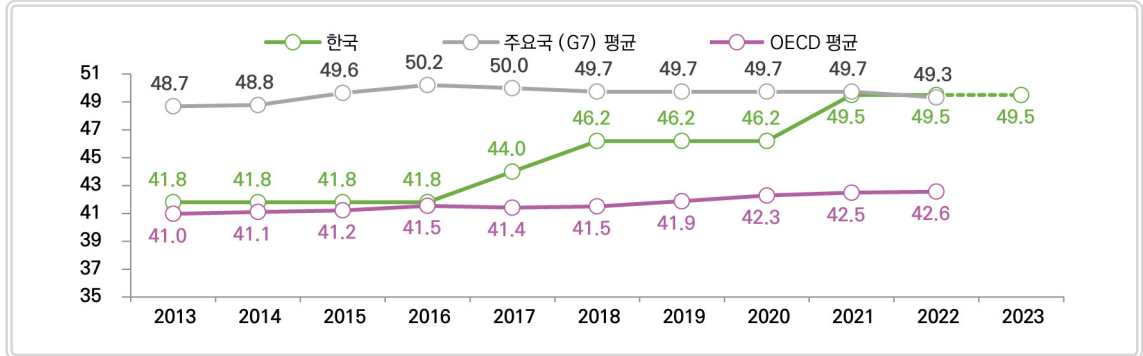
(단위: %)



주: 1) 조세부담률은 명목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
 2)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한국은행의 GDP 확정치(2023.6)를 반영하여 계산
 3) OECD 평균은 2021년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38개국 기준이며, 2021년 미발표국가(호주, 일본)의 경우 전년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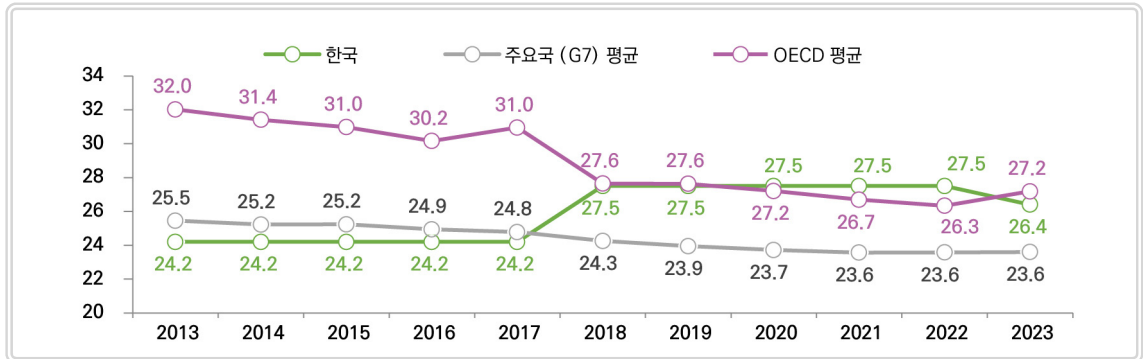
소득세율(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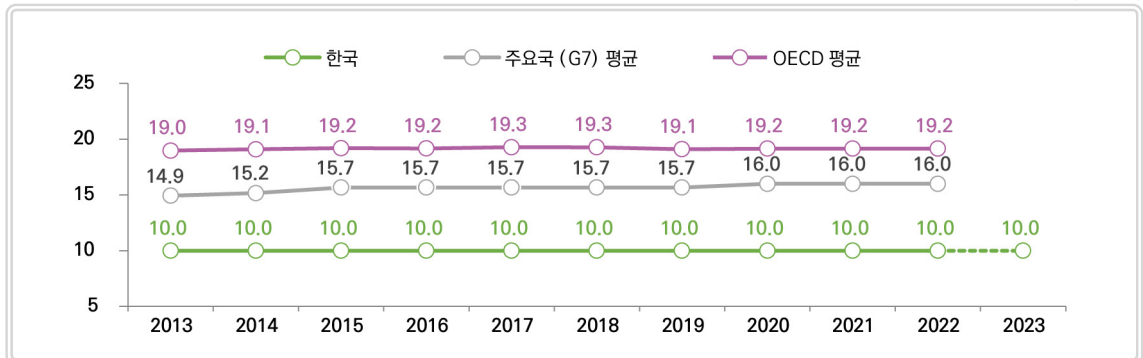
법인세율(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기준)

(단위: %)



부가가치세율(지방세 포함, 표준세율 기준)

(단위: %)



주: 1) 각 세율의 OECD 평균은 2021년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38개국 기준

2)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최고명목세율 기준이며, 지방세(지방소득세) 포함

3)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 기준(미국의 판매세는 제외)이며, 지방세(지방소비세) 포함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및 IBFD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정추계&세제 이슈

발행일	2023년 6월 23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디자인여백플러스(02-2672-1535)

ISSN 2799-9408

발간등록번호 31-9700489-001941-08

© 국회예산정책처, 2023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논문 공모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재정전문기관입니다.

예산정책연구는 재정·경제, 조세 및 공공정책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게재하며,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정책연구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모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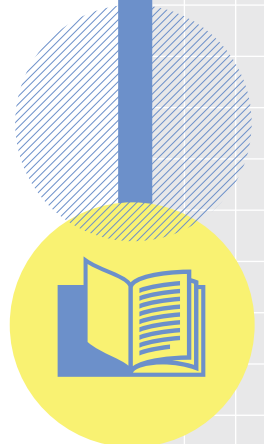
논문 공모 및 학술지 발간일

논문 공모 상시모집
투고 자격 석사과정 이상
발간일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

※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논문 제출 및 문의처

제출방법 nabo.jams.or.kr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
문의처 예산정책연구 편집위원회
전화 02-6788-4619
홈페이지 www.nabo.go.kr/journal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89-001941-08

ISSN 2799-9408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